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한국법무학회

dCollection

석사학위청구논문
2014학년도

건설기업의 회생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in Rehabilitation of Construction Enterprises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건설법무학과

윤 인 효

한국건설법무학회

건설기업의 회생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in Rehabilitation of Construction Enterprises

지도교수 유 선 봉

이 논문을 법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일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건설법무학과

윤 인 효

한국건설법무학회

윤인효의 법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심사위원_____인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2014년 12월 일

한국건설법무학회

감사의 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건설경기가 장기침체로 접어들면서 국내 종합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를 이기지 못한 조합원사들의 회생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2009년 1월 본사로 발령받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생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원이나 채권금융기관에게 건설기업과 건설공제조합의 특수성을 이해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건설공제조합 내부적으로도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업무처리와 실무적 자료들이 부족하여 직원들이 업무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김정연 관리이사・김종서 부장・김석호 팀장・조석현 팀장과 함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기준 완화, 업무거래정지 범위 조정, 회생업무 매뉴얼 전면개편 등 건설공제조합의 기업회생 업무처리 기준 전반을 개선하는 한편, 채권자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법원과 채권금융기관에 건설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었으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건설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설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진학이었다.

1997년부터 본사 법무팀에서 소송업무를 수행할 당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논문(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최소화 방안에 관한 연구)을 쓴적이 있어 이번에도 쉽게 정리될 줄 알았으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체계적 정리가 쉽지 않았지만 회생실무를 담당하면서 모아두었던 자료가 상당하여 자료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반면 모든 자료가 아까워 논문에 넣고자 하다보니 체계도없이 200페이지가 넘어 절반 가량을 지우고 다시 보충하는 작업이 반복되었다.

한국건설법무학회

다행스럽게도, 학부 강의와 건설법무대학원장으로서 바쁜 와중에도 논문의 방향 설정과 체계, 작성 방법에 대하여 지도해 주신 유선봉 교수님, 논문의 세밀한 부분까지 심사하여 주신 박상열 교수님과 신만중 교수님의 큰 가르침이 있어서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기에 이 글을 빌어 감사드린다.

또한, 이번 논문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건설공제조합 정완대 이사장님, 서성동 감사님, 이정관 전무이사님, 박헌준 기획조정실장님, 이일광 기획조정팀장님 그리고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준 김수현 팀장, 장경은 차장을 비롯한 건설공제조합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

회사일과 학교수업으로 늘 바쁘게만 살아 아빠로서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해 미안한 마음만 전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랑하는 큰딸 세은, 작은딸 다은, 막내 세진이에게 이 글을 빌어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며,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전화로만 안부를 여쭙게 되어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넷째 아들을 지금까지도 걱정해주시는 어머님과 내 마음속에 항상계시고 지켜주시는 아버님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빈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너그러운 이해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랑하는 나의 반려자 오경란에게 그 누구보다 더욱 고맙다는 말과 함께 다시 태어나도 인생을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한다.

한국건설법무학회

광운대학교 VERITAS et LUX KWANGWOON UNIVERSITY MAY 1934 SEOUL KOREA

국문요약

건설기업의 회생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는 회생 가능한 기업은 살리고 불가능한 기업은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 등의 제도적인 구조조정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그 동안 제도에 내재된 한계나 운용상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사후약방문식으로 개선하는데 그쳐 국민경제 전체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공사물량이 감소하고, 최저가낙찰제 시행 등에 따른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건설기업의 경우 물적자산이 거의 없는 등 제조업과는 다른 특수한 부분이 있음에도 워크아웃 등 사적구조조정제도와 달리 현행 회생제도는 개별 산업이나 기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하여 회생절차를 통해 건설기업이 정상적으로 시장에 복귀하는 비율이 낮고, 채권자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법심사 대상 이외의 회생사건 처리에 대한 법원의 비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회생제도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들의 신뢰가 낮아 신규신용공여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기업회생제도에 내재되거나 운용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사전적으로 신속히 개선하여 기업의 회생 성공률을 제고하고, 건설경기 장기침체로 향후 전개될 건설업 구조조정에 따른 건설기업의 회생신청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의 유한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아래와 같이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건설법무학회

첫째, 부실한 경영으로 기업을 도산상태에 이르게 한 경영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하되, 도산의 원인이 외부의 급격한 경제적 변동과 같이 기존의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채권자협의회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불선임 결정을 하는 것으로 관리인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신규신용공여의 종류는 대출에 한정되어 있고, 담보권자에 우선하는 최우선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신규신용공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리스계약, 자산유동화거래, 보증거래 등도 신용공여에 포함하고, 미국과 같이 해당 담보권자의 동의를 전제로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회생절차에서 신규신용공여자의 관리권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장래구상채권의 의결권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많은 논란이 있으므로 장래구상채권이나 조건부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를 감독하는 정부 등의 공적기관이 정한 기준인 대위변제준비금 적립기준이나 대급전환율(대위변제전환율) 또는 해당되는 채권자들의 일정기간 동안 회생기업에 대한 채권의 현실화율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파산부 법관이 사법적 심사 대상 외에 경영적, 행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까지도 담당함은 물론 모든 판사를 2~3년 마다 교체함으로써 회생사건에 대한 법관의 전문성이 제고되지 못하여 그 정당성과 적절성, 중립성과 공정성이라는 사법 본래의 역할이 후퇴할 우려도 있으므로 도산절차의 선진화와 세계화를 위해 회생전문법원을 설치하되, 예산 부담 등을 고려하여 우선 서울지역에 회생전문법원을 설치하고, '회생·파산위원

한국건설법무학회

회'를 대법원 행정처와는 별도의 독립된 부처로 격상시켜 사법적 심사 대상을 제외한 사항을 총괄하고, 각 지방법원에 설치된 관리위원회와 관리인 등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건설기업의 근로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신용공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금채권지급보증을 도입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발생하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되, 보증기관의 보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반드시 체당금 등에 대하여 보증기관이 우선하여 대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경제상황 침체로 인수합병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수의사가 있는 자가 일정 기간 위탁경영을 한 이후 경영이 정상화되면 인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민간에 의한 인수합병이 활성화되기까지 채권금융기관과 공적기관의 출연을 통해 인수합병 브릿지기관(Bridge Institution)을 설립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건설법학회

핵심이 되는 말 : 구조조정, 워크아웃, 기업회생, 관리인, 장래구상채권, DIP Financing, 임금채권지급보증, 회생법원, 인수합병 가교기관

광운대학교 VERITAS et LUX KWANGWOON UNIVERSITY MAY 1934 SEOUL KOREA

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in Rehabilitation of Construction Enterprises

Youn, In Hyo
Dept. of Construction Legal Affairs
Graduate School of Construction Legal Affairs
Kwangwoon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u Seon-Bong)

한국건설법무학회

Korea has an institutional restructuring system like workout or rehabilitation that revives viable firms and withdraws nonviable ones from market. The system could not so far have improved preemptively the limitation inherent in system or problems in operation, but in the way after death comes a doctor, being not able to make an efficient restructuring in terms of whole national economy.

In case of construction enterprises, there are aspects different from manufacturing industry as continuous economic slump reduces construction orders, and worsened payability due to implication of lowest bidding system rarely leaves physical assets. Unlike the private restructuring system as workout, the current rehabilitation system does not consider the peculiarity of individual industry or business, resulting in the low rate that construction enterprises return to market normally through rehabilitation process and much restriction for creditors to exert

practical rights. Moreover, non-professionalism of the court in dealing rehabilitation case other than judicial review cases made financial institution creditors have low confidence on rehabilitation system and DIP financing not activated.

Therefore, the researcher suggested an improvement plan as below to raise the success rate of enterprise rehabilitation by improving the problems which are inherent in enterprise rehabilitat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 t」 or are revealed in operation, and to promote efficient allocation of limited resource in national gross economy by dealing efficiently with construction enterprises' increased application for rehabilitation according to restructuring of construction industry hereafter due to long term slump of construction market.

First, the manager who led enterprise into bankruptcy due to poor management doesn't be allowed to be custodian in principle. The custodian system should be improved as follows. The existing manager should be appointed or not be appointed for custodian just in case that it is hard to charge the existing manager with responsibility when the cause of bankruptcy is on the abrupt economic fluctuations, or in case that creditors' consultative council aggrees.

Second, lease agreements, asset securitization transactions, guarantee transactions, and so on should be involved in DIP financing, DIP financing should be guaranteed as a priority on the premise of the consent by the relevant mortgagee like in the U.S.A, and the

한국건설법무학회

management right of DIP financing in the rehabilitation process should be consolidated, because DIP financing is inactivated by the problems that the types of DIP financing are limited to a loan and the top priority for mortgagee doesn't be guaranteed in accordance with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ird,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s controversial because it doesn't regulate specific criteria about the voting right to future claims, hence appraisal criteria should be set quickly by utilizing accumulation criteria for subrogation reserves which the public institutions, such as the governments overseeing creditors who hold future claims or conditional claims, subrogation conversion, or rationalized rate data of the bonds in rehabilitation enterprises for a fixed period of time.

Fourth, there are concerns that the original roles of jurisdiction such as legitimacy, appropriacy, neutrality and impartiality are reduced and the professionalism of judges in rehabilitation case can not be enhanced, because bankruptcy division takes charge of the cases which need managerial, administrative decision besides judical cases and all the judges are replaced by every two to three years. Accordingly, rehabilitation specialized court should be set up for modern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bankruptcy procedure. First of all, it should be set up in Seoul considering the budget burden and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committee' should be uprated to independent department separated from Supreme Court Administration, so that it could direct all the cases except for that of judical review,

한국건설법무학회

광운대학교 VERITAS et LUX KWANGWOON UNIVERSITY MAY 1934 SEOUL KOREA

and oversee custodial custodian and custodial committee established in each district court.

Fifth, in order to protect construction workers and activate DIP financing to rehabilitation enterprises, wage claim guarantee, which is issued on the date of rehabilitation process initiate decision, should be obliged by introducing wage claim guarantee. The guarantee institution should be able to subrogate substitute payment priorily to vitalize guaranteed supply from guarantee institution.

Lastly, as mergers and acquisitions market doesn't be activated due to the recession, it should be actively implemented to grant the choice of acquisition to the person intending to take over after conducting consignment business for a fixed period of time until the management is normalized.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nd operate mergers and acquisitions bridge institution through funding by claim financial institution and public institutions until mergers and acquisitions by the private sector are boosted.

한국건설법무학회

Keyword : restructuring, workout, enterprise rehabilitation, custodian, future claims, DIP Financing, wage calim guarantee, rehabilitation court, M&A(mergers and acquisitions) bridge institution

차 례

감사의 글 ····· i
국문요약 ····· iii
ABSTRACT ····· vi
표 목차 ····· xvii
그림 목차 ····· xviii

제1장 서 언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와 논문의 구성 ····· 2

제2장 건설기업과 회생 ····· 3
제1절 건설기업의 환경 ····· 4
제1항 건설산업의 특성 ····· 4
1. 제품의 수주성 ····· 5
2. 물적자산의 취약성 ····· 5
3. 관계자의 다수성 ····· 5
4. 제품생산의 장기성 ····· 6
5. 재무구조의 취약성 ····· 6
제2항 산업비중의 감소 ····· 6
제3항 건설기업의 위기 ····· 9
제2절 기업회생과 문제점 ····· 12
제1항 기업회생의 현황 ····· 12

한국건설법무학회

제2항 일반적인 문제 ····· 15
1. 수주의 어려움 ····· 15
2. 보증기관의 부실화 ····· 16
3. 회생포커스의 전환 ····· 17
4. 장래구상채권의 의결권 미인정 ····· 17
5. 회생단계에서 보증지원의 문제 ····· 18

제3장 구조조정과 기업회생 ····· 19
제1절 구조조정의 필요성 ····· 19
제2절 구조조정의 개념 ····· 20
제3절 구조조정의 분류 ····· 21
제1항 사적구조조정 ····· 22
제2항 공적구조조정인 회생제도 ····· 22
제4절 구조조정 방식별 대상기업의 특성 ····· 23

제4장 사적구조조정제도 ····· 25
제1절 주채무계열제도 ····· 25
제1항 개 요 ····· 25
제2항 주요 내용 ····· 28
1. 대상 기업 ····· 28
2. 채권금융기관 ····· 28
3. 계열사의 채무보증 취득 제한 ····· 29
제2절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 30
제1항 개 요 ····· 30

한국건설법무학회

제2항 주요 내용 ····· 31
1. 채권자 기구 ····· 31
2. 대상 기업 ····· 31
3. 채권단 지원 ····· 32
제3절 채권단 자율협약 ····· 33
제1항 개 요 ····· 33
제2항 주요 내용 ····· 34
1. 대상 기업 ····· 34
2. 채권단 지원 ····· 35
제4절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 35
제1항 개 요 ····· 35
제2항 주요 내용 ····· 35
1. 대상 기업 ····· 36
2. 채권자 기구 ····· 36
3. 신용위험 평가 ····· 38
4. 부실징후기업 ····· 39
5. 관리절차 ····· 40
6. 채권행사 유예 ····· 42
7. 채권재조정 등 ····· 43
8.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 44
9. 특별약정 체결 ····· 45
제5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45
제1항 개 요 ····· 45
1. 도입 배경 ····· 45

한국건설법무학회

2. 필요성 ····· 46
3. 상시화 논란 ····· 47
4. 연도별 실적 ····· 48
제2항 주요 내용 ····· 50
1. 대상 기업 ····· 50
2. 채권자 기구 ····· 51
3. 절차 진행 ····· 53
4. 채권행사 유예 ····· 53
5. 채권재조정 등 ····· 54
6. 채권은행의 공동관리 ····· 54
7.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 55
8.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 56
9.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 56
10.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 57

제5장 기업회생제도 ····· 58
제1절 제도 개관 ····· 58
제2절 연 혁 ····· 59
제3절 구체적 내용 ····· 61
제1항 회생절차 관여자 ····· 61
1. 관리위원회 ····· 61
2. 회생·파산위원회 ····· 63
3. 채권자협의회 ····· 64
4. 자금관리위원 ····· 65

한국건설법무학회

5. 구조조정담당임원(CRO) ····· 66
제2항 회생인가전 절차 ····· 66
1. 회생절차개시 신청 ····· 66
2. 보전처분 등 ····· 67
3. 회생절차 개시결정 ····· 69
4. 관리인의 선택권과 상대방 보호 ····· 71
5. 관리인의 채권자 등 목록 작성·제출 ····· 72
6. 채권신고 ····· 73
7.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 73
8. 시·부인표의 작성 ····· 74
제3항 회생계획안 인가 ····· 74
1. 관계인집회 ····· 75
2. 의결권 ····· 75
3. 인가의 결정 ····· 76
4. 인가결정의 효력 ····· 77
제4항 인가 이후의 절차 ····· 78
제4절 최근 개정 내용 ····· 78

제6장 건설기업의 회생제도 개선 방안 ····· 82
제1절 제3자 관리인 선임을 원칙화 ····· 82
제1항 현행 제도 ····· 82
제2항 견해 대립 ····· 85
1. DIP 반대설 ····· 85
2. DIP 찬성설 ····· 86

한국건설법무학회

제3항 문제점 ····· 87
제4항 외국 사례 ····· 88
1. 미 국 ····· 89
2. 독 일 ····· 90
3. 일 본 ····· 90
제4항 개선 방안 ····· 92
제2절 DIP Financing 활성화 ····· 93
제1항 현행 제도 ····· 93
제2항 문제점 ····· 94
제3항 외국 사례 ····· 96
1. UNCITRAL ····· 96
2. 미 국 ····· 97
3. 프랑스 ····· 98
제4항 개선 방안 ····· 98
1. 담보권 등에 우선하는 보호 ····· 98
2. 신용공여 범위의 확대 ····· 99
3. 신용공여자의 관리권 강화 ····· 99
제3절 장래구상채권의 의결권 평가기준 마련 ····· 100
제1항 현행 제도 ····· 100
제2항 문제점 ····· 102
제3항 외국 사례 ····· 104
1. UNCITRAL ····· 104
2. 미 국 ····· 105
3. 일 본 ····· 105

한국건설법무학회

제4항 개선 방안 ····· 106
1. 대위변제준비금 적립기준 적용(안) ····· 107
2. 보증유형별 대급전환율 적용(안) ····· 108
3. 회생기업 보증금 대위변제율 적용(안) ····· 109
제4절 회생전문법원의 설치 ····· 110
제1항 현행 제도 ····· 110
제2항 문제점 ····· 112
제3항 외국 사례 ····· 114
제4항 개선 방안 ····· 115
제5절 임금채권지급보증 제도 도입 ····· 116
제1항 현행 제도 ····· 116
제2항 문제점 ····· 118
제3항 외국 사례 ····· 120
제4항 개선 방안 ····· 120
제6절 인수합병 시장의 활성화 ····· 122
제1항 현행 제도 ····· 122
제2항 인수합병의 어려움 ····· 122
제3항 외국 사례 ····· 126
제4항 개선 방안 ····· 127
1. 위탁경영 방식 ····· 127
2. 인수합병 브릿지기관 설립 ····· 129

제7장 결 론 ····· 130

참 고 문 헌 ····· 134

한국건설법무학회

<표 목차>

<표 1> 건설업과 제조업의 특성 비교
<표 2> 국내총생산, 건설부분 생산, 건설투자 변화추이
<표 3> 연도별 대출금잔액과 종합건설기업 평균수주액 변화
<표 4> 건설업 안정성 비율
<표 5> 건설업 수익성 비율
<표 6> 연도별 회생(회사정리, 화의 포함) 종합건설기업 현황
<표 7> 구조조정 방식별 대상기업 특성
<표 8> 연도별 주채무계열 변화
<표 9> 연도별 대주단협약 적용 현황
<표 10>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대상 기업
<표 11>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관리절차 종류
<표 12> 중소기업 대상 주요 은행별 자체워크아웃 프로그램 운영 현황
<표 13> 기업규모별 워크아웃 현황
<표 14>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개선 방법 현황
<표 15> 관리위원회의 주요 업무 및 권한
<표 16> 채권자협의회의 업무와 권한
<표 17> 회생절차와 강제집행의 상관관계
<표 18> 회생절차개시의 기각과 결정 비교
<표 19> 2014년 12월 30일 개정 전·후 비교
<표 20>「채무자회생법」제정 이전 관리인의 경력
<표 21> DIP Financing 사례
<표 22> 회생채권 종류별 의결권 인정기준
<표 23> 건설공제조합 회계규정상 대위변제준비금 기준
<표 24> 공제조합 감독기준상 보증별 대급전환율
<표 25> 대한주택보증의 연도별 보증실적과 대위변제금액 현황

한국건설법무학회

<표 26> 파산절차 개시 전 채권의 우선변제 순위
<표 27> 파산절차 개시 후 채권의 우선변제 순위
<표 28> M&A를 완료한 건설기업
<표 29> M&A가 진행중인 건설기업

<그림 목차>

<그림 1> 연도별 GDP 및 건설업 GDP 성장률 변화
<그림 2> 연도별 제조업과 건설업의 GDP 비중 변화
<그림 3>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발전 과정
<그림 4> 최근 7년간 법인회생·파산 사건 추이

한국건설법무학회

제1장 서 언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워크아웃이나 도산법 등 회생 가능한 기업은 살리고 불가능한 기업은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구조조정 체계를 갖추고는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제도에 내재된 한계나 운용상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사후약방문식으로 개선하는데 그쳐 국민경제 전체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도산 4법인「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을 통합하여 2006년부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업이 정상적으로 시장에 복귀하는 비율이 낮고, 회생절차내에서 채권자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법심사 대상 이외의 회생사건 처리에 대한 법원의 비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회생기업이 정상적으로 회생할 것이라는 채권금융기관들의 신뢰가 낮아 신규신용공여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공사물량이 감소하고, 최저가낙찰제 시행 등에 따른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건설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과는 달리 대표적인 수주산업에 속하고, 물적 자산이 거의 없는 등의 특수한 부분이 있음에도 회생절차에서 그러한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기업과 관련하여 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내재되거나 운용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설기업이 회생절차를 통하여 시장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비율을 제고하고, 건설경기 장기침체로 향후 전개될 건설업 구조조정에 따른 건설기업의 회생신청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의 유한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자 한다.

한국건설법무학회

제2절 연구범위와 논문의 구성

유한한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통해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 도모는 부실한 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으로서 기업구조조정제도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공적구조조정인 회생제도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규모 채무감면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의 양보가 절대적이므로 반드시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 보편성 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영역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중 공적구조조정인 회생제도에 대한 개선 연구로 그 범위를 제한하되, 개별 기업의 규모나 특성에 맞는 사적구조조정제도가 회생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있으므로 사적구조조정제도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현행 회생제도에는 계속기업가치 산정의 객관성 담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모든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의 도출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건설기업의 회생절차와 관련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에 내재되거나 그 동안 운용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한정하여 국내의 각 종 문헌과 외국의 사례를 조사·참고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 논문의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범위를 특정하고, 제2장에서는 건설기업의 특성과 회생 및 일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회생관련 구조조정 제도를 개관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사적구조조정제도를, 제5장에서는 공적구조조정제도인 현행 회생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다음 제6장에서 건설기업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현행 회생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핵심내용을 결론부분으로 구성하였다.

한국건설법무학회

제2장 건설기업과 회생

건설산업은 국민생활의 기반시설과 다른 산업의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등 고용유발효과가 매우 높아 국민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업으로서 그 동안 SOC 구축과 주택건설 등으로 경제성장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대형 국책사업의 종료, 주택보급률 확대 등으로 건설산업의 지속적 성장추세가 둔화되고, 최저가낙찰제도하에서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외형성장 등에 치중한 나머지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한편, 역사 속의 문명도 자연계의 유기체와 같이 생성, 번영, 그리고 쇠퇴기를 거쳐 결국 몰락하게 된다는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슈펭글러(Oswald Spengler)의 생명주기이론(life-cycle theory)에 의하면, 건설기업을 포함한 모든 인위적인 조직체가 영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실한 건설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회생시킬 수 있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제도가 필요하다.

기업구조조정제도는 채권자와 기업간의 사적협약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여 부도를 방지하는 사적구조조정과 부도처리된 기업을 법원이 중심이 되어 회생시키는 공적구조조정제도로서 분류할 수 있는데 사적구조조정제도는 기업의 규모나 특정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제도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반면 회생제도에는 이러한 기업의 규모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1]이 있어 건설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현행 회생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그 동안의 기업회생 현황과 함께 향후 구조조정이 시급한 산업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설산업의 변화와 건설기업의 특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법률 제12891호로 2014년 12월 30일 공포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채무총액 50억원 이하 영업소득자에 대하여는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하다.

한국건설법무학회

제1절 건설기업의 환경

제1항 건설산업의 특성

건설산업이나 조선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생산물의 성격·규모, 생산방식, 생산 구조, 고용 구조 등에 있어서 <표 1>[2]과 같이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표 1> 건설업과 제조업의 특성 비교

구 분	건설업	제조업
생산물 성격	(반)영구적, 내구재, (주)공공재적 성격, 단위생산물의 고가성, 복합성	소비재, 소모재, 단위생산물의 저가, 단순성
생산수요	수요의 불확실성(불안정성)	수요의 안정성
생산방식	선주문 후생산, 일회적·개별적	선생산 후판매, 반복적·표준
생산구조	공종별, 전문별 분할도급구조	대부분 직접 생산
작업환경	고정된 생산물과 이동하는 가설 작업시설, 옥외생산으로 기후의존성 강함, 현장의 이동성	고정된 완전작업시설과 이동하는 생산물, 옥외생산으로 기후조건과 무관, 현장의 고정성
고용구조	일용직 중심의 고용구조	상용직 중심의 고용구조
직업훈련	개별기업은 훈련 회피, 현장 습득	개별기업 중심의 훈련실시
경력관리	개별기업에 의한 근로자 경력관리 부재	개별기업에 의한 근로자 경력관리

2) 방하남·정연택·심규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구조 및 근로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85.5, 10면.

1. 제품의 수주성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受注産業)에 속하고, 전체 수주물량 가운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하여 정부의 규제 및 간섭이 높아 개발계획 등 각종 정책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이 운찰제라고 불리어지는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거나 적격공사이기 때문에 제조업과 달리 영업력이나 대표이사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수주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행 관리인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물적자산의 취약성

제조업의 경우 공장, 시설 등 자산 투자가 많아 매각 가치가 존재하지만 건설업의 경우 제조업체와 달리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나기 어려운 무형의 자산인 사람, 기술 등으로 존재[3]하기 때문에 회생절차에서 신규신용공여가 어려운 구조조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3. 관계자의 다수성

발주자, 하청업자, 노동자, 수분양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건설기업의 회생이나 퇴출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다양하고, 하청업체나 근로자 등에게 도산이 급속히 확산될 뿐만아니라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회생·퇴출을 시키기에 보다 많은 기회비용이 발생하므로 회생·퇴출을 위한 의사결정이 보다 빨리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조업과 달리 M&A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회생제도상 이러한 특

3) 김동욱・이종원・이원희, 기업퇴출·회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건설업을 중심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행정문제연구소, 2001.1, 49~52면.

한국건설법무학회

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제품생산의 장기성

생산과정이 길고 장기적이며, 제품의 불가분성으로 인하여 구조조정이 쉽지 않고, 경기변동이나 정책의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져 리스크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간 경과에 따른 리스크를 담보하기 위한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각 종 보증이 필요하고, 이로 인하여 회생절차에서 장래구상채권의 의결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5. 재무구조의 취약성

현금 흐름(cash flow)을 보면, 대규모 고정자산의 투자를 요하지 않으므로 자금의 대부분이 운전자금 부담이고, 자산 구성상 건설기업의 자기자본 비중은 낮은 편이며, 자산의 대부분은 매출채권·재고자산 등으로 구성되며, 차입금을 비롯한 부채에 대한 의존이 높은 편이다. 특히, 고정자산의 규모가 작아 이를 담보로 한 자금조달 능력이 낮고, 다른 산업과 달리 차입금 중 단기 차입금의 비중이 높아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의 가능성 등 재무적 안정성이 취약하므로 회생절차에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신규 신용공여 등이 절실하다.

제2항 산업비중의 감소

1999년 건설업등록제 전환에 따라 건설기업 수가 급증한 이후 수주규모는 2007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어 수급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건설산업은 2008년 금융위기, 부동산시장 침체,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부정적 요인에 의해 침체 국면이 지속[4]되고 있다.

한국건설법무학회

<표 2>는 1994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 중에서 건설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건설투자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GDP 대비 건설생산이나 건설투자 비중이 장기적으로 하락[5]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국내총생산, 건설 부문 생산, 건설투자 변화 추이

(단위: 십억원, %, 명목금액 기준)

년도	국내총생산 (GDP)	건설 부문 생산		건설투자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1994	349,972.6	32,322.5	9.24	75,007.3	21.4
1995	409,653.6	37,450.4	9.14	88,646.0	21.6
1996	460,952.6	42,601.6	9.24	100,277.7	21.8
1997	506,313.6	46,969.6	9.28	109,108.7	21.5
1998	501,027.2	40,146.4	8.01	99,765.0	19.9
1999	549,005.0	38,019.6	6.93	95,029.3	17.3
2000	603,236.0	37,413.8	6.20	96,921.3	16.1
2001	651,415.3	41,375.9	6.35	107,687.3	16.5
2002	720,539.0	45,771.6	6.35	119,941.8	16.6
2003	767,113.7	54,817.8	7.15	139,295.4	18.2
2004	826,892.7	57,833.2	6.99	151,169.7	18.3
2005	865,240.9	59,284.5	6.85	155,365.4	18.0
2006	908,743.8	61,359.3	6.75	160,823.2	17.7
2007	975,013.0	64,979.0	6.66	170,917.4	17.5
2008	1,026,451.8	64,612.2	6.29	185,005.6	18.0
2009	1,063,059.1	66,472.3	6.25	196,036.0	18.4
2010	1,173,274.9	66,156.6	5.60	194,990.2	16.6
2011	1,235,160.5	65,664.4	5.30	197,134.6	15.5
2012	1,272,459.5	66,862.2	5.30	197,072.4	14.9

출저 : 한국은행 국민계정

4) OECD 국가들의 경우 1인당 GDP가 1.2~1.3만불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건설투자 비중이 증가하나, 1.5만불 수준이 넘어서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5) GDP 중 건설업 비중은 1953년 2.2%를 보인 후 꾸준히 증가하여 1970년에는 7.0%, 1990년에는 가장 높은 9.5%를 보인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 2013년에는 5.0%로 떨어졌으며 향후에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014.12.16.자 건설경제신문 16면).

한국건설법무학회

년도별 전체 GDP와 건설업 GDP 성장률의 변화<그림 1>을 보면 2008년까지는 국가 GDP와 건설업 GDP가 함께 움직이는 동조화 현상을 보이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동조화 현상이 없는 디커플링(Decoupling) 상태를 보이고 있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비중 변화<그림 2>를 보면 제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건설업은 감소하여 2010년도부터는 역전되어 그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은 건설업이 국가경제와 연동되지 않는 경제구조로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연도별 GDP 및 건설업 성장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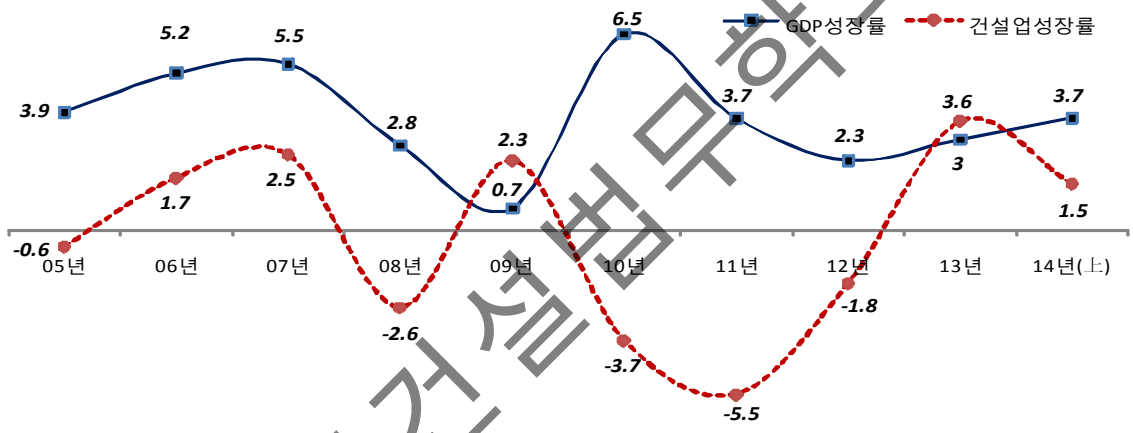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제조업과 건설업의 GDP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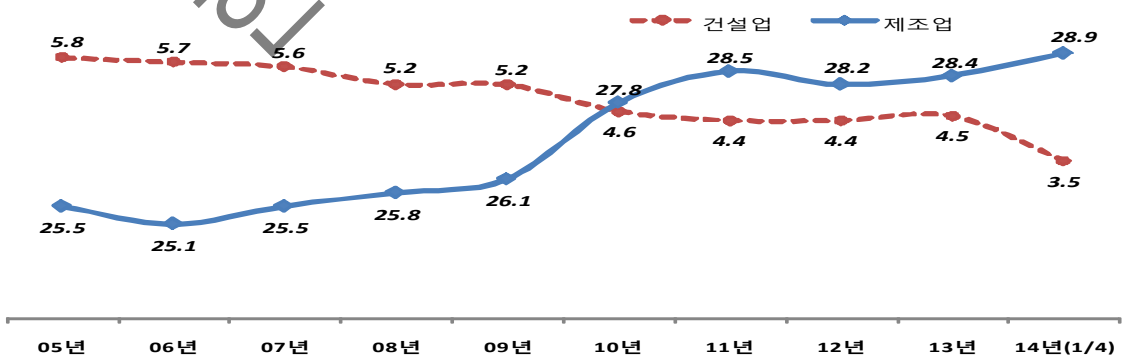

한국건설법무학회

제3항 건설기업의 위기

<표 3>은 연도별 대출금잔액과 종합건설기업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서, 국내 건설수주액은 2007년 127조 9천억원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 업체당 수주액은 약 80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내시장의 위축에 따른 활로로 추진된 해외건설의 경우 2011년 591억불, 2012년 649억불, 2013년 652억불 수주 달성 등 외형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국내업체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로 2013년 1분기 GS건설 5,355억원 손실, 삼성엔지니어링 2,189억원 손실 발생 등 그 수익성이 악화[6]되고,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대출금 중 건설업체 대한 대출 비중이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건설기업의 유동성이 심각하다.

<표 3> 연도별 대출금잔액과 종합건설기업 평균수주액 변화

[단위 : 조원, %, 개사, 억원(평균액)]

구분 \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출	총액	308.4	353.2	440.0	528.5	544.0	555.7	607.3	632.5	673.6
	건설	24.5	32.5	44.3	52.9	43.4	38.1	38.6	34.1	33.6
	비율	7.9%	9.2%	10.1%	10.0%	8.0%	6.9%	6.4%	5.4%	5.0%
수주	종합업체	13,202	12,914	12,842	12,590	12,321	11,956	11,545	11,304	10,921
	수주액	99.4	107.3	127.9	120.0	118.7	103.2	110.7	101.5	91.3
	평균액	75.3	83.1	99.6	95.4	96.4	86.3	95.9	89.8	83.6

*대출금은 한국은행 자료(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007Y014&conn_path=I3)

*수주액은 대한건설협회 자료(http://www.cak.or.kr/board/boardView.do?menuId=86&cms_site_id=&sel_tab=&searchctg1=&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sidohp=&subhp=&boardId=statistic_build&dataId=31755&pageIndex=1)

6) 삼성그룹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의 해외 현장인력을 감축하는 등 건설조직을 대거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다(2014.12.12.자 매일경제 15면).

한국건설법무학회

<표 4·5>는 대한건설협회가 종합건설사 9,812개사의 2013년도말 기준 재무제표를 분석[7]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안정성을 나타내는 유동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높아지고 있고, 수익성을 나태내는 매출액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순이익율은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당기순이익은 1998년 분석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하는 등 건설기업의 경영상태가 심각한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표 4> 건설업의 안정성 비율

안정성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유 동 비 율	129.0	130.7	133.3	136.6	140.0	138.3
부 채 비 율	193.1	169.1	145.6	147.1	143.7	147.5
차입금의존도	20.0	21.6	21.2	22.0	24.6	25.7

<표 5> 건설업 수익성 비율

수익성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매출액 영업이익율	5.8	5.2	5.0	4.1	3.2	1.9
매출액 순이익율	3.1	1.7	2.2	1.4	0.4	-1.0

이로 인하여,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와 한국건설경영협회가 2013년 4월 18일 개최한 '신정부에서의 건설산업 발전전략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건설산업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우려하고, 건설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시급을 지적한 바 있다.

7) 대한건설협회, 보도자료(2014.9.1).

한국건설법무학회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8]에 의하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적인 부실기업(이자보상비율이 1미만인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기업부분의 구조조정이 지체되고 있다.

전체 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비율 1 미만인 동시에 만기연장이나 이자보조 등 금융지원을 받은 좀비기업 비중이 2010년 13.0%에서 2013년 15.6%로 2.6%P 증가하였는데, 산업별로는 전기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산업에서 좀비기업 비중이 증가한 가운데 건설업의 경우 2010년 26.3%에서 2013년 41.4%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좀비기업이 한정된 시장수요를 잠식하고 노동 및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상기업의 고용 및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자보조 및 만기연장 등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관련한 관행을 개선하여 은행부분의 건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좀비기업에 대한 자연스러운 퇴출을 위해 최근 성장성이 한계에 도달한 가운데 수익성이 악화된 건설업에 대한 구조조정 우선실시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은행이 2013년 5월 1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업종별 예상부도확률(EDF)의 경우 건설업이 9.1%로 가장 높아 성장성이 결여된 부실기업에 대한 과감하고 상시적 구조조정과 금융기관의 신용평가기능을 강화하여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에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할 예정에 있어 향후 건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기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현행 회생제도가 개선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될 경우 우수한 기술력 등을 보유한 건설기업들이 회생하지 못하거나 외국계 자금에 의한 인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8) 한국개발연구원, 보도자료(2014.11.18).

한국건설법무학회

제2절 기업회생과 문제점

제1항 기업회생의 현황

IMF 당시까지 회생 현황을 살펴보면, 1983년부터 1997년까지 15년간 회사정리절차 신청은 한해 평균 51건이 발생되어 이중 27건이 받아들여지고, 13건이 기각되었으며 나머지는 신청자가 자진 철회되는 등 이 기간동안 회사정리가 성공적으로 종결된 경우가 40%에 이르고 있다[9]고 한다.

1983년부터 1998년 기간의 회사정리 평균개시율[=인용/(인용+기각)]은 69.1%이고, 평균종결률[=종결/(종결+폐지)]은 45.7%로서 개시결정이 난 기업 중 1998년까지 성공적으로 재건한 기업은 절반 수준이며, 이 기간 중 총개시기업수 대비 총폐지기업수는 약 30.7%였다[10]고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정 이후를 보면, 2008년부터 5년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은 916개사에 달하지만, 신청기업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280개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얻지 못하고, 나머지 636개사만 겨우 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 636개사 가운데 채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회생인가로 간 기업은 242개사로서 63%가 중도에 탈락, 회생인가 기업 가운데서도 28%(68개사)는 파산, 42.5%(103개사)는 회생절차가 진행중으로서 결과적으로 회생절차에 성공해 시장으로 복귀한 기업은 71곳에 불과하여 최초 회생신청 기업의 7.75%만 졸업에 성공하였다[11]고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3년 4월 18일 주최한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오수근 교수는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사안 중 인가비율 55%, 인가후 폐지없이 종결되거나 진행 중인 비율

9) 구본천, 기업퇴출의 경제분석과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KDI정책포럼 제144호 : 9901), 1999.2.18, 7면.
10) 서정환, 한국의 기업퇴출 제도, 한국경제연구원, 2000.6, 85면, 104면.
11) 서울경제신문, '머나먼 기업 회생의 길', 2013.3.24.기사.

한국건설법무학회

은 51%로 회생절차를 통해 성공하는 비율은 28%에 불과'[12]하다고 하였다. 중소기업청 김형영 부이사관은 '중소기업의 경우 신청기업의 80%가 개시결정, 개시기업의 30%가 인가, 인가기업의 10%가 목적달성하고 있어, 신청기업의 2~3% 정도만 회생에 성공하고 있다'[13]고 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1980년부터 2008년까지 회사갱생절차 신청은 744건, 민사재생절차(화의절차인 1999년까지 신청 건 포함)는 11,100건으로 이 중 회사갱생절차 성공률은 5.4%, 민사재생절차 성공률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4]

<표 6>은 건설공제조합에 가입된 종합건설기업의 도산(회사정리, 화의, 회생) 신청 현황이다. 우리나라 종합건설기업은 대부분은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상태[15]인데, 건설공제조합 설립(1963년) 이래 2014년 11월 30일까지 회생을 신청한 종합건설기업 461개사 중 사실상 회생절차가 종료(폐업 또는 등록말소 포함)된 업체는 378개사, 종료된 업체 중 목적을 달성한 업체는 65개사(신청건 기준 14.1%, 종료건 기준 17.2%)에 불과한 상태로 종합건설기업이 회생절차를 통해 시장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비율은 약 14%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좀더 세분하여 살펴보면,「채무자회생법」의 시행 이전 회사정리절차나 화의절차를 신청한 종합건설기업은 208개사로 절차가 종결된 203개사 중 43개사만 목적을 달성하여 회생절차를 통한 성공률은 20.7%(종료건 기준 21.2%)이었다. 그러나,「채무자회생법」의 시행 이후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 253개사 중 종결된 175개사를 기준으로 할 경우 22개사만 정상적으로 시장에 복귀하여 회생성공율은 8.7%(종료건 기준 12.6%)에 불과[16]한 점을 보면, 건설기업과 관련하여 현행 회생제도가 그 목적을 다

12) 오수근,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5면.
13) 김형영,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2면.
14) 村井健彦, "会社更生法と民事再生法の実効性", TDB(데이코쿠데이터뱅크), 2009, 4면.
15) 2000년 6월까지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가 의무이었으나, 7월부터 임의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수수료율이나 융자금이자율 등이 다른 보증(보험)기관과 대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2014년말 종합건설기업수 10,972개사 중 10,524개사가 조합원으로 가입(가입율 : 95.92%)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건설법학회

하고 있는지,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연도별 회생(회사정리,화의 포함) 종합건설기업 현황

구 분		1982	1985	1986	1987	1992	1993	1994	1995	1996
신 청		1	1	1	3	1	4	1	6	11
진 행		-	-	-	-	-	-	-	-	-
종결	달성	-	1	-	3	-	1	-	-	1
	폐지	1	-	1	-	1	3	1	6	10
	소계	1	1	1	3	1	4	1	6	11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신 청		30	75	24	21	10	3	5	7	4
진 행		-	1	1	1	-	-	-	-	1
종결	달성	7	11	8	6	3	-	1	-	1
	폐지	23	62	15	14	7	3	4	7	2
	소계	30	73	23	20	10	3	5	7	3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11
신 청		8	13	25	38	39	34	37	31	28
진 행		-	-	5	9	6	14	12	12	21
종결	달성	2	1	2	5	4	2	6	-	-
	폐지	6	12	18	24	29	18	19	19	8
	소계	8	13	20	29	33	20	25	19	8

*출처 : 건설공제조합(내부 자료)

16)「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회생계획 이행을 위한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채무자회생법」 시행 이전의 자료와 단순비교하는 것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2011년부터 패스트트랙이 적용되어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도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회생성공율과 관련한 동 자료의 유의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한국건설법무학회

제2항 일반적인 문제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2년 10월 22일 기준 워크아웃 또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졸업한 업체로서 시공능력 150위권내 2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17]한 바에 의하면, 구조조정 중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신규수주를 위한 보증의 어려움(34.9%)과 추가자금조달의 어려움(34.9%), 자산매각의 어려움(16.3%), 기업 이미지 하락으로 민간공사 수주의 어려움(7.0%), 워크아웃 MOU 개선 가이드라인 이행사항 미진(2.3%), 과도한 인력축소 및 임금삭감 요구(2.3%), 신규 수주제한 등 채권단의 지나친 경영간섭(2.3%) 순으로 나타났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의 보증제한(한도, 건수) 완화(58.1%)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공공공사 입찰시 입찰참여 배제 완화(19.4%) 등 정상적인 수주활동 보장으로 나타났다.

1. 수주의 어려움

정상적 회생졸업을 위한 유동성 회복은 우수한 공사수주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공사포기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와 보증(보험)기관의 피해 발생으로 입찰제한 및 보증지원 거부로 신규공사 수주는 난망하며, 설령 수주한 공사를 포기하지 않고 모두 수행하더라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쟁입찰자의 재무상태를 들어 입찰참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신규의 공공공사 수주는 사실상 어려울 뿐만아니라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계약·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

17) 대한건설협회, 보도자료(2013.1.31).

한국건설법무학회

2. 보증기관의 부실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건설기업의 경우 대부분 초기 1개월 정도는 공사를 중단하고 있어 이후의 공사계속에 지장을 초래하고, 단순히 적자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를 포기하거나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도급인의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금청구가 급증하여 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18]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가 일부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진행중인 공사를 포기하는 것은 건설기업이기를 포기하는 일과 같다.

특히, 선급금을 수령한 공사의 잔여공사 자체는 원가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포기하는 것은 선급금을 편취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준공한 현장의 하자에 대한 보수이행을 도외시하는 것은 책임만을 모면하겠다는 것으로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도 높은 것이 사실이므로 수주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시공하는 등 책임감있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대여금 등 확정채무의 상환부담(유동성 부족)으로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지 확정화되지도 않은 장래구상채권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회생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채권자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와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임에도 회생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에서 회생진행 중인 건설기업이 건설공제조합[19] 등 보증기관의

---

18) 대한보증보험(1969년 설립)과 한국보증보험(1989년 설립)의 합병(1998년)으로 탄생한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외환위기로 공적자금 10조 5,497억원 투입(정부지분 94%)되었고, 1993년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의 경우에도 1조 7,791억원의 공적자금의 투입(정부지분 55%)과 조합원 출자금 2조 4,000억원이 무상감자되는 등 3대 보증(보험)기관 중 건설공제조합을 제외한 기관들의 심각한 부실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었고 현재까지도 잔존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도 건설경기 침체로 과당경쟁, 저가낙찰 사례 증가 등으로 보증사고가 증가하여 보증기관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사례(1988년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11년도에 81억원의 손실이 발생)가 있어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공제조합의 보증심사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2013년 2월,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하고 있다.

19)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건설기업 전담 금융기관 설립 필요에 따라 『건설공제조합법』에

한국건설법무학회

보증제한을 문제삼고 지속적인 보증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3. 회생포커스의 전환

회생회사 대부분 회생계획안(자금수지표)상 차입금없이 영업이익만으로 회생계획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작성되고, 업체의 회생 준비년도와 1차년도 변제시기(년도말)를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회생계획의 이행에는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과 달리 금융지원을 요구하거나 회생계획의 정상수행을 내세워 인가후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것은 회생계획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회생포커스를 회생계획안 인가단계에서 회생계획 수행단계로 그 중심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방안은 현재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다. 인가후 목적달성 비율이 낮고 회생계획(자금수지표)과 달리 자금지원 요구, 인가후 회생계획 이행곤란을 이유로 대부분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회생계획 이행가능성에 대한 채권자들의 신뢰는 매우 낮다. 보수적인 조사보고를 통해 실질적인 계속기업가치가 낮은 경우 과감하게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조기종결의 시기를 회생계획상 변제대상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로 조정할 필요도 있다.

4. 장래구상채권의 의결권 미인정

「채무자회생법」 제133조(회생채권자의 권리) 및 제138조(조건부채권과

기반, 상호부조적 성격의 건설공제조합이 1963년 설립되었으며, 출자증권 이외 별도 담보없이 출자지분의 최소 수십배까지 신용공여하고 있어 부실 조합원 당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를 복구할 만한 담보가 거의 없어 건설공제조합 부실화는 곧 건설금융제도의 붕괴를 의미할 정도로 건설공제조합의 자산은 조합원의 건설업유지를 위한 기초적 자산에 해당하므로 건설공제조합의 내부규정에서는 모든 조합원에게 조합 자산을 보호·유지할 선량한 의무부담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건설법무학회

장래의 청구권)에서 장래구상채권에 대하여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에 따라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기존의 판결[20]과 사례[21]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해운(2011회합14)이나 에스티엑스팬오션(2013회합110) 등 조선사에 대한 외국채권자의 장래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국내채권자의 장래구상채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5. 회생단계에서 보증지원의 문제

「채무자회생법」 제31조(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는 회생절차에서 회생에 공적이 있는 채권자·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나 그 대리위원 또는 대리인,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의 관리 또는 환가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범위 안에서 비용을 상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22]고 하고 있고, 보증지원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영업이익은 모든 채권자에게 분배되는 자원이 되는 반면, 회생폐지로 인한 파산 등 이슈가 발생할 경우 회생절차내에서 지원한 보증부분의 리스크는 온전히 보증을 지원한 보증기관만이 부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회생절차 중 신규신용공여나 보증지원을 한 기관의 채권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변제율을 달리하거나 출자전환된 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원의 전향적인 조치가 논의되어야 한다.

한국건설법학회

---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4.10. 선고 2000가합16171 판결에서 장래구상채권금액의 12%를 의결권으로 인정하였다.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건설공제조합의 한울종합건설(2010회합89)에 대한 장래구상채권금액의 6.77%를 의결권으로 인정하였다.

22) 회생절차에서 채무변제 유예 등 특별한 양보를 통해서 채무자가 회생하는데 큰 기여를 하거나 M&A절차에서 인수인 유치 등 기여를 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경우 등을 예로 들고 있다(제31조에 대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용하의 주해).

제3장 구조조정과 기업회생

제1절 구조조정의 필요성

인간은 계속기업의 이념을 가지고 인위적인 조직체로서 회사(기업)를 설립하지만, 자연계의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기업 또한 설립, 유년기, 성장기, 쇠퇴기, 몰락이라는 사이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 말하는 기업의 수명은 30년 전후로 알려져 있으나, 예일대 경제학 교수 리차드 포스터(Richard Foster)와 경영컨설팅 전문기업 이노사이트(Innosight)가 2012년에 발표한 보고서[23]에 의하면, 1960년에는 60년에 육박했던 기업의 평균수명이 1980년대에는 25년으로 급격히 줄었고, 2011년에는 고작 18년에 불과하다고 한다.[24]

이러한 현상은 기업환경과 소비자들의 요구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새로운 기술에 기반을 둔 신생기업들이 쏟아지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글로벌 일류기업의 장기생존 가능성조차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개별 기업의 생성과 존속을 위한 사회적 제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부실기업을 회생시키거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히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구조조정제도가 매우 중요하다.

---

23) 출처 : INNOSIGHT Executive Briefing Winter 2012.

24) 중소기업청이 2012년에 1,000개 기업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창업기업 생존율은 1년차에 84%, 3년차 55%, 5년차 39%, 7년차 30%, 10년차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3년부터 2010년까지 1,381개사를 실태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1/3 이상이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이고,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이거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한계기업(marginal firms)의 정상화비율은 27.4%, 폐업 9.7%, 잠재적 실패기업으로 시장에서 생존하는 비율이 62.9%라고 한다(2013년 10월 30일자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

한국건설법학회

제2절 구조조정의 개념

기업구조조정(Corporate Restructuring)에 대하여「산업발전법」제21조 제5항에서 '영업양도, 합병, 자산매각 등을 통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 정상화 추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부문 재편,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의 각 부분을 혁신하고 조정하는 모든 활동[25]을 말한다.

오늘날 기업들은 글로벌화되고,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경향이 높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소유와 경영의 일체화 성향,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정부 주도의 불균형 경제개발, 경영자의 독단에 대한 기업내 견제와 감시기능 미약 등으로 정부기관이나 채권금융기관 등에 의한 타율적인 방법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다.

기업구조조정 방식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채권단은 대출원리금의 상환유예, 이자감면, 단기대출의 중장기전환 등 만기연장, 채무면제, 대출금의 출자전환(debt-equity swap) 및 전환사채(CB)로 전환, 신규자금 지원, 보증채무 해소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26]하게 된다. 채무자인 대상기업은 대주주 등의 감자 및 유상증자, 대주주의 사재출연, 자산매각, 한계계열사 정리, 인력 감축 및 경비 절감, 핵심사업의 정비, 영업전략의 전환 등의 자구노력을 하게 된다.

채권단 입장에서 보면, 구조조정절차는 공정한 채권추심에 중점을 두고 책임재산의 보전과 환가 그리고 배당을 집단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에서 출

25) 기업재무개선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금융감독원, 2010, 1면.
26) 채무조정과 달리 구제금융(Bail out)은 회생가능성이 없어 퇴출되어야 할 문제기업을 정부 또는 금융기관들이 일방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기업의 생명을 단순히 연명시켜 주는 것으로 기업측의 명시적인 손실부담이나 자구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상 비공개적으로 밀실에서 결정되곤 한다.

한국건설법무학회

발하여 책임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채권추심액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발전되었다가 채권자의 채권추심 외에도 채무자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이익이 고려되는 단계로 발전되어 왔다[27]고 한다.

제3절 구조조정의 분류

기업구조조정 방식은 관련 당사자, 방식, 절차, 효력(강제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법령의 존재여부에 따라 사적구조조정과 공적구조조정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사법부의 직접적 관리하에 구조조정절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적구조조정과 공적구조조정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당사자간의 자율적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적구조조정도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대원칙에 근거하고, 여신총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는 각각「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으로 약칭한다)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으로 약칭[28]한다)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법률의 존재여부에 따라 구조조정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하고,「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의 경우 절차적 하자에 대한 법원의 심사를 받는 부분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채무자기업과 채권금융기관간의 경영정상화계획약정이라는 사적 계약에 기초하여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채무자회생법」에 의한 구조조정만을 공적구조조정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사적구조조정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

27) 오수근, "회사정리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소고", 민사판례연구 제16집, 1994, 443면.

28)「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통합도산법」으로 통상 약칭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법제처가 '긴 법률명 사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학계, 국어학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률 제명 약칭 기준을 발표(2014.10.08)'한 바에 따라「채무자회생법」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제1항 사적구조조정

사적구조조정은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라 민간자율 추진방식, 런던식 추진방식, 정부개입에 의한 추진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 폴란드 등에서 채택된 방식인 민간자율 추진방식(Decentralized Approach)은 이해당사자가 관련 제도 하에서 스스로 이해관계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조정 추진방식으로 대상기업의 규모가 크거나 비교적 시장감시제도가 잘 발달한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다. 런던식 추진방식(London Approach)은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적극적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중앙은행의 중재하에 대상기업과 채권금융기관들 간의 자율협상에 의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정부개입에 의한 추진방식(Centralized Approach)은 스웨덴, 헝가리 등에서 채택된 방식으로서 주로 대상기업의 규모가 작고 단순한 경영지배구조를 가진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다.

1997년에 시작된 IMF사태로 잠재되어 있던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업구조조정의 추진방식으로서 런던식 추진방식을 채택하고, 1998년 6월 25일에는 210개 금융기관들이 상호간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협약을 근거로 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주요수단의 하나로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채택되었다.

제2항 공적구조조정인 회생제도

기업에 적용되는 공적구조조정의 근거로 볼 수 있는 법령은 1912년 3월 18일 제정(1912.4.1.시행)된 조선민사령(조선총독부령 제7호)의 개정(1922년 12월 7일)으로 시행된「화의법」과「파산법」[29], 1962년 12월 12일 제정

한국건설법무학회

(1963.1.1.시행)된「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회사정리법」을 통합·폐지하기 위해 2005년 3월 31일 제정(2006.4.1.시행)된「채무자회생법」이 있다.

<그림 3>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발전 과정[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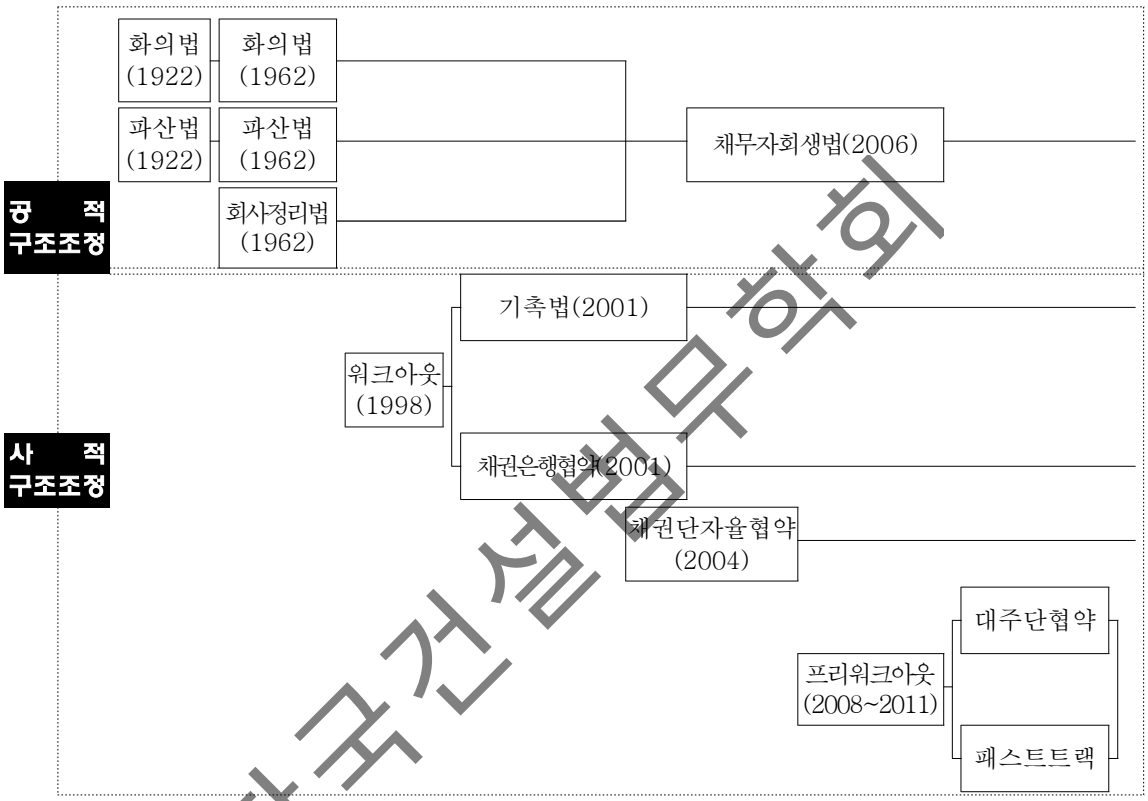

한국건설법무학회

제4절 구조조정 방식별 대상기업의 특성

구조조정 방식 중 어느 방식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구

29) 1912년 제령 제7호 조선민사령 제1조 제11호에 의하여 의용된 파산법과, 1912년 제령 제7호 조선민사령 제1조 제12호에 의하여 의용된 화의법은 5.16 군사쿠데타 후 법률제정사업의 일환으로 1962년 1월 20일 동일한 명칭의 법률로 새로이 제정(1962.1.20.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30) 조항래·박상진,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우리금융경영연구소(금융경제분석 정책연구 2013-03), 2013.9, 11면에서 인용하여 일부 수정하였다.

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경영진이 정직하고 전문경영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경영진이 채권단과 문제를 협의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경우, 법원처리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회사의 생존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사적구조조정 방식이 적합한 반면, 경영진이 정직하지 않거나 전문경영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경영진이 문제를 열어놓고 논의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 상거래에 필요한 운전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 주요거래선 유지가 어려운 경우, 채권자들의 소송가능성이 큰 경우 등에는 공적구조조정 방식이 적합하다.

<표 7> 구조조정 방식별 대상기업의 특성

사적 구조조정 : 워크아웃 등	공적 구조조정 : 회생절차
- 경제적으로 회생이 가능한 경우 - 경영진이 정직하고 전문경영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현금창출능력이 상거래 영업활동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 - 경영진이 채권단과 문제를 협의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경우 - 법원처리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회사의 생존을 저해하는 경우	- 경영진이 정직하지 않거나 전문경영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 경영진이 문제를 열어놓고 논의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 - 경제적 회생가능성이 의문되는 경우 - 상거래에 필요한 운전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 - 주요거래선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 - 수정하기 어려운 계약이 회사에 큰 부담이 되는 경우 - 채권자들로부터 소송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한국건설법무학회

제4장 사적구조조정제도

경제적 회생가능성은 있으나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이 채권자인 채권금융기관들과 협상과 조정과정을 통해서 채무조건의 완화라는 사적화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조정으로 당장에는 손해를 보게 되나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높아져 채권회수율이 제고되고, 정상화되었을 경우 우수한 고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주주는 감자 및 신규증자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지나 궁극적으로는 주식가치가 높아져 투자수익률이 높아지게 된다. 종업원들도 일부 고용감축 등 뼈아픈 조정은 있으나 기업도산으로 임직원 대부분이 실업자가 되는 것보다는 기업의 회생으로 일자리가 안정되고 장기적으로 고용증대를 기대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구조조정의 내용은 주력사업의 특성, 경영실패의 원인 및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등에 따라 달라지며, 구조조정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계획의 내용의 실현가능성(feasibility), 형평성(fairness), 우월성(better than the other alternatives)[31], 채권금융기관 등과는 물론이고 기업내부의 구성원 간에 신뢰성(Trustworthy)이 전제되어야 한다.

제1절 주채무계열제도

제1항 개 요

「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 및 제80조,「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0조 내지 제55조에 근거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주채무계열 재무구조 개선 운영준칙」을 세부적 기준으로 운용 중인 제도이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대해 투자와 부동산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재

31) 파산절차나 청산에 비하여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결과가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채권자 조별로 월등한 기대회수율을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건설법무학회

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1974년에 도입된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협정'과 대기업에 대한 여신한도 설정권을 주거래은행에 부여하여 대기업 집단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1976년에 도입된 '주거래은행 운용협정(주거래은행제도)'이 1978년에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협정'으로 통합되어 일정금액 이상을 대출할 경우 주거래은행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기업에 대한 효율적·체계적 여신관리를 위해 주거래은행의 기능이 강화되었다가 외환위기시 64개 계열과 주채권은행간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경험을 토대로 주거래은행제도를 강화한 것으로 1999년 4월에 도입[32]되었다.

여신규모를 산정하는 금융기관에 은행 외에 계열기업군에 여신을 제공하는 주요 금융기관인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를 포함하고, 주채무계열 선정의 기준이 되는 여신의 범위를 대출금 및 확정지급보증 이외에 사모사채, CP, 미확정지급보증 등을 추가하여 금융기관에 신용위험을 초래하는 모든 신용공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채무계열 선정방법을 여신절대금액(2,500억원 이상) 기준에서 신용공여 규모 순위 "상위 60대"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은행업감독규정」제63조제3항이 2000년 1월 개정되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은행업감독규정」을 2002년 3월 29일 개정하여,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신용공여 규모 순위 "상위 60대 계열" 에서 전년말 현재 금융회사로부터의 신용공여 규모가 전전년말 현재 금융회사 전체 신용공여 규모의 0.1% 이상인 계열로 변경하고, 주기업체가 구조조정 등 채권단공동관리중인 계열을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으며, 신용공여 규모를 산정하는 금융회사에 은행, 보험사, 종금사 외에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추가하였다.

웅진, STX계열 등 정상 판정을 받은 주채무계열이 회생절차에 돌입하거나 금융권 차입을 회사채·CP 등 시장성차입으로 전환하여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된 대기업그룹이 부실화되는 등의 문제점[33]이 노출됨에 따라

32) 선욱,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발전", 도산절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도산전문법원 도입 연구 심포지엄(2014.7.14) 자료집, 199면.

대기업그룹의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부실우려 계열에 대해 신속한 자구계획을 추진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주요 4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TF를 운영하여 마련한 개선방안에 따라, 2014년 2월 25일「은행업감독규정」제79조가 개정되어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인 전전년말 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의 0.1%에서 0.075%로 변경되었다.

<표 8> 연도별 주채무계열 변화

구분		주채무계열 기업수 (개)	선정기준 (억원)	계열사 (개)	신용공여액 (조원)	
					합 계	평 균
2,500억원	1999	57	2,500	1,990	100.1	1.756
	2000	60	2,500	1,863	124.1	2.068
	2001	60	2,500	1,830	111.8	1.863
0.1%	2002	35	4,440	1,306	71.2	2.034
	2003	29	6,386	1,297	67.6	2.331
	2004	25	6,258	1,306	79.3	3.172
	2005	29	6,655	1,551	85.4	2.945
	2006	36	6,885	1,849	103.3	2.869
	2007	42	7,428	2,213	123.1	2.931
	2008	43	9,182	2,562	157.1	3.653
	2009	45	12,107	3,050	245.3	5.451
	2010	41	13,946	3,087	225.5	5.500
	2011	37	13,962	3,376	238.7	6.451
	2012	34	14,622	3,562	267.2	7.859
	2013	30	16,152	3,487	260.0	8.667
0.075%	2014	42	12,251	4,186	282.3	6.721
합계		603	137,911	34,329	2,259.7	66.271
평균		38	8,619	2,146	141.2	4.142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4.7) 등 취합

33) 동양그룹은 회사채 등 시장성 여신을 조달하여 은행 차입금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주채무계열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채권단의 모니터링 기능에서 이탈하였으며, 이로 인해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부실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국건설법무학회

제2항 주요 내용

1. 대상 기업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잔액이 전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신용공여잔액 대비 0.075% 이상인 계열기업군(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이다(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 제1항).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중 자산규모, 해당 계열기업군내에서의 영향력 등 실질적인 지위를 참작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업체(주기업체)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이거나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회사와 동일인인 기업집단, 회생절차나 파산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 및 그 후속 협약, 또는「기촉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또는 채권은행) 공동관리를 개시한 경우에는 주채무계열로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주채무계열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 제1항 단서).

2. 채권금융기관

은행법에 의한 은행,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종합금융회사, 보험사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말한다(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 제2항).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해당 주채무계열 주기업체의 주채권은행으로 하고,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은 주채무계열 주채권은행과 그 밖의 채권은행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지 아니하면 금융감독원장이 결정하며,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또는 그 소속기업체에 관한 여신상황을 포함한 기업정보를 종합적으

한국건설법무학회

로 관리하게 되고, 금융기관은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기업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한다(은행업감독규정 제80조).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는 기존 주채권은행의 동의를 얻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신용공여 관리업무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은행의 의견을 들어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은행업감독규정 제80조).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주채무계열 전체의 차입금 상환계획을 포함한 부채비율 감축계획에 관한 사항, 주채무계열 전체의 구조조정 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주채무계열과 채권은행간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 여신거래와 관련한 주채무계열의 협조사항, 재무구조개선약정 불이행시 여신회수, 신규여신 취급중지 등 채권은행이 주채무계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은행업감독규정 제82조 제3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2조 제4항).

3. 계열사의 채무보증 취득 제한

금융기관은 주채무계열의 소속기업체(해외 현지법인은 제외)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서 제한하고 있는 채무보증을 해당 주채무계열의 소속기업체(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로부터 신규로 받아 여신(원화대출금, 외화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34], 지급보증대지급금, 확정지급보증을 말함)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기존채무보증의 기한연기를 위한 재약정은 신규채무보증으로 보지 않는다(은행업감독규정 제81조).

34) 수입대금결제를 기한부조건에 의하는 경우 신용공여측이 누구인가에 따라 수출상의 신용에 의하는 경우에는 Shipper's Usance라 하고 은행의 신용에 의하는 경우에는 Banker's Usance라고 하는데, 내국수입유산스(Domestic Import Usance)는 이 Banker's Usance의 일종으로서 외국환은행이 기한부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동 신용장에 의하여 외국의 수출업자가 발행한 수출환어음을 인수·매입함으로써 어음기간 동안 국내수입업자에게 공여하는 신용을 말한다.

한국건설법무학회

제2절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제1항 개 요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적인 건설기업에게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재무구조 및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원활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채권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는 제도이다(대주단협약 제1조).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Agreement Relating to Construction Companies)(이하 '대주단협약'으로 약칭한다)은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 4월 1일 제정된 이후 건설경기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운영기한 연장이 계속되어 2014년 12월 31일에 만료되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급순위 300위 안의 건설사가 대주단협약에 가입을 신청하면 주채권금융기관이 회생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가입을 승인하거나 반려하게 되는데, 대주단협약에 가입이 승인되더라도 유동성 지원 여부가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중소기업 패스트트랙[35]에 제공된 것과 같은 각 종 인센티브[36]가 미미하여 주로 채무상환유예 용도로 활용되는 등 그 실적이 미미하다. <표 9>는 2008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년도별 대주단협약을 적용받은 업체수로서 총 57개사 중 37개사가 중단되고, 17개사가 종결되어 현재 3개사가 적용 중이다.

35)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신용도 취약(Gray Zone)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거나 키코(KIKO : Knock-In, Knock-Out, 환율하락으로 인한 환차손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출기업과 맺는 일종의 계약으로 파생상품) 등으로 피해를 입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에 따라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당초 2014년 12월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동부건설의 회생절차 신청(2014년 12월 31일)에 따른 하수급인인 중소기업의 보호하기 위해 1년 연장하였다.

36) 패스트트랙 취급여신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매출이나 이익처럼 과거의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닌 미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여러 핵심지표를 묶는 평가기준)대상에서 제외, 중대과실을 제외하고 취급자 면책, 금융감독원의 은행경영실태평가(CAMELS)에 실적 반영, 공헌자 표창, 성과공유, 법정담보권 다음 순위의 우선변제권 부여 등이다.

한국건설법무학회

<표 9> 년도별 대주단협약 적용 현황

년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업체수(개)	40	12	1	2	2	-	-	57

제2항 주요 내용

1. 채권자 기구

대주단협의회는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포함),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의 금융기관 중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대주단협약 제2조 제2호)으로 이루어진 비상설 조직으로서 2013년말 기준 155개 금융기관이 가입되어 있다.

대주단상설협의회는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및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 대표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고, 협약의 개폐에 관한 사항, 협약 가입, 그 밖의 협약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대주단협약 제3조 내지 제7조). 대주단자율협의회는 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하고,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관련 사항, 지원대상기업 개별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지원 방안, 그 밖의 관련 필요 사항을 관장하며, 채권액 기준으로 3/4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대주단협약 제8조 내지 제10조).

2. 대상 기업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주채권금융기관이 대한건

한국건설법무학회

설협회에서 최근에 발표한 시공능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영업력과 인지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기업 및 이와 연관된 시행사가 대상이지만,「기촉법」,「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업과 상호저축은행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시행하는「PF대출 자율구조조정협약[37]」을 적용하는 건설기업은 제외된다(대주단협약 제2조 제5호).

주채권금융기관은 건설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주채권금융기관에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한 경우, 각 채권금융기관이 건설기업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주채권금융기관에 요청한 경우, 그 밖에 주채권금융기관이 건설기업에 대한 유동성 부족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채권행사 유예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한다(대주단협약 제11조 제1항).

적용 대상으로 선정되었어도 주채권금융기관은 일시적인 채권행사 유예로 유동성 부족의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등급이 BBB-(투자적격등급 중 최하위) 이하인 경우, 천재지변 외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비협약채권자의 상환청구 등이 있어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채권행사 유예로는 지원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유동성 지원이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채권행사 유예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대주단협약 제11조 제2항).

3. 채권단 지원

주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행사 유예 통보가 있으면 변제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38]의 행사가 유예되며, 채권금융기관은 상계, 담보권

37) 일시적으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대출 사업장에 대해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고자 2007년 5월 저축은행중앙회 주관으로 마련한 협약으로서 대출합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중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으로 채권저축은행이 워크아웃을 결정한 경우 기존채권의 원리금 감면 또는 신규대출금 지급 등 채권재조정을 하게 된다.

38) 분할상환조건부 여신, 정책자금대출, 상업어음할인, 매출채권담보대출,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

한국건설법무학회

행사, 보증한 채권금융기관의 사전구상권 행사 및 보증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청구,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유동화 증권의 차환발행 또는 회전취급 거부 등이 금지된다(대주단협약 제13조 제1항 및 제6항). 채권행사 유예기간에는 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추가 담보취득(다만, 채권행사 유예 통보일 전에 여신약정에 의하여 담보를 취득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을 하지 않지만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금융기관과 지원대상기업 간의 별도 합의에 의한다(대주단협약 제13조 제10항).

이행점검 결과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계속적인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유예대상 채권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을 합한 기간이 총 3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주단협약 제13조 제2항).

채권금융기관은 대주단자율협의회에서 지원대상기업의 유동성 해소를 위하여 신규자금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의한 후 지원규모 및 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원대상기업에 지원하게 되는데, 신규자금 지원에 관한 의결은 필요하지 아니하며, 신규자금지원에 동의하는 채권금융기관만이 신규자금 지원의무를 부담하고, 동의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손실분담 등을 부과할 수 없다(대주단협약 제16조 제1항).

대상 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신규자금 지원 시에는 지원대상기업과 주채권은행 간 재무개선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채권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집행하게 된다(대주단협약 제18조).

제3절 채권단 자율협약

제1항 개 요

은 채권 등에 대하여는 채권금융기관이 지원대상기업에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행사가 유예되더라도 이자(지원대상기업이 보증한 채무에 대한 이자 포함)와 수수료 부분은 제외된다.

한국산업법학회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기업이 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권단과 해당 기업의 사적 계약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응급처리적인 구조조정의 방법(약칭 '채권단협약')으로서「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비하여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채권단과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폭이 크고, 기업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제2항 주요 내용

1. 대상 기업

채권단과 기업이 자발적,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서 흑자를 내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흑자도산 위기에 빠진 기업이 그 대상으로 주로 금융권 여신이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구조조정할 때 쓰는 방식[39]이다. 그러나 해외 차입이 많아 워크아웃이 결정되면 해외 채권자들이 디폴트(채무불이행)로 간주해 채무 상환을 한꺼번에 요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을 반영해 채권단자율협약으로 결정하는 경우[40]도 있다.

한국기업법무학회

39) 워크아웃은「기촉법」에 근거하여 채권액 500억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아웃과 채권단자율협약에 근거하여 채권액 500억원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워크아웃으로 구분되는데,「기촉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금융기관은 제2금융권이 포함된 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권단자율협약의 적용을 받는 채권은행은 제2금융권이 제외된 은행 위주로 구성되고 있다. 한편, 기업구조조정협약은 1998년 6월 금융기관들 자율협약으로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진행시 근거가 되었으며, 2001년에 도입된「기촉법」의 전신으로서 2005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기촉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전국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2007년 1월 구「기촉법」내용을 대부분 원용한 '기업구조조정협약'을 제정하였으며, 이 협약은 2007년 11월 4일에 부활한「기촉법」의 전신이다.

40)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동부그룹이 채권단자율협약을 체결하였다.

2. 채권단 지원

자율협약에는 모든 채권단이 아닌 주요 채권단만 참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채권단이 시행하기로 결정하면 주채권자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킨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채권단의 채무유예, 긴급자금 지원 등에 대응하여 기업은 자산매각 및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

자율적 협약이니만큼 제도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사전적으로 이뤄지는 구조조정이므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채권단의 100% 동의가 쉽지 않고, 자율협약에 포함되는 채무(기업어음이나 채권 등)의 범위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제4절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제1항 개 요

채권은행이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하여 부실징후기업 해당 여부를 평가하고,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채권은행협의회를 설치·운영하며,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거래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채권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 제1조).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이하 '채권은행협약'으로 약칭)「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근거한 것으로 2001년 6월 29일 제정되어 컴퓨터 모니터 생산업체인 '코리아 데이타시스템즈(KDS)'에 처음 적용된 이후, 수차례

한국건설법무학회

개정(최종개정 : 2011.4.20)되었고, 2014년 9월말 기준 24개 기관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92개 기업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은행은 신용위험 평가결과 B등급(일시적인 유동성 부족기업)에 대하여는 Fast-Track프로그램으로, C등급(지원시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Fast-Track 또는 워크아웃 대상 중소기업으로 총 9,085개사를 선정하여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상환유예, 금리인하 및 신규자금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선정기업의 67%인 6,126개 기업을 정상화시켰다.[41]

제2항 주요 내용

1. 대상 기업

전국은행연합회 기업신용거래정보상 전체 금융기관 신용공여합계액이 500억원 미만 기업 중 개별은행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42]로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을 말한다(채권은행협약 제2조 제4호 내지 제5호).

2. 채권자 기구

41) 금융감독원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구조조정 추진 중소기업 간담회'(2014.4.8) 관련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동 회의에서 중소기업들은 구조조정 추진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확대,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강한 P-CBO를 워크아웃 협약채권에 포함, 워크아웃 추진시 자구계획 이행기간 장기화, 구조조정기업의 정책자금 활용 확대, 은행의 PM(Project Management)사에 대한 관리 강화, 워크아웃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은행이 파견하는 자금관리인에 대한 선정기준과 수행업무에 대한 감독 및 감찰, 경비집행 등에 대해 일부 은행의 규정 정비 등을 건의하였다.

42)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정기 신용위험평가 대상 중소기업 16,994개사 중 재무구조가 취약한 1,609개사에 대하여 세부평가(최근 3년간 영업현금흐름 적자, 이자보상배율 1미만,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등급 등)를 실시한 결과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125개사(C등급 54개, D등급 71개)로 전년대비 11.6%(13개) 증가하였다(금융감독원, 2014.11.19.자 보도자료).

한국건설법무학회

채권은행협의회는 협약에 의한 채권은행상설협의회(이하 “상설협의회”라 한다), 채권은행자율협의회(이하 “자율협의회”라 한다) 및 채권은행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채권은행”이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등으로서 협약에 가입한 기관을 말한다. 다만,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제외한다(채권은행협약 제2조 제2호).

상설협의회는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및 협약에 가입한 채권은행의 대표자로 구성하고,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의장이 되며, 협약의 개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가입 등 협약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채권은행협약 제3조 내지 제5조).

자율협의회는 해당 기업에 대한 기업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채권은행 공동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채권은행간의 협의를 위한 것으로서, 해당 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행으로 구성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자율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채권은행협약 제13조 제1항).

자율협의회는 해당 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관한 사항,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및 지속여부 결정,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 및 연장,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의 체결, 특별약정의 이행실적 등에 대한 점검·평가 및 조치,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 계획의 수립,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또는 종결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채권은행 공동관리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채권액 기준으로 3/4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은행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채권은행협약 제14조 및 제15조).

한국건설법무학회

조정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신용평가회사·금융관련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기업구조조정에 전문성이 있는 자, 기업구조조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상설협의회가 선정하는 4명 이내의 위원과 1인의 위원장으로 구성(채권은행협약 제31조 제2항)하고, 채권은행간 자율적 협의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아니하는 이견(자율협의회의 의결에 대한 이견은 제외)의 조정, 채권의 매입·상환 가격 및 조건에 대한 조정, 위약금의 가액 및 납부 받은 위약금의 배분에 대한 조정, 자율협의회 의결사항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 이행에 대한 결정 등을 심의하며,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채권은행협약 제32조 및 제35조).

3. 신용위험 평가

정기평가 대상은 해당 채권은행의 채권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이며, 수시평가 대상은 해당 채권은행의 채권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법인세법시행령」제6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채무자회생법」상 회생진행·폐지 기업과「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등에 의한 채권은행공동관리 진행·중단 기업, 부실화 위험이 없는 여신을 제외하고 해당 채권은행의 채권액이 30억원 미만인 기업을 제외할 수 있다.

정기평가는 매년 5월말 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대상기업을 선정하고 7월말까지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수시평가는 3, 6, 9, 12월말 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대상기업을 선정하고 5, 8, 11, 2월말까지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한국건설법무학회

<표 10>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대상 기업

정기평가	수시평가
- 회계연도 기준, 최근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부(-)인 기업 - 회계연도 기준,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0미만 기업 -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른 신용위험평가 모형의 평가결과 “요주의” 상당등급 이하 분류기업 - 그 밖의 채권은행 자체기준에 의하여 세부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 - 최근 3개월 이내 당좌부도 -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등급 3단계 이상 하락되어 요주의로 분류된 기업 -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관리대상으로 규제중인 기업 - 2년 연속 매출액 20%이상 감소기업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신용등급(CB)이 8등급 이하로 하락 - 그 밖의 채권은행 자체기준에 의하여 세부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기본평가 종료 후 3개월(수시평가는 2개월) 이내에 세부평가를 완료하여야 하되, 급격한 신용도 악화 등으로 신속한 세부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외감기업, 비외감기업, 개인사업자로 구분하여 각 평가대상 기업의 특성을 감안한 평가기준에 따라 세부평가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분류한다(채권은행협약 제11조).

4. 부실징후기업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한 기업에 대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에 들어가거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당 기업에 신청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한국건설법무학회

<표 11>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관리절차 종류

구 분	방 법
공동관리	- 주채권은행에 의한 채권은행 공동관리 - 개별 채권은행에 의한 채권은행 사전공동관리
단독관리	- 개별채권은행에 의한 채권은행 단독관리 (주채권은행이 총채권액의 75%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총채권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

해당 기업은 자체적인 경영정상화계획안을 마련하여 주채권은행에 공동관리 또는 채권은행에 사전공동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채권은행은 공동관리 또는 사전공동 관리절차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율협의회 소집 또는 신용위험평가를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주요 영업자산의 경매진행 등 채권자의 법적절차 착수로 사실상 청산중인 경우, 장기간 조업중단, 상거래채권 미결제로 인한 부도, 비협약채권자의 상환청구 등으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보증한 채권은행이 채권은행 또는 비협약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공동관리 또는 사전공동관리절차 추진이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선의의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사전공동관리, 단독관리 절차를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

5. 관리절차

자율협의회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날부터 자금관리인을 파견하여 해당 기업의 자금관리

한국건설법학회

등 주요업무의 집행을 관리·통제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자금관리인의 승인 없이 동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채권행사 유예나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채권은행협약 제17조). 사전공동관리절차를 추진하는 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재조정을 포함한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하고, 해당 기업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채권은행협약 제17조의2 제2항). 사전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여타 채권은행이 채권(정책자금대출 및 분할상환 조건부 시설자금대출의 분할상환금 제외) 상환을 요구할 경우 사전공동관리절차를 진행 중인 채권은행은 해당 채권은행에 그 간의 채권재조정 내역을 포함하여 사전공동관리절차 진행 중인 기업임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채권의 만기연장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채권은행협약 제17조의2 제5항).

공동관리절차로 전환될 경우 사전공동관리절차 개시일 이후 개별 채권은행 및 여타 채권은행이 행한 신규지원자금은 법정 담보권 다음으로 다른 채권은행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고, 공동관리절차로 전환한 이후 추가 신규자금 지원시에는 분담대상 여신에서 제외하고 배분금액에서 차감한다(채권은행협약 제17조의2 제8항).

개별 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단독관리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부분 협약가입 기관이 운용하고 있다.

<표 12> 중소기업 대상 주요 은행별 자체워크아웃 프로그램 운영 현황

은 행	제 도 명	은 행	제 도 명
신 한	고객성공프로그램	우 리	프리워크아웃제도
하 나	HANA Turn around	국 민	내부기업개선작업
외 환	내부기업개선작업	산 업	KDB Work-Out
기 업	Change-up 프로그램	수출입	중소기업파워업프로그램
수 협	프리워크아웃작업	농 협	기업개선작업

한국법무학회

기간 내에 특별약정이 체결되지 않거나 해당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약정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특별약정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관리절차 중 회생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 신청이 있는 경우,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 상거래채권 미결제로 부도가 나거나 그 밖에 비협약채권자의 상환청구로 공동관리절차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관리절차 지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절차가 중단된다(채권은행협약 제27조).

6. 채권행사의 유예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제1차 자율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 채권은행은 소집통보가 발송된 때로부터 제1차 자율협의회 소집일(소집통보가 발송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까지 채권행사(상계, 담보권행사, 보증한 채권은행의 사전구상권 행사 및 보증한 채권은행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포함하며, 시효중단을 위한 어음교환 회부는 제외)를 유예한다(채권은행협약 제18조 제1항).

자율협의회는 해당 기업의 규모, 채권금융기관의 수 등을 감안, 제1차 자율협의회에서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유예개시일로부터 1개월(자산·부채의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이 경우 유예대상 채권의 범위 및 조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자율협의회는 한 차례만 위 유예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채권은행협약 제18조 제3항).

채권은행은 채권행사 유예기간 중에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예금, 매출채권, 부동산 등 추가 담보취득과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지만 채권은행이 보증인인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피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주채권은행에 통보하고 자

한국건설법학회

율협의회 결의로 채권보전조치를 할 수 있다(채권은행협약 제18조 제5항).

채권은행은 채권행사 유예기간 중에는 해당 기업이 발행한 자금융통 목적의 어음 및 수표가 지급 청구되어 부도 처리된 경우「어음교환업무규약」에 의한 거래정지처분을 하지 않으며,「신용정보관리규약」(신용불량정보대상자)에 의한 등록을 유예한다(채권은행협약 제18조 제6항 및 제7항).

채권은행은 채권행사 유예기간 중 또는 공동관리 기간 중(공동관리기간 중에는 자율협의회에서 다른 내용으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에는 원리금 연체 및 대지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연체대출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대한 사고통지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공동관리절차 기간 중에 채권재조정된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원리금 연체 등)에는 보증약관에 의거 보증기관에 보증사고통지를 하여야 한다(채권은행협약 제18조 제8항).

7. 채권재조정 등

채권재조정이란 채권은행이 보유채권에 대하여 만기일 연장, 원금 감면, 발생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출자전환, 제반 수수료 감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채권은행협약 제2조 제7호)을 말한다.

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율협의회의 의결로써 해당 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 신규자금지원 또는 자산인수를 추진할 수 있다(채권은행협약 제21조 제1항). 채권은행이 행한 신규지원자금은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다른 채권은행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는 것으로 약정이 체결된다(채권은행협약 제21조 제4항).

채권은행이 해당 기업의 상거래채권자와 팩토링계약 또는 외상매출채권 전자대출 약정 등을 통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상거래채권을 인수하는 한도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자율협의회는 의결로써 해당 채권은행

한국건설법무학회

의 채권재조정 일환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상거래채권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인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채권은행협약 제21조 제3항).

8.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지원 사항에 대한 자율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한 채권은행은 자율협의회의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율협의회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은행은 자율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참석하여 반대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에 한하며 그 기간 내에 채권매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자율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43]된다(채권은행협약 제22조 제1항).

자율협의회는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채권의 매입가격 및 조건을 반대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결에 찬성한 자율협의회소속 채권은행이 경영정상화 이행기간 내에 매수하게 되는데(채권은행협약 제22조 제2항) 채권의 매입·상환의 가격 및 조건은 자율협의회와 반대채권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채권의 매입·상환의 가격을 확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우선 지급하고, 협의된 가격과 잠정 가격과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43)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 제22조제1항 단서 '기간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자율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협약에 가입한 당사자로서 원고(국민은행)가 의결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의결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의 이자가 감면되었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피고들(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도 감액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서울고등법원 2009.5.21.선고 2008나82836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자율협의회의 의결에 참여한 채권은행에게 그 의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들에게 의결권이 부여되고 원고에게는 의결권이 부여된 바 없었던 이상, 원고가 이와는 별개인 다른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의결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과 관련하여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이자감면 등 채권재조정에 관한 이 사건 의결의 효력이 당연히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에 대해서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11.7.28.선고 2009다41748 판결).

한국건설법무학회

조정위원회가 채권의 매입·상환의 가격 및 조건을 결정한다(채권은행협약 제22조 제5항 및 제6항).

8. 특별약정 체결

자율협의회는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에 의결을 거쳐 해당 기업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특별약정에는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채권재조정계획, 매출액, 영업이익 등 해당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등의 경영계획, 자구이행, 제3자 매각 등을 포함한 사업구조조정계획 및 기업지배구조조정계획, 경영계획·사업구조 또는 기업지배구조조정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노동조합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채권은행협약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5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항. 개 요

1. 도입 배경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44]으로 한다(기촉법 제1조).

44) 금융감독원이 2013년 12월에 8개 국내은행의 워크아웃 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신용위험평가의 적정성, 경영정상화 MOU 체결 및 이행실적 점검 등 사후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정기신용위험 평가시 우량등급으로 판정한 기업이 단기간 내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일부 은행에서 발생하는 등 신용위험 평가의 관대화 경향, 신용위험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한국건설법학회

IMF 외환위기 직후 기업부실이 심화된 가운데, 회생절차를 통한 공적 구조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구조조정 관행이 미정착됨에 따라 구조조정 절차를 법제화하여 금융회사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도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이하 '워크아웃'으로 약칭)은 채권단 자율협약과 유사한 것으로 여신규모가 500억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며, 법률로 강제성을 부과했다는 특징이 있고, 채권단의 100% 동의 대신 총 채권액의 75%만 동의해도 워크아웃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욱 신속할 수 있다. 워크아웃의 경우 채권단의 지원에 앞서 주주, 종업원, 경영진의 손실부담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2. 필요성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45]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 유럽 재정위기 지속, 주요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건설업 추가 부실 우려 등으로 신규 구조조정 대상기업 발생 가능성, 「기촉법」이 실효될 경우 채권단간 비협조 등으로 인해 시장 자율의 워크아웃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그

위하여 운영 중인 신용위험평가위원회가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운영,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에 대하여 워크아웃을 개시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다.(2014.3.17.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45) 회생절차의 경우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채무감면이나 출자전환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회수 금액이 적어지나, 워크아웃은 채무감면이나 출자전환보다 만기연장이나 유동성 지원, 이자감면, 이자율 인하 등의 지원이 회생절차에 비해 많이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큰 편[은행은 통상 50% 이상 회수를 예상, 2003년 워크아웃 적용된 SK네트웍스(구 SK글로벌)는 172%, 2001년 적용된 하이닉스는 102%, 현대건설은 118%의 회수율을 달성하였다]이며, IFRS가 적용되는 2011년 이전에는 워크아웃의 경우 고정 이하로 분류되어 통상 20%를, 회생절차의 경우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되어 통상 50~100%의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IFRS는 개별기업의 현금흐름(추정)과 담보처분시기 및 담보가치에 따라 충당금 적립률을 다르게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별 기업마다 다른 적립률이 산출되고 IFRS에서 손상정도를 측정(대손충당금 추정)하는 원칙은 '해당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로 측정하기 때문에 IFRS가 적용되는 2011년부터는 반드시 워크아웃이 회생절차보다 충당금 적립부담이 적다고 할 수는 없다.

한국건설법무학회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 등의 개선정도에 있어서 워크아웃기업이「채무자회생법」적용 기업에 비해 우월한 성과를 보였으며, 건설업·조선업 등 수주산업의 경우 채권자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워크아웃 개시 이후 이러한 권리관계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채무자회생법」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나 대부분 제조업은 워크아웃이 우수하므로 산업별 특성을 감안한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실증분석 결과로 나타난 유용성[46]을 보더라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3. 상시화 논란

주채권은행의 이기적 행위로 채권금융기관 반발과 워크아웃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 실추, 채권자 중 일부 은행만이 주도하는 구조조정 절차이기 때문에 채권자간 평등권 문제 야기, 사법권이 없는 은행들이 기업에 대해 사법부인 양 권력을 행사하는 문제 등 위헌 소지, 도산 직전 회사의 경영진들이 외부인과 맺은 불합리한 거래들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부인권 등의 부재,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조정이다 보니 금융당국의 개입여지가 많아 관치의 문제가 상존한다는 것이다.

2001년「기촉법」최초 제정 이후 지금까지 4차례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성 논란으로 인하여 2013년 12월 네 번째 제정시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기촉법」을 상시법화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및 법무부·대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현행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정부입법안을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라는 부대결의를 함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이화여대 도산법센터 오수근 교수가 2014년 11월 26일 공청회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46) 상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2010.12.08)에서 KDI 강동수 박사 발표내용.

한국건설법무학회

이 방안[47]은「기촉법」에 내재된 위헌성을 제거하고 관치금융 논란을 차단하기 위하여 채무자 형평성 보완을 위해서는 적용범위를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 채권자 형평성 보완을 위해서는 현행 국내 채권금융기관으로 나열된 열거주의 방식을 '채권의 성질'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채권자가 참여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 반대채권자의 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격과 매수조건이 해당 채권의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도록 명시,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신규 신용공여 의무의 발생시점을 채권자와 채무자간 약정이 체결된 시점으로 명확화, 협의회 의사결정에 대한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실체적 하자에 대하여도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화, 기업신용위험평가에 대한 기업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4. 연도별 실적

2013년도 국정감사 자료[48]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워크아웃을 신청한 120개의 기업 중 25개 기업만 최대주주가 변경되고 95개 기업(80%)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경영진(임원)의 경우도 41개(34.2%) 기업만이 경영진을 교체하고, 79개 (65.8%)의 기업은 기존 임원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국건설법무학회

<표 13> 기업규모별 워크아웃 현황

구 분	졸업	중단	진행	합계
대 기 업	14	13	25	52
중소기업	12	33	23	68
합 계	26	46	48	120

47) 오수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 자료집, 2014.11.26, 1~24면을 요약.
48)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채권금융기관 워크아웃 기업 현황'.

채권금융기관이 120개 기업에 지원한 금액은 총 10조 4,194억원으로 대기업에 9조 4,547억원, 중소기업에 9,647억원으로 대기업에 대한 채권단 지원이 전체의 91%이다. 대기업에 지원한 금액 중 4조 9,641억원이 금호그룹(금호산업 및 금호타이어)에 지원(출자전환 3조 1,340억원, 신규여신 1조 8,301억원)되었으나, 자구노력은 1조 8,830억원(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 3,930억원, 유가증권 매각 1조 1,557억원, 사업부 통폐합 인건비 경비절감 3,343억원 등)에 불과하였다.

<표 14> 워크아웃 기업의 재무개선 방법 현황

(단위 : 억원)

채권단 지원	금액 (억원)	합계 (비율)	통합 (비율)	합계 (비율)	금액 (억원)	대상기업 자구노력
유상증자	2,651	104,194 (65.7%)	158,610 (100%)	54,416 (34.3%)	7,714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유상증자
					1,099	그 밖의주주 유상증자
출자전환	44,713				860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사재출연
					37,071	기업자산 매각
신규여신	56,830				7,672	경비절감 등

2010년 12월 8일 개최된 '상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산업은행 류희경 실장은 비협약채권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개시하고, 채권단의 과감한 출자전환(7,373억원)으로 2006년도 -6,086억원이던 자기자본이 2009년에 3,160억원을 확충되는 등 재무구조가 개선된 팬택[49] 사례, 대주주의 협조 및 채권단의 과감한 지원(운영자금 3,000억원, 신규RG(Refund Guarantee, 선수금환급보증) 215백만불

49) 이후 팬택은 상거래채권 72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 악화로 2014년 8월 12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98)하여 2014년 8월 19일 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다.

한국건설법무학회

등을 통해 워크아웃을 추진한 결과, 선박건조가 정상화되면서 조기 경영정상화(채권단 익스포져 2,062억원 감축)가 기대되는 대한조선[50] 사례, 채권금융기관간 공평한 손실분담기준을 마련하여 구조조정 원칙에 충실한 워크아웃을 추진한 결과 외부투자(500억원) 유치를 통해 워크아웃 개시후 3개월 만에 조기 종결하게 된 KHE[51] 사례를 성공사례로, 주채권은행의 부실징후기업 판정에 대하여 재평가 요청 및 투자유치를 사유로 워크아웃을 거부하다가 자금회수 부진 및 투자유치 실패에 따른 부도발생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톰보이 사례를 실패사례로 들었다.

제2항 주요 내용

1. 대상 기업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회사로서 신용공여액[52]의 합계가 500억원(기준금액) 이상인 회사로서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이 없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53]이다.

한국건설법무학회

50) 2011년 6월 대우조선해양에 위탁경영되던 대한조선은 대주그룹 해운계열사 지급보증 600억원의 현실화 문제와 계속 영업손실로 2014년 6월 27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64)하여 2014년 7월 7일 개시결정, 2014년 10월 28일 회생계획에 대한 강제인가를 받았다.

51) KHE(Korea Heat Exchanger)는 워크아웃의 신청과 동시에 M&A를 추진하여 2009년 9월 29일 큐캐피탈파트너스가 500억원(큐캐피탈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인 한국모태펀트 QCP13호가 200억원, 기업구조개선펀드 PEF QCP1호가 275억원, 한미창업투자의 한미그로스에쿼티투자조합이 25억원)으로 인수(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 : 지분율 77.25%)하였다.

52) 대출, 어음 및 채권매입, 시설대여, 지급보증,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기촉법」 제2조 제6호).

53)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채무자회생법을 제외)에 우선하여 「기촉법」이 적용된다.

2. 채권자 기구

「기촉법」의 적용대상 채권금융기관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로서「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농협은행,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54]이다(기촉법 제2조 제4호).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로서 협의회의 소집 및 운용은 주채권은행이 주관하고, 주채권은행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은 단독 또는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합하여 대상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기촉법 제15조).

협의회 소집이 통보된 후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경영정상화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된 주식 포함)을 채권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매각하거나 관리권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관 외의 자로부터「기촉법」에 따른다는 확약서를 받아서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합이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에 1주를 더한 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확약서를 받지 아니하고 협의회의 의결로 매각할 수 있다(기촉법 제15조).

협의회는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54) 쌍용건설의 경우 2013년 12월 31일자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 등 700억원 규모의 채권을 상환해야할 상황이었으나, 보유 중인 현금이 19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여 쌍용건설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지원하여 정상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가 남양주 화도 PF 원금(850억원)과 이자(385억원)를 회수하고자 지급보증을 선 쌍용건설 계좌를 가압류함에 따라 채권단은 자금 지원이 군인공제회에 돈을 대주는 꼴인데다 건설경기 악화로 적자가 예상된다며 자금 지원을 중단하자 쌍용건설이 12월 30일자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사례와 같이 비협약채권자에 의한 워크아웃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2014년 11월 26일 개최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에서 오수근 교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채권자에 공제회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건설법무학회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채권금융기관(이하 '소액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을 협의회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소액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소액채권금융기관이 협의회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해당 소액채권금융기관을 협의회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기촉법 제16조).

협의회는 부실징후기업의 인정,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및 지속 여부 결정,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의 결정 및 연장, 약정의 체결, 약정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 및 조치,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점검·평가 및 조치, 채권재조정 또는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55], 주식의 매각, 소액채권금융기관의 배제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기촉법 제17조)하게 되는데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채권액 포함) 중 4분의 3 이상[56]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기촉법 제18조 제1항).

협의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이 「기촉법」에 위반된 때에는 채권금융기관 또는 부실징후기업은 협의회의 의결이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의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기촉법 제18조의2).

채권금융기관은 신고된 신용공여액에 비례하여 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

55)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은 협의회와 부실징후기업 사이의 이행약정에 포함될 경영정상화계획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신용공여 계획이행에 관한 청구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용공여 계획에 관한 협의회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구 「기촉법」(2011.5.19.시행되어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4.1.1.실효된 것) 제21조에 따라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협의회의 의결 자체로 채권금융기관이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협의회가 부실징후기업과 체결한 이행약정에 정해진 사항이 채권재조정과 같이 이행약정 자체로서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것에 해당하고 대출계약이나 지급보증계약의 체결에 의한 신용공여와 같이 향후 별도의 계약 체결을 예정한 계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약정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행약정만으로 경영정상화계획으로 예정된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나 다름없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실징후기업이나 채권금융기관이 이행약정에 기하여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으로서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그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9.4.선고 2013마1998 결정).

56) 협의회는 그 의결로 구체적인 사안의 범위를 정하여 의결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한국산업법무학회

사하게 되는데,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협의회는 그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될 때까지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기촉법 제19조 제2항).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는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 정리와 채권금융기관간의 이견조정 등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 자격을 가진 7명의 위원[57]으로 구성되며,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에 대한 조정, 채권금융기관간 이견(협의회의 의결에 대한 이견은 제외)의 조정, 협의회 의결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 이행에 대한 결정 등의 업무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서 수행한다(기촉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

3. 절차 진행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을 거래기업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거래기업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기촉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 관리절차개시 신청을 통보받은 주채권은행은 7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또는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한다(기촉법 제4조 제4항). 다만, 주채권은행 또는 협의회는 관리절차를 위한 통보를 하기 전에 출자전환 또는 담보 등으로 취득하거나 처분위임을 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기촉법 제4조 제6항).

4. 채권행사 유예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를 소

57) 정부, 금융감독기관, 채권금융기관, 부실징후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한국건설법무학회

집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채권금융기관에 협의회가 소집 통보된 날부터 제1차 협의회가 소집되는 날까지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담보권 행사를 포함하며, 시효중단을 위한 어음교환 회부는 제외)를 유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기촉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채권금융기관은 대상기업의 규모, 채권금융기관의 수 등을 감안하여 소집이 통보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집되는 제1차 협의회에서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유예 개시일부터 1개월(자산부채의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1회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기촉법 제6조 제3항).

5. 채권재조정 등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58](기존 신용공여조건의 변경은 제외)를 하게 되는데, 채권금융기관의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함) 총액 중 4분의 3 이상의 담보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이 찬성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기촉법 제10조).

6. 채권은행의 공동관리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은행의 공동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은행만으로 구성된 채권은행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이 채권은행 공동관리를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

58) 채권금융기관이 행한 신규 신용공여는 법정담보권 다음으로 다른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한국건설법무학회

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채권은행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게 된다(기촉법 제13조).

협의회는 해당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경영정상화계획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관리를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기촉법 제12조).

7.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협의회는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에 의결을 거쳐 해당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경영정상화계획에는 매출액·영업이익 등 해당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기업의 인원·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의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조정 등 해당 기업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목표수준 관련 해당 기업의 노동조합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계획, 제3자 매각, 경영위탁 등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기촉법 제8조 제2항).

주채권은행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초로 공동관리의 지속 여부,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평가·점검하여 협의회에 보고하게 되는데,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매 2년마다 1회 이상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기촉법 제9조).

한국건설법학회

8.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면으로 반대한 채권금융기관(반대채권자)은 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찬성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기촉법 제20조 제1항 전단).

찬성채권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대하여 해당 채권을 매수하여야 하는데 매수청구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그 밖에 매수를 희망하는 자에게 매수하도록 할 수 있다.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은 찬성채권자와 매수청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되는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찬성채권자 또는 매수청구자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채권의 매수가액 및 조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기촉법 제20조 제2항).

9.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협의회 결의에 따라 채권재조정을 하는 경우 은행의 다른 회사나 증권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의 제한[59],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비율 등의 제한, 종합금융회사의 증권투자 제한[60],

59)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의 소유가 금지(은행법 제37조 제1항)되고, 증권에 대한 투자의 총 합계액이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것이 금지(은행법 제38조 제1항, 동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되어 있다.

60) 종합금융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을 함에 따라 증권을 소유하거나 국가가 원리금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소유, 주주권·담보권 등의 행사로 증권을 소유하는 경우, 남은 만기 3년 이내의 사채권의 소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가 금지되어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제1항

한국건설법무학회

금융기관(중소기업은행 제외)의 다른 회사 주식소유시 금융위원회의 승인[61],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제한[62]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기촉법 제25조 제1항).

10.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채권금융기관이 해당기업에 대한 관리절차 개시신청 가능 미통보, 관리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 소집 미통보, 협의회 소집통보후 매수예정자 등이「기촉법」에 따른다는 확약서 제출없이 보유채권을 매각하거나 관리권을 위탁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일정한 기한을 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영업의 일부정지[63]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기촉법 제26조).

한국건설법무학회

및 동 시행령 제339조 제1항).

61) 금융기관과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거나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6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이나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회사를 제외하고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제1항).

63) 업무정지의 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업무정지의 사유 못지 않게 업무정지처분의 핵심적·본질적 요소이므로 금융위원회가 채권금융기관에게 내리는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확히 하여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기촉법」개정안(강기정의원 등 13인 발의, 의안번호 1909704)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제5장 기업회생제도

제1절 제도 개관

기업에 대한 퇴출·회생제도는 한 나라 경제의 역사적 배경, 시장구조, 경영조직문화, 사법제도의 효율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나라마다 상이한 기업에 대한 퇴출·회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크게 이원화하면, 기업정리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유럽형과 미국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럽형은 '부도난 기업은 채권자 소유'라는 원칙에 충실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며, 미국형은 채권자와 경영자간 정보비대칭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 채권자의 권리를 제약하기는 하지만 회사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기존 경영자가 재건을 주도하여 신속하게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은 종래의 파산법과 화의법 등을 폐지하고 통합법인 도산법을 제정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통합 도산법은 도산절차 개시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갱생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기업에 한하여 회생절차로 전환하도록 일원적 도산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파산법의 경우에는 제7장에 청산절차, 제11장에 일반적 갱생절차, 제13장에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의 갱생절차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일본의 회사갱생법은 1949년 도지라인정책(일본의 전후 경제재건정책[64])이라는 전후 인플레이션의 끝에서 '경기후퇴→불황→파산 속출'의 심각한 악순환 상태에서 당시 미국의 파산예방제도를 참고하여 회사갱생법안을 3년에 걸쳐 정리해 도산회사를 갱생시켜 나가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채무자회생법」제정 이전에는 화의제도를 제외하고,

64) 백악관은 서독의 통화개혁을 입안하기도 했던 은행가인 도지(Joseph Morrell Dodge)를 도쿄로 파견하여 강력한 초긴축정책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통화량을 급격하게 위축시켰는데 이러한 과정은 수많은 기업의 도산과 대규모 정리해고 및 실업사태를 야기하게 되었다.

한국기술법무학회

기본적으로 유럽형 제도를 따르고 있었으나, 내용상으로는 미국형 제도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어 부실 기업을 과도하게 구제하는 비용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65]되는 상황에서, 미국과는 기업경영 실태가 다름에도 기존 관리인유지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채무자회생법」제정으로 형식적인 면에서도 미국형 제도에 가까워졌다고 평가되고 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그 이념적 근거는 회생절차를 통한 채권·채무 관계의 집단적 해결과 채무자의 회생이 파산적 청산과 비교하여 채권자 일반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는 것이다.

「채무자회생법」은 기본 대원칙으로 '이종의 권리 간에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의 원칙'을, '동종의 권리 간에는 평등의 원칙'을, '청산분배에 비하여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경제성 판단의 원칙, 채권자 등의 권리행사 제한 또는 금지, 실체법상의 권리의 우선순위 존중, 채무자의 지배구조 변경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운용되고 있다.

제2절 연 혁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회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주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정리재건을 도모하기 위한「회사정리법」이 1962년 12월 12일 제정(1963.1.1.시행)된 후 2005년 3월 31일자로 폐지되었다.「화의법」도 1912년 3월 18일 제정된 조선총독부령 제7호 조선민사령 제1조 제12호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던

65) 김동욱·이종원·이원희, 기업퇴출·회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건설업을 중심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행정문제연구소, 2001.1, 37~28면.

한국건설법학회

「화의법」이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이 많아 이를 대체하기 위해 1962년 1월 20 제정(1962.1.20.시행)된 이후 2005년 3월 31일자로 폐지되고, 2005년 3월 31일 제정(2006.4.1.시행)된「채무자회생법」에 통합되었다.

「파산법」또한 1912년 3월 18일 제정된 조선총독부령 제7호 조선민사령 제1조 제11호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던「파산법」이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이 많아 이를 대체하기 위해 1962년 1월 20일 제정(1962.1.20.시행)된 이후 2005년 3월 31일자로 폐지(2006.4.1.시행)되고, 2005년 3월 31일 제정된「채무자회생법」에 통합되었다.

그리고, 소득감소와 고용사정 악화, 가계부채의 급증 등으로 인한 개인신용불량자의 양산은 각종 범죄의 발생 등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심각하게 침해함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 3월 22일「개인채무자회생법」이 제정(2004.9.23.시행)된 이후 2005년 3월 31일자로 폐지(2006.4.1.시행)되고, 2005년 3월 31일 제정된「채무자회생법」에 통합되었다.

1990년대 후반 IMF시대를 전후하여 도산기업이 급증하게 되자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하고, 2001년「기촉법」을 제정·시행하였으며, 회사정리법·파산법·화의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개정은 그 당시의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부실기업을 회생·퇴출시키기에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등 각 도산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였다.[66]

이에 따라 도산 3법인「회사정리법」·「파산법」·「화의법」을 통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산기업을 시장경제원리에 보다 가까운 방법으

66) 정부가 발의(2004.11.06)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70743)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

한국선물학회

로 처리함으로써 한계기업(marginal firms)의 빠른 퇴출과 회생가능 기업은 효율적 회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2004년 3월에 「개인채무자회생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도산 4법이 되었는데, 이러한 4개의 도산 관련 법률을 1개의 법으로 통합하여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등의 복수절차로 구성[67]하였다.

제3절 구체적 내용

회생절차는 채무자 등의 신청과 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채권신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제2·3회 관계인집회, 법원의 인가결정 등의 순으로 절차가 진행하게 된다.

제1항 회생절차 관여자

1. 관리위원회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위원회의 보조를 받아 회생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과중한 업무를 경감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신속·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 2월 24일 회사정리법 개정시 도입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 인천, 수원, 대전, 대구, 창원지방법원에 설치되고, 2011년 5월 1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336호, 이하 '채무자회생규칙'으로 약칭한다)의 개정을 통해 춘천과 제

67) 2004년 11월 6일 정부가 제출한 「채무자회생법」 개정법률안은 제25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04. 12. 2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2005. 2. 25.)는 동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률안의 쟁점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05. 2. 28.)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한국건설법무학회

주를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의정부, 청주, 부산, 울산, 광주, 전주)으로 확대・설치되었다.

<표 15>는 관리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서 관리인・조사위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 및 평가,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나 회생채권 등에 관한 이의제출의 지도 또는 감독, 관계인집회와 관련된 업무,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사, 회생계획 인가 전의 영업 등의 양도의 허가에 대한 의견의 제시, 소액채권 등의 변제허가에 대한 의견의 제시, 채무자·보전관리인·관리인의 신규차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회생절차에서 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만아니라 그 업무가 과중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리위원회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해 접수되는 회생・파산 신청사건의 규모에 비추어 볼때 관리위원이 6명 밖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업무를 조정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관리위원의 증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15> 관리위원회의 주요 업무 및 권한

구 분	업무 및 권한
일반규정 (채무자회생법 제17조제1항)	-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의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 및 평가 -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회생채권·담보권에 관한 이의제출에 관한 지도 또는 권고 -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사 - 채권자협의회의 구성과 채권자에 대한 정보제공 - 회생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 관계인집회와 관련된 업무

한국건설법무학회

	- 그 밖에 회생절차에 필요한 의견의 제시 또는 대법원 규칙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개별규정	-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 보전처분·관리명령 및 그 변경·취소 등에 대한 의견제시 - 회생계획 인가전 영업 등의 양도허가에 대한 의견제시 - 소액채권 등의 변제허가에 대한 의견의 제시 - 채무자·보전관리인·관리인의 신규차입에 대한 의견 제시
법원위임 (채무자회생법 제18조, 제61조) (동 규칙 제29조)	<법원이 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허가사무의 범위> - 재산의 처분행위(단, 등기·등록 대상 재산은 제외) - 재산의 양수(단, 제3자의 영업의 양수 제외) - 자금의 차입 등 차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소제기, 소송대리인 선임, 그 밖의 소송행위(단, 소취하, 상소권포기, 화해·중재계약, 청구포기·인낙, 소송탈퇴 제외) - 직원의 인사 및 보수결정(단, 임원 제외) - 계약의 체결 그 밖에 의무부담행위 - 어음·수표계좌의 설정 및 어음·수표용지의 수령행위 - 운영자금의 지출 -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허가사무

2. 회생·파산위원회

「채무자회생법」 시행 이후 도산 사건의 안정적 증가와 세계적인 경기침체, 가계부채 문제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도산사건의 전문적이고 공정·신속한 처리와 통일적 운영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대법원은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하여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감독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대법원 행정처에 '회생·파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회생·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한국건설법무학회

에 관한 규칙」을 2013년 10월 11일 제정하여 동일자로 시행[68]하였다.

위원회는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의 개선, 관리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관리위원·관리인 등 후보자 선임 및 위촉 기준과 절차, 수행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등 회생·파산절차의 체계적·통일적 운용을 위한 자문의견 제시를 주된 업무로 한다(채무자회생규칙 제2조).

3. 채권자협의회

2005년「채무자회생법」제정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에 대응하여 채권자들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채택된 제도로서 채권자협의회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채무자회생법 제21조 제3항, 동 규칙 제42조 및 제43조), 미국의 사례와 같이 현재까지도 채권자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69]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 법인채무자의 감사 선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 소액채권 등의 변제허가에 대한 의견 제시, 채무자·보전관리인·관리인의 신규차입에 대한 의견 제시 등「채무자회생법」이전에 비하여 채권자협의회의 권한이 강화되기는 하였으나,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에 법원이 구속당하지 않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견제시 등에 대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68) 대법원 행정처는 2013년 11월 28일 '회생·파산위원회'를 발족하고,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위원장), 이종석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이경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영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임치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김윤태 산업은행 부행장,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69) Lynn M. Lopucki, The Debtor in Full Control-System Failure Under Chapter 11 of The Bankruptcy Code, 57 Am. Bankr. L.J. 247, 1983.

한국건설법무학회

<표 16> 채권자협의회의 업무와 권한

구 분	업무 및 권한
일반규정 (채무자회생법제21조)	- 회생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시 - 관리인 및 보전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 - 법인채무자의 감사 선임에 관한 의견의 제시 - 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의 청구 - 그 밖에 법원이 요구하는 회생절차에 관한 사항
개별규정	- 인가전 영업 등의 양도의 허가에 대한 의견 제시 - 소액채권 등의 변제허가에 대한 의견 제시 - 채무자·보전관리인·관리인의 신규차입에 대한 의견 제시
하위규정 (채무자회생법시행령 제3조)	-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의 심사시 관리위원회에 의견 제시 - 관리인의 법원에 대한 보고서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주요 서류에 관한 관리인에 대한 설명 요구 - 관리인에 대한 특별보상금 및 회생에 공적이 있는 채권자 등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의견 제시 -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따른 대가의 사용방법에 대한 의견 제시 - 조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의견 제시 - 회생절차 종결 및 회생절차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

한국건설법무학회

4. 자금관리위원

채권자협의회에 업무와 권한이 부여되어 있더라도 협의회를 상시 개최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금관리위원[70]을 파견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2명 이내를 파견하고 있다. 자금관리위원은 개별 채권자가 아닌 채권자협의회에서 파견된 자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되, 주

70) 자금관리위원은「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한 제도는 아니며, 통상적으로 파견예정 직원의 인적사항이 법원에 제출되기는 하지만 파견기관의 직원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협의회와 회생기업간의 자금관리약정의 체결을 법원이 허가하는 것이다.

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협의회 또는 소속 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자금관리위원은 회생절차가 종료되거나 회생계획인가결정후 법원의 허가하에 감사가 선임되면 그 파견업무가 종료되는데, 자금관리위원 파견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통상 4개월을 파견한 이후 필요할 경우 1개월 단위로 파견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5. 구조조정담당임원(CRO)

관리인불선임 제도의 장점과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회생절차 진행에 실질적 도움을 주면서 회생절차 중 자금관리의 투명성 및 원활한 회생절차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하에 기업구조조정 담당 임원(Chief Restructuring Officer)으로 회생기업에 위촉된 사람[71]이다.

기존 경영자의 경우 부인권 행사를 통해 기존 경영행위를 부인하기 어렵고, 경영부실 책임으로 인한 직원(노동조합)들과의 신뢰성 약화로 인하여 인력 구조조정 등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점과 자금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낮은 신뢰성 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위촉계약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거나 평등을 해하는 변제, 담보의 제공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 회생절차 중 회생 채무자의 조직과 인력의 조정·축소 조치를 주도하거나 전반적인 자금수지 및 지출의 적정 여부를 점검·통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항 회생인가전 절차

1. 회생절차개시 신청

71) CRO제도는「채무자회생법」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법원의 허가하에 회생회사가 위촉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운용하는 제도로서 통상 채권자협의회의 대표채권자측에서 추천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에서 퇴직한 직원이 선임되는 등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한국기업법무학회

회생절차는 채무자·채권자·주주 또는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는 개시결정 전에는 임의적으로 가능하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하[72]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8조).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취하거나 개시결정 이후에 회생절차가 폐지 또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폐지되더라도 다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73]하는데 현행「채무자회생법」상으로는 제한이 없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신청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접수된 날 또는 그 익일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고, 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진 후 3일 내지 5일 이내에 대표자 심문을 시행하고 있다.

2. 보전처분 등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 재산의 산일(散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는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보전처분(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정)과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막기 위한 개별적 강제집행 등의 중지·취소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한정(채무자회생법 제45조)되고, 환취권에 기하거나 공익채권으로 될 채권에 기한 절차는 금지할 수 없으며, 신탁된 자산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수탁사에 있으므로 처분금지보전처분이나 포괄적금지명령 등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7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72) 삼부토건(주)은 2011.04.12.자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이후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인하여 법원의 허가하에 2011.06.28.자로 취하한 바 있다.

73) 재도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란 '회생절차 폐지 또는 불인가결정 이후 전과 동일한 재정적 파탄을 원인으로 다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며, 범양건영(주)의 경우 2011.10.20.자 회생신청(인가전 M&A)이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2012.06.12.자로 회생폐지결정되었으나, 2012.06.18.자로 재도의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2.10.11.자로 인가결정을 받은 바 있다.

74) 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한국법무학회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가 구「회사정리법」제67조 제1항이 금지하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75]

개별적 중지명령제도나 포괄적금지명령제도와는 달리 미국은 연방파산법상 도산사건 개시신청과 동시에 채무자 또는 파산재단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자동적으로 중지되는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를 채택하고 있어「채무자회생법」제정시 도입여부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일시적인 채무상환기한의 유예를 받거나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산절차를 남용할 소지가 있고, 채권자 전체의 이익이 보호되기 보다는 오히려 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개별 채권자의 이익이 지나치게 침해된다는 이유 등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그 대안으로서 일본이 2000년 민사재생법 개정시 도입한 포괄적금지명령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표 17> 회생절차와 강제집행의 상관관계

구분	개시결정 전			개시결정	인가결정	인가전 폐지
	(개별적) 중지명령	(개별적)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의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로서 이미 진행중인 절차 중지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후에 행하여졌는지 불문하고 강제집행 등을 위한 모든 경매절차 취소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강제집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금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불가능 (이미 행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경매절차 효력 상실	강제집행 등 중지된 절차 다시 속행

75) 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행사	직권,이해관계인	직권,보전관리인,채무자	직권,이해관계인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회생절차개시결정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할수 없음 -회생절차개시결정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중지 제256조(중지중의 절차의 실효) -회생계획인가결정시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그 효력 상실
효력	현재 상태에서 동결되어 그 이상 진행할 수 없음 중지효력밖에 없어 새로운 동종 절차개시신청 가능	종전 강제집행은 소급실효(불복불가)	새로운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경우 중지	
존속기간	회생절차개시결정시 소멸			

3. 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신청기각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정)을 하는데, 회생절차개시 후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규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 받을 수 없으며, 회생기업의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

한국건설법무학회

<표 18> 회생절차개시의 기각과 결정 비교

구 분	기각결정	개시결정
요 건	- 회생절차 비용의 미예납 - 불성실한 회생절차개시신청 -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적합	- 사업계속에 현저한 지장초래없이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절 차	- 관리위원회 의견수렴 (필요적)	- 개시결정 당일 관계자 출석 (임의적)
후 속 조 치	- 파산원인 존재시 직권으로 파산선고 가능	<필수적 결정사항> - 관리인의 선임 또는 불선임결정 -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작성·제출기간,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임의적 결정사항> - 법원허가 대상 관리인의 행위 -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제출기간 등
즉 시 항 고	-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	- 공고일로부터 2주일 이내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될 경우에는 선급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 이상 선급금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된다'고 판시[76]하여 공제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고, 공제는 하나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를 상호 가감하여 정산하는 것이고, 상계는 별개의 계약관계에서

76) 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다40109 판결.

한국건설법무학회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법률행위로서 공제의 법리가 적용될 경우 채권자는 회생채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관리인은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해서는 안되는 반면, 채권자는 상계의 시한에 관한 제한에 걸리지 아니하고 공제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77]에 선급금정산은 개시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법원의 허가도 불필요하다.

4. 관리인의 선택권과 상대방 보호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78]인 쌍무계약은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으로서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회생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미이행 상태인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 또는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이행을 선택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파산절차와 달리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통상 이행을 선택하였다는 보고서를 사후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관리인의 선택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기까지 상대방은 임의로 변제를 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거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관리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다만, 개시결정전에 해제권을 취득하여 언제라도 해제할 수 있는 상태일 경우에는 개시후라도 해제권행사가 가능하다.

건설기업의 관리인이 쌍방 미이행의 공사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거나 해제 또는 해지권을 포기하고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회생절차개시 이전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포함한 공사대금청구권 전부

77) 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다15598 판결.
78) 김형배, 민법학강의(이론,판례,사례)(제6판), 서울, 신조사, 2007, 1189면.

한국건설법무학회

가 공익채권으로 인정[79]된다.

미이행쌍무계약의 상대방은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이행의 여부를 관리인에게 최고할 수 있으며, 최고서 수령후 30일 이내 확답이 없는 경우 해제·해지권 포기로 간주[80](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2항)되고, 해제·해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만, 원상회복과 관련하여서는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할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현존하지 않는 경우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5. 관리인의 채권자 등 목록 작성·제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81]에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내용과 원인은 물론 의결권의 액수는 필요적 기재사항(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제2항)이므로 만일 관리인이 의결권의 액을 과도하게 평가하고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그 기재대로 의결권이 확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187조 제1항).

관리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이라도 목록의 기재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목록의 기재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고, 공익채권은 목록의 기재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고, 회생절차와 관계 없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법원에 실제로 제출한 시점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82]한다.

---

79) 대법원 2004.8.20. 선고 2004다3512 판결.
80) 파산절차에서는 기간내 확답이 없는 경우 해제·해지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과 다르다.
81)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82) 공익채권자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결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공익채권의 성질이 회생채권으로 변경되지는 않으며(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다52900 등),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의 변제기의 유예나 감면 등을 규정하였더라도 공익채권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한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40349 등).

한국건설법학회

6. 채권신고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자 등도 신고를 아니하여 회생계획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실권되지만 관리인이 법원의 관여 아래 공정하고 적정한 정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회사의 재건에 필요한 한도에서 이해관계인의 이해 조정의 방법으로 정리계획안에 미신고 권리의 효력을 존속하는 조항을 두었고, 법원이 그 정리계획을 인가하여 정리계획이 그대로 인가결정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조항이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83]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은 회생채권자 등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84]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추후 보완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

83) 대법원 2014.9.4.선고 2013다204140 판결 ; 이 사건은 덕유산리조트(무주리조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무주덕유산리조트의 회사정리절차(1998.9.10.서울중앙지방법원 98파4485호)와 관련하여 모회사인 주식회사 티이씨앤코가 정리채권을 신고하면서 무주리조트 회원권에 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덕유산리조트의 정리계획안 제3장 제6절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권리' 조항에 '정리회사에 납입한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비록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목적물의 명도가 이루어지면 보증금을 변제하되, 변제방법 등은 해당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84) 법원 실무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를 융통성 있게 해석하여 제2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접수된 대부분의 추후 보완신고를 받아 주고 있으나 제2회 관계인집회가 종료될 때까지 또는「채무자회생법」 제240조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할 수 없다(법 제152조 제3항).

한국건설법무학회

여 그 존부, 내용과 원인, 의결권액 등의 진실 여부를 검토하여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절차로서 통상적으로 “시·부인”이라고 하는데, 조사기간은 신고기일의 말일부터 1주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내로 결정되고, 조사의 주체는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자, 주주·지분권자이다(채무자회생법 제161조 제1항).

특별조사기일은 신고기간 경과 후에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기 위한 기일로서 통상적으로 추후 보완신고의 종기인 제2·3회 관계인집회기일과 같은 날자로 지정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63조).

8. 시·부인표의 작성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회생채권 등에 대한 시·부인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나,「채무자회생규칙」제6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시·부인표를 작성하여 조사기간 말일까지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시일이 촉박하거나 증빙자료의 부족 등으로 채권의 존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이 일단 이의를 한 후 그 채권을 시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이의를 철회하여 조사기일 내에 행한 이의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61조 및 제164조, 동 규칙 제62조).

이의의 철회는 권리의 확정을 위한 조사확정재판의 신청이 제기되기 전에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조사확정재판이 제기된 후에는 조사확정재판과 이에 대한 이의의 소가 확정적으로 종료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제3항 회생계획안 인가

한국건설법무학회

1. 관계인집회

제1회 관계인집회[85]는 관리인이 이미 법원에 보고한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등' 법 제92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요지를 이해관계인들에게 보고하고, 관리인·조사위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로부터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개최되는 집회이다.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그 후 지체없이 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86]을 제출할 것을 명한다(채무자회생법 제220조 제1항).

제2회 관계인집회는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이고, 제3회 관계인집회는 심리를 마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로 법원은 실무상 신속한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대부분의 경우 제2회 및 제3회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특별조사기일을 병합하여 실시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86조, 제224조, 제232조).

2. 의결권

85) 2014년 6월 10일 정부가 제출한「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가 본회의에 대안으로 제안하여 2014년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법률 제12891호 : 2014.12.30.공포, 2015.07.01.시행)은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종전의 제1회 관계인집회)는 법원의 재량으로 개최하고,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계인설명회 개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86) 채무자의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로부터 제1회 관계인집회 기일의 전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제도를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제도(채무자회생법 제223조)라고 하는데, 부채의 2분의 1 해당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사위원이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거나,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차대조표나 그 밖의 회계장부를 토대로 하여 판단하고 있다. 회생계획안 사전제출제도는 벽산건설(주)에 대하여 최초로 시도하였으나, 부채의 2분의 1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극동건설(주)에 대하여는 부채의 2분의 1 이상을 갖춘 채권자협의회가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가결(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6.1%)되어 인가결정되었다.

한국건설법무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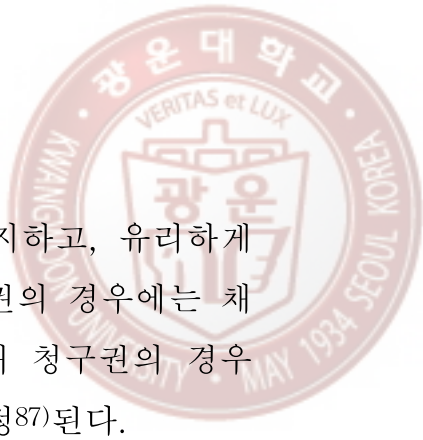

의결권이란 자기에게 불리한 회생계획안의 확정을 저지하고, 유리하게 작성을 유도하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 수단으로서 확정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인정되는 반면, 조건부채권이나 장래 청구권의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의 평가금액으로 의결권이 인정[87]된다.

관리인은 채권 시·부인표에 의결권 인정금액을 명시하고 있는데, 의결권 인정에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채무자회생법 제187조)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161조), 이의 있는 의결권에 대해 법원이 의결권 행사 여부, 액수 등을 재량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권리의 실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절차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에 그치므로 법원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며 법원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88조 제2항 및 제3항).

3. 인가의 결정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 주주·지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 총수의 1/2 이상의 각 동의가 있어야 하며 법원의 인가결정으로 효력이 발생[88]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및 제246조).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법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 결과 관계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적정·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함이 일반적인데, 특정 종류의 일부 권리자의 의사결정으로 이해

한국건설법무학회

87) 미확정채권에 대한 의결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본적으로 의결권 부여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해당 건설기업의 상황에 맞는 현실화율의 제시와 미국 등 외국의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의결권 인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의결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한울종합건설에 대한 회생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합89) 외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미확정채권액의 5% 정도를 의결권으로 통상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8)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은 아니어서, 인가결정시 또는 정리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서 소멸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권의 책임만이 면제되는(자연채무) 법 제241조의 면책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대법원 2003. 3.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등).

관계인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을 막아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여[89] 권리보호조항을 두고 강제인가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권리보호조항은 부동의한 권리자가 아니라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 전원에 대하여 정하는 것이고, 권리보호조항의 적용으로 실질적인 청산가치가 보호된다면 회생계획안보다 불리해지는 경우에도 위법이 아니며,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것 자체를 항고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다만, 권리보호조항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공정・형평・평등의 원칙, 청산가치의 보장, 수행가능성의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4. 인가결정의 효력

회생계획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은 채무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이 없고(채무자회생법 제250조),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지만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유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및 제140조). 또한,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채무자회생법 제252조)되고,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89) 三ケ月章 등,「條解 會社更生法(下)」, 弘文堂, 1999, 635면.

한국건설법무학회

제4항 인가 이후의 절차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채무자회생법 제257조)하고 회생계획의 모든 절차는 법원의 감독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관리인의 주관으로 추진되는 M&A는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고, M&A 과정에는 채무재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변경과 이를 위한 결의절차가 수반하게 된다.

법원은 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계획의 수행 가망이 없을 경우 회생절차폐지를 결정(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나 불인가는 재량적 파산사유, 인가 후 폐지는 필요적 파산사유)을 하고, 회생계획이 이미 수행되었거나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83조, 288조 등).

회생절차를 조기종결하는 경우에 향후 채무자의 회생계획의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주요 채권자들의 협의체가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후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을 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리인에게 권고하게 된다.

제4절 최근 개정 내용

세월호 사건 등으로 인하여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회사의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정당한 채권자 등의 희생을 바탕으로 채무를 감면받은 후 다시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90]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4년 9월 30일「채무자회생법」이 개

90) 1997년 법정관리에 들어가 2008년에 법정관리를 졸업한 ㈜세모의 경우, 2005년 665억원, 2007년 735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 받고, 479억원에 ㈜천해지에게 인수되었다. ㈜천해지는 ㈜세모의 하청업체 등을 주주로 하여 설립된 기업으로서, 2008년 그 지분이 ㈜아이원아이홀딩스로 양도되었는데, 동 회사는 ㈜세모의 기존경영자인 유병언 회장 일가가 최대주주이고 각 계

한국건설법학회

정되고, 2014년 10월 15일 공포(법률 제12783호)되어 2016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6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채무자의 이사 등[91]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92]하려고 하는 자가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을 통하여 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 등과 사업 운영에 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경우 및 배우자·직계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하거나 회생계획불인가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였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의2 제1항).

또한, 채무자의 영업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하게 하였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의2 제2항).

한편, 파산절차에서도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회생절차 지연의 방지와 중소기업 등의 회생절차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9일「채무자회생법」이 국회에서 의결(법률 제12891호로 2014.12.30.공포)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법률 제12891호로 공포된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열사의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회사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결과적으로 매각 3년 만에 ㈜세모 조선사업부의 경영권이 파산에 중대한 원인이 있는 기존 경영자에게 회복된 것이다.

91) 회사인 채무자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나 해당 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회사인 채무자의 감사, 회사인 채무자의 지배인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제231조의2 제1항 제1호).

92) 영업·사업·중요한 재산의 전부나 일부의 인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제57조).

한국건설법학회

2014년 12월 30일에 개정·공포된「채무자회생법」은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93]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고, 회생위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의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의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회생채권자조에서 가결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였다(법률 제12891호로 공포된 채무자회생법 제238조, 제293조의2 내지 제293조의8).

그리고, 제1회 관계인집회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원이나 관리인이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법률 제12891호로 공포된 채무자회생법 제50조, 제98조의2, 제99조 등), 미국 파산법에서는 회생신청이 있은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채권자집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그 합리적인 기간을 '회생절차 개시일 이후 20일 이상 40일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94], 일본의「회사갱생법」은 '회생채권자위원회, 회생담보권자위원회 또는 일정 비율의 회생(담보)채권자의 관계인집회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제1회 관계인집회를 임의화한 것은 과도한 입법적 조치로 보여진다.

또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및 주주 또는 채권자협의회에게 설명회 개최를 요구할 권리가 없어 채권자들의 회생 관련 알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매우 크고, 회생의 당사자인 채권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적시적인 회생 관련 정보의 충분한 제공으로 채권자들의 적극적인 회생절차 참여를 유도하려는 그 동안의 회생제도 개선 방향과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회생

93)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94) 이진웅, "회생절차에서의 관계인집회 운영에 관한 제문제(관계인집회 병합 문제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38호, 2013, 213면.

한국건설법학회

절차를 통한 채권채무 관계의 집단적 해결과 채무자의 회생이 파산적 청산과 비교하여 채권자 일반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는 회생법의 이념적 근거와도 상치하는 문제가 있다. 나아가, 제1회 관계인집회가 의무적으로 개최되고 있음에도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가 금융기관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가 폐지되고, 채권자들의 설명회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관리인이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가능성과 DIP Financing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 낮아져, 신속한 회생절차를 통한 회생채무자의 조기정상화라는 당초의 취지에 반하는 역효과[95]가 우려되며, 법원 주관하에 법원내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도 소란이 일어나는데, 관리인 주관하에 법원밖에서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그 혼란이 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표 19> 2014년 12월 30일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 제1회 관계인집회 의무적 개최	- 제1회 관계인집회 원칙적 폐지 (관계인설명회의 신설)
- 간이회생절차 없음	-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관리인 불선임 원칙, 간이조사위원 선임 등)
- 속행기일 지정요건	- 속행기일 지정요건 완화
-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 최종 3년분 퇴직금은 파산시 담보권보다 후순위	-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 최종 3년분 퇴직금은 파산시 담보권보다 선순위

95) 신속한 회생절차 추진에 따른 역효과(정상화 이후 재도산율 상승)로 일본 법조계에서 회생절차 감독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2013.5.7.자 이데일리 기사).

한국건설법무학회

제6장 건설기업의 회생제도 개선 방안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기업과 관련하여 제도상이든 운용상이든 현행 회생제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이하에서는 건설기업 특수성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되는 사항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행 사적구조조정제도는 물론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전개될 건설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생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제1절 제3자 관리인 선임 원칙화

제1항 현행 제도

1996년 이전의 회사정리법은 관리인[96]으로 하여금 중립·공정한 입장에서 직무를 집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없는 자' 중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해관계인을 모두 배제하다보니 오히려 회사의 현황이나 경영실정을 잘 몰라 회사의 회생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음에 따라 1996년 제4차 개정시 정리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로 개정한 바는 있지만「채무자회생법」제정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의 경영자를 회생회사의 경영에서 배제하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97]하도록 하고 있었다.

---

96)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가 아니고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소위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4.6.25. 선고 73다692 판결 ; 대법원 1988.10.11.선고 87다카1559 판결 ; 대법원 1988.8.9. 선고 86다카185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997.2.11.선고 96가합11612 판결 등).

97)「회사정리법」에서는 법원으로 하여금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이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만 규정(제94조)하고 있었고, 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2000.4.7.송무예규 제768호)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회사의 업종에 전문적인 경험이나 소양이 있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었다(4.가).

한국건설법무학회

<표 20>「채무자회생법」 제정 이전 관리인의 경력[98]

구분 \ 년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소계	비율
정리회사 내부인사		2	3	3	2	1	-	11	9.0%
외부인사	타기업임원	7	10	13	8	6	5	49	40.2%
	공무원	-	1	3	2	1	1	8	6.6%
	변호사	3	1	-	-	-	-	4	3.3%
	금융기관 임직원	4	7	13	8	6	5	43	35.2%
	그 밖의 인사	-	1	2	3	-	1	7	5.7%
소계		16	23	34	23	14	12	122	100%

* 관리인에 임명되는 시점 기준, 관리인이 변경되는 경우 복수로 인정

2005년「채무자회생법」제정시 회생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하여는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양분되었다. 첫째, 미국식 DIP 제도를 책택할 것이냐 아니면 현행의 관리인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문제와 둘째, 관리인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경영자가 적합하다는 주장과 기존의 경영자를 배제하고 제3자 전문경영인이 적합하다는 주장[99]이 대립하고 있었으나,「채무자회생법」은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100]하였다.

「회사정리법」에서는 기존의 경영자를 법원이 선임하는 관리인으로 대체하는 결과, 경영권 상실을 우려한 기존의 경영진이 회사정리절차 신청을 주저하게 되고, 적절한 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신속한

98) 오수근, "회사정리계획의 수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 기업법연구 제19권 제4호 : 통권 제23호, 2005.12, 415면.

99) 안정상, "기업지배구조론의 회생기업에 대한 적용 방안", 경영법률, 2011, 141면.

100) 이에 대하여 미국의 DIP 제도에서는 관리인이라는 기관 자체가 없고 기존 경영자(채무자)가 DIP라는 명의로 경영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채무자회생법」이 미국 파산법의 DIP를 채택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오수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법조 2005.5(Vol.584), 36면 각주 8).

한국건설법무학회

회생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조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존 경영자의 경영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며, 기존 경영진에게 부실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실화 내지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변형된 DIP제도를 도입[101]한 것이다.

현행「채무자회생법」에서는 법원이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이 적합한 자로서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102]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 또는 채무자의 지배인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gross mis-management)에 기인한 때,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에는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개인, 중소기업,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103]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개인 채무

101) 2004.11.6. 정부제출「채무자회생법」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보고서(2005.2), 8면 및 41면.

102) DIP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2013년 6월까지 법인회생사건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된 343건 중 기존경영자를 선임(280건)하거나 관리인 불선임결정(10건)으로 기존 경영자가 유지된 경우가 290건(84.5%),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가 36건(10.5%), 공동관리인이 선임된 경우가 17건(5%)이다.

103)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밖에 사유에 대하여「채무자회생규칙」(제51조)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2.「증권거래법」제2조 제13항에서 규정된 상장법인과 같은 조 제15항에서 규정된 코스닥 상장법인에 해당하는 채무자
3. 재정적 부실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하고 일시적 현금유동성 악화로 회생절차 신청 채무자
4. 일정한 수준의 기술력, 영업력 및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회생절차에서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기 회생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자
5. 주요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와 사이에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채무자
6. 자금력 있는 제3자 또는 구 주주의 출자를 통해 회생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채무자
7. 그 밖에 관리인 불선임이 채무자회생에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채무자

한국건설법무학회

자 또는 채무자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의 경우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그 이전 단계에서도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함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주식회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강조되어 왔지만,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거의 논의되지 않아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2항 견해 대립

1. DIP 반대설

기업이 도산에 이르게 된 것은 차입금 중심의 재무구조, 분식회계 등 회계 및 경영의 불투명, 부실사실의 은폐 등 기존 경영진의 직·간접적인 부실 경영이 원인인 상황에서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불러올 수 있고, 부실기업을 조기에 정상화시키고 회생절차를 종결시키는데는 M&A가 가장 효율적인 경우가 있는데,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이 될 경우에는 M&A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되어 사실상 M&A가 어렵게 될 수 있으며, 도산에 이른 부실기업은 대부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회사나 주주에게 귀속될 재산적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회사의 경영이나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제논리상 모순일 뿐만아니라 부실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부채탕감 등 채권자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계속 경영을 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또한, 조기회생신청의 유도라는 취지 역시 절차를 조기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즉 파산상태에 이르러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없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한국건설법학회

경영노하우 활용이라는 취지 역시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를 대표자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취지에 맞지 않으며 도산에 이른 기업의 기존 경영진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정상화를 통한 채무의 성실한 변제보다는 기업의 경영권 유지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무리한 투자를 도모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방편으로 기업의 재산적 가치를 은닉시켜 기업을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104]과 기존의 경영자가 구축하여 놓은 회사 내부의 인맥 등 여러 사정 때문에 기존의 경영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105]도 있다.

대기업의 경우는 부실경영의 책임을 일정 정도 묻는다는 차원 및 오너 경영을 어느 정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실질적 의미에서 공동관리인을 선임[106]하는 경향이 있으나, 관리인 상호간의 대립으로 경영효율이 약화되거나 부당한 경쟁과 상호비방으로 회사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고[107], 모든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영상의 불편함이 있으며 회사로서는 영업기밀이 법원선임 공동관리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개운치 않은 측면이 있을 뿐만아니라 자금사정이 어려운 회사의 경우 2인 공동관리인의 보수지급 등 소요비용 부담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다[108]는 의견도 있다.

2. DIP 찬성설

찬성하는 주장을 살펴보면, 채무자회사의 경영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104) 박승두, “일본 민사재생법의 이념과 기본구조”, 청주법학 제32권 제1호, 2010.5, 218~219면.
105) 안정상, “회생절차 진행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1, 32면.
106) 쌍용자동차(서울중앙지법 2009회합7), 신성건설(서울중앙지법 2011회합14), 성지건설(서울중앙지법 2010회합73), 대한해운(서울중앙지법 2011회합14), 동양(서울중앙지법 2013회합186), 울트라건설(서울중앙지법 2014회합175) 등에 대하여 공동관리인이 선임된 바 있다.
107) 박승두, “향후 관리인 제도의 발전방향”, 회생법학 창간호 : 통권 제1호, 2010.6.15, 39면.
108) 최효종, 기업회생절차 실무의 현황과 개선방안(쌍용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 회생과 파산, 2012, 479면~480면.

한국건설법무학회

추가적인 학습비용이 들지 않고,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종전 경영자의 노하우를 이용하고 기존의 영업활동에 따른 거래처와의 관계 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회생절차가 성공할 경우 그 이익이 주주에게 돌아가므로 종전 경영자에게는 채무자회사를 잘 경영해야 할 유인이 가장 클 뿐만아니라 경영권의 보장으로 절차의 조기신청을 유도할 수 있다[109]는 견해가 대체적으로 많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기존 경영진을 능가하는 전문경영능력을 갖춘 관리인 집단(Pool)이 아직까지는 확립되지 못하였고, 현행법상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서 선임이 되지 않는 등 어느 정도 제도적 제어장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제도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110]는 의견도 있다.

제3항 문제점

2012년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이 채권단과 논의 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에 웅진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111]이 된 사례와 같이 아무리 채무불이행 기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 하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주주와 채무불이행에 관계된 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였다는 믿음이 없다면 채권자는 기업을 살려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 어려울 것이

109) 안정상, “회생절차 진행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1, 31~32면.

110) 이창헌,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절차의 제도적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기업 구조조정 법제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2014.6.10) 발표자료, 17면.

111) 2013년 동양그룹의 계열회사인 (주)동양(서울지법 2013회합186), 동양레저(서울지법 2013회합187), 동양인터내셔널(서울지법 2013회합188), 동양네트웍스(서울지법 2013회합193), 동양시멘트(서울지법 2013회합15) 등 5개 회사의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채권은행, 개인투자자 이외에 경실련 등에서도 기존관리인유지(DIP : Debtor in Possession)제도 악용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공동관리인 선임을 요청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하여는 채권자협의회 등이 추천한 사람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동양네트웍스는 대표이사가 배제되고 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동양시멘트에는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이데일리, 2013.10.17.자 기사).

한국건설법무학회

다. 주주와 채무불이행 관계자의 이러한 책임완수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112]이다.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인정하는 현행「채무자회생법」아래에서는 관리인의 법적지위를 떠나 현실적인 문제로서 부실경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분식회계 등을 통한 횡령행위 등을 한 기존 경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주재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수 십년 동안 거래해 온 채권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부인권 행사에 소극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건설기업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물적 자산이 거의 없어 회생성공 여부가 인적 자산인 직원들의 역량과 신뢰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에도 건설기업을 포함한 회생기업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신청 이전부터 대부분 임금체불이 누증되어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없더라도 경영자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어 우수한 인력이 퇴사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회생기업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외부의 능력있는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은 점을 고려되어야 한다.

제3자 관리인의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회생기업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반면, 기존경영자 관리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단지 계속 회사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가 문제 외에도 스스로가 회사의 대주주이거나 대주주와의 친분관계로 대표이사가 되거나 회사의 주식 또는 그에 대한 옵션 등을 가지고 있는 등으로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예가 많다.[113]

제4항. 외국 사례

도산법제는 파산제도를 근간으로 하는데, 파산제도에 관한 입법주의는

112) 이성우,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절차에 있어 채권자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안 연구(관리인제도 개선 방안)”, 한국부패학회보 제15권 제4호, 2011, 102~103면.
113) 이연갑, “도산법상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지위”, 비교사법 제16권 1호 : 통권44호, 2009.3.20, 401면.

한국건설법무학회

로마법상의 파산제도와 이를 보다 발전시킨 이탈리아법상의 파산제도를 계수한 대륙법계와 로마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형성되어 온 영미법계로 대별할 수 있다.

1. 미 국

미국에서는 연방파산법 제11장 '일반적인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에 우리나라의 회생절차와 달리 관리인을 임명하지 않고 채무자가 그 재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는데, 이와 같이 점유 및 사업을 계속하는 채무자를 DIP(debtor in possession)[114]라고 한다. 그러나, 사건의 개시 후 계획안의 인가 전에 언제든지 이해관계인 또는 연방관리위원의 청구에 의하여 통지 및 심문 후에 법원은 현재의 경영자에 의한 채무자의 업무에 관한 사기, 부정행위, 무능력 또는 중대한 부실경영을 포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관리인의 선임이 채권자와 재단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관리인의 선임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115], 실무운용에 있어서도 협상과정을 통해 채권자들이 주도권을 행사하여 대부분의 기존 경영진이 교체된다[116]고 한다.

한국법무학회

114) 연방파산법은 채무자관리인(DIP)에 대하여 '이 법 제3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가 해당 사건에서 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외의 채무자를 의미'한다고 정의("debtor in possession" means debtor except when a person that has qualified under section 322 of this title is serving as trustee in the case)하고 있는 바(제1101조)와 같이 DIP란 채무자 회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나 그 밖의 경영진 등 특정인이나 기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파산법원이 도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는 한 회생절차개시가 신청되면 자동적으로 채무자에게 DIP지위가 부여되는 구조이다.

115) 11 U.S. Code § 1104 - Appointment of trustee or examiner

(a) At any time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case but before confirmation of a plan, on request of a party in interest or the United States trustee, and after notice and a hearing, the court shall order the appointment of a trustee—

(1) for cause, including fraud, dishonesty, incompetence, or gross mismanagement of the affairs of the debtor by current management, either before or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case, or similar cause, but not including the number of holders of securities of the debtor or the amount of assets or liabilities of the debtor; or

(2) if such appointment is in the interests of creditors, any equity security holders, and other interests of the estate, without regard to the number of holders of securities of the debtor or the amount of assets or liabilities of the debtor

2. 독 일

독일의 도산법(Insolvenzordnung v. 5. 10. 1994)은 현재의 상황에 적합하고 실무경험이 있으며, 채권자나 채무자에 종속되지 않는 자연인을 도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117]. 채권자는 도산관재인 선임 후 최초로 개최되는 채권자집회에서 이미 선임된 도산관재인에 대신하여 다른 도산관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법원은 채권자집회에서 선임한 도산관재인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다른 도산관재인의 선임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에도 채무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도산재단에 관한 처분권을 가지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도산재단 자기관리제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소비자파산절차, 채무자의 잘못으로 도산한 경우 등에는 도산재단 자기관리제도가 허용되지 않으며, 자기관리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도산절차에서 중요한 법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일 본

민사재생법에서는 재생채무자가 원칙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재산

116) 유해용,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한국의 기업회생 실무와 쟁점", 법조 2010.2(VOL.641), 98~99면.

117) § 56 Bestellung des Insolvenzverwalters

(1) Zum Insolvenzverwalter ist eine für den jeweiligen Einzelfall geeignete, insbesondere geschäftskundige und von den Gläubigern und dem Schuldner unabhängige natürliche Person zu bestellen, die aus dem Kreis aller zur Übernahme von Insolvenzverwaltungen bereiten Personen auszuwählen ist. Die Bereitschaft zur Übernahme von Insolvenzverwaltungen kann auf bestimmte Verfahren beschränkt werden. Die erforderliche Unabhängigkeit wird nicht schon dadurch ausgeschlossen, dass die Person

1. vom Schuldner oder von einem Gläubiger vorgeschlagen worden ist oder
2. den Schuldner vor dem Eröffnungsantrag in allgemeiner Form über den Ablauf eines Insolvenzverfahrens und dessen Folgen beraten hat.

(2) Der Verwalter erhält eine Urkunde über seine Bestellung. Bei Beendigung seines Amtes hat er die Urkunde dem Insolvenzgericht zurückzugeben.

한국건설법학회

을 관리 또는 처분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있는 반면, 회사갱생법에서는 갱생채무자의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이 적당하지 않거나 갱생채무자 사업의 재생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이 적합한 자 중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118] 당초, 회사갱생법 제정 당시 민사재생법과 같이 채무자에게 관리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이 논의되었지만 회사갱생절차에서는 이해관계인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측면이 강하고, 기존의 부실 경영자를 퇴진시키고 회사의 갱생을 도모함과 동시에 회사갱생절차를 공정한 입장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도입되지는 않았다. 다만, 회사갱생법 제67조 제3항이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사정의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는 발기인, 이사, 감사 등을 관재인이나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반대해석하면 그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관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최근, 도쿄지방재판소 민사 제8부가 2009년 1월 9일 갱생절차를 신청한 주식회사 쿠리도(Creed corporation) 사건에 대하여 관재인을 채무자 회사의 기존 경영자 중에서 선임하는 절차운용 방식을 최초로 적용하여 'DIP형 회사갱생절차'라는 이름 하에 도입된 이후 도쿄지방재판소의 경우 'DIP형 회사갱생절차'가 원칙적인 절차로 운용되고 있다[119]고 한다.

---

118) 民事再生法, 第三十八条(再生債務者の地位)
1.再生債務者は、再生手続が開始された後も、その業務を遂行し、又はその財産（日本国内にあるかどうかを問わない。第六十六条及び第八十一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を管理し、若しくは処分する権利を有する。
2.再生手続が開始された場合には、再生債務者は、債権者に対し、公平かつ誠実に、前項の権利を行使し、再生手続を追行する義務を負う。
3.前二項の規定は、第六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処分がされた場合には、適用しない。

会社更生法, 第六十七条(管財人の選任)
1.管財人は、裁判所が選任する。
2.法人は、管財人となることができる。
3.裁判所は、第百条第一項に規定する役員等責任査定決定を受け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者は、管財人に選任することができない。

119) 강민성, "도쿄지방재판소의 DIP형 회사갱생절차 운용의 도입에 관하여", 해외사법소식 제78호, 2011.8.3, 14~15면.

한국건설법무학회

제5항. 개선 방안

미국의 파산법상 관리인제도의 경우에도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지만 실무 운용에 있어서는 협상과정을 통해 채권자들이 주도권을 행사하여 대부분의 기존 경영진이 교체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회사갱생법은 아직까지 제3자 관리인 선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도교지방재판소가 운용 중인 'DIP형 회사갱생절차'의 요건 중 하나로 주요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 경영진의 경영관여에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보면, 우리의「채무자회생법」제정 당시 참고가 된 미국이나 일본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제3자 관리인 선임제도로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경영의 불투명성 등의 특수성과「채무자회생법」상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미친 미국과 일본의 실제 운용을 고려할 때 관리인은 전문경영능력을 갖춘 제3자 선임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동과 같이 기존의 경영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하여 도산에 이르게 된 것이고, 경영자의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채권자협의회의 동의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경영능력과 관련하여서는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이 속한 동종의 기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거나 직접적인 경영을 한 경험이 없더라도 관련된 경험이 있는 자가 적정할 것이다. 특히, 건설기업의 경우에는 건설산업이나 건설기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영업력이나 인적네트워크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기존 거래처의 유지에도 차이가 없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가 다수 존재하여 경영노하우도 활용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회생절차 종결이나 M&A 등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가 가

한국건설법무학회

능하여 잘 경영할 유인도 충분하므로 건설기업에 대하여는 가능한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가 크다.

제2절 DIP Financing 활성화

제1항 현행 제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120]으로서 법원은 자금의 차입을 허가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될 뿐만 아니라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이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회생절차개시 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법원의 허가를 통해 차입한 자금은 최우선공익채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만, 현행「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21]되어 있어 회생절차가 파산절차로 이행될 경우 사실상 우선변제받을 수 없게 된다.

---

120)「채무자회생법」제179조 제1항 제5호 및 제12호.
121)「채무자회생법」제180조 제7항.

한국건설법무학회

제2항 문제점

현행법은 자금의 차입에 대하여만 최우선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건설기업의 회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보증채무를 제외하고 있어 보증기관들이 회생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당초, 회생절차개시 후의 신규차입금을 최우선공익채권으로 하게 된 「채무자회생법」 개정법률안은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2009.1.28. 의안번호 3641호)한 것으로서, 발의안에서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과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대하여 최우선공익채권으로 인정하자는 것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자금차입 외의 행위로 발생된 채권에도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초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신규자금 채권에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입법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나, 최우선공익채권화에 대하여 '기업의 신규자금 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다른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재판상비용청구권 등은 기업의 신규자금 채권이 우선변제 받은 부분만큼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122]는 이유를 든 것과 법무부 법무실장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의 반대의견을 종합해 보면, 임금채권의 침해우려를 그 이유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나 체납

122)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2009.1.28. 의안번호 3641호)한「채무자회생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사보고서 7면.

한국건설법무학회

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4년 12월 30일 공포(법률 제12891호)「채무자회생법」에 의할 경우 신규신용공여는 더욱 더 활성화되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와 같은 신규신용공여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로 인하여 워크아웃과 달리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신용공여가 거의 없었다. 워크아웃절차에서 신규자금이 대출된 이유는 채권금융기관이 그 절차를 주도하고, 이를 상환받기 위한 권리행사에 제약이 크지 않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표 21> DIP Financing 사례

회 생 회 사	공여자	대출액	년도	비고
쌍용자동차	산업은행	1,300억원	2009	평택 본사공장 등 담보대출
대우로자스틱스	PEF	1,200억원	2011	상환전환조건부우선주와 전환사채형태로 각 600억원씩 투자(PEF:블루오션기업재무안전사모투자전문회사)(금리 연 8%)
동양건설산업	SC은행	600억원	2011 2012	금전채권신탁(분양대금채권) 수익권 등 담보(이자율 연 14%)
대한해운[123]	SC로위	900억원	2012	SC로위 파이낸셜서비스외 5개 외국계 금융(이자율 연 23%)
극 동 건 설	건설공제조합	254억원	2013	신탁부동산 담보대출[124](이자율 연 4.65%)
SIX팬오션[125]	산업은행	2,000억원	2013	담보부대출(이자율 연 9%)
대 한 조 선	산업은행	4,000억원	2014	담보부대출(이자율 연 9%)

* 새한비료, 다우닝산업, 진양테크 : 회생담보권을 대체(대환) DIP Financing 존재

123) SM그룹-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이 2013년 9월 17일 인수본계약(인수자금 2,150억원, 지분 50%+1주, 유상증자 1,650억원과 회사채 500억원)을 체결하였다.

124) 시행사 부실로 극동건설이 2008년 6월 사업부지(제주시 오라2동 소재한 제주 오라관광지)를 인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회생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당시 이 부지에 대한 담보신탁사(하나저축은행 등 4개사 : 신탁대출잔액 198억원, 연체

한국건설법무학회

제3항 외국 사례

1. UNCITRAL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126])가 2004년에 제시한 도산법 입법지침[127](Legislative Guide on Insolvency Law)에 의하면, '도산법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적 운영이나 생존, 도산재단 가치의 보존이나 증대를 위해 필요

이자율 22% 적용)가 공매처분할 예정이었으나, 공매처분시 2013년도 감정평가금액 427억원 대비 현격히 낮은 가격에 공매될 상황에 처하여 건설공제조합과 극동건설이 적극적인 협의 및 법원 설득을 통해 건설공제조합이 감정평가액의 60%에 해당하는 254억원을 대출하여 신탁대출잔액 198억원을 상환한 이후 국내외에 적극적인 투자설명회를 통해 2014년 동 부지를 중국계 회사에 약 550억원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건설공제조합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회생절차 진행중에 상당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던 사례로서 극동건설은 회생신청(2012년 2월)한지 2년만에 종결(2014년 8월)하고, 2014년도에만 11월까지 약 2,421억원의 공공공사를 수주(2014년도 종합건설기업 수주액 20위권)할 수 있었다.

125) 2013년 3월 29일 공개매각이 실패한 이후 2014년 11월 4일 예비입찰에 하림그룹, KKR,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5곳이 참여, 2014년 11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매각조건을 변경(8,500억원 유상증자 조건)하였고, 2014년 12월 16일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이 본입찰에 단독으로 참여(입찰가는 1조 600억원)하였다.

126) 각 국의 국제상거래법이 달라서 국제무역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1966년 12월 유엔총회 결의로 설립된 유엔총회의 보조기구이며, 60개 회원국(아시아 14개국, 아메리카 10개국, 아프리카 14개국, 동유럽 8개국, 서유럽 및 그 밖의 14개국)이 임기 6년의 회원국으로 선출된다. 나머지 국가에서는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하지만 회원국과 참가국간에 차이는 없으며, 우리나라는 1980년 4월 참관인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여 2003년부터 회원국에 선출되었으며, 2014년 7월 7일 주유엔한국대표부 한충희 차석대사가 60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임기 1년의 의장에 선출되었다. UNCITRAL는 정부 조달, 중재, 운송, 전자상거래, 도산, 담보부 거래 등 6개 실무작업반이 위원회가 결정한 큰 틀의 주제와 방향을 기초로 연구활동을 펼쳐 마련한 통일 규범안을 매년 6월 본회의에서 평가,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127) UNCITRAL가 성안한 1997년 국제도산 모델법(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2004년 도산법 입법지침(Legislative Guide on Insolvency Law), 2010년에는 기업집단 도산의 처리(Treatment of enterprise groups in insolvency)는 유엔본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제정 과정에서부터 상호 보완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도산법 입법지침의 제1편은 각국의 도산법을 반영하여 도산법의 각 항목별로 다양한 입법례를 소개하고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2편 '국제도산 모델법'은 완화된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외국의 도산사건을 승인하고 이에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모델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3편 '기업집단 도산의 처리'는 기업집단의 도산사건에 적용될 특칙에 대하여 입법례와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연구센터가 법부무에 제출한 '도산법에 관한 UNCITRAL 입법지침 최종연구보고서, 2011.11.28, 4면).

한국법제연구원

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산관리인의 도산절차 개시 후의 금융 획득을 촉진하고 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산절차 개시 후 금융 제공자에 대한 상환이 관리상 우선권을 가진 무담보채권자를 비롯하여 일반 무담보채권자에 우선함을 보장하는 도산절차 개시 후 금융에 적용될 우선권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128] 나아가, 입법지침은 각 국의 도산법에 기존의 담보채권자들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담보채권자에 대한 심문기회 보장, 채무자가 다른 방법으로 금융을 얻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기존 담보채권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전제로 법원이 이미 존재하던 담보권보다 우선하는 담보권의 창출을 허가할 수 있음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파산절차로 전환될 경우 도산절차 개시 후 금융에 따른 회생절차에서의 우선권이 파산절차에서 유지되어야 함을 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 미 국

미국에서도 연방파산법의 DIP Financing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회사의 신규차입 사례는 많지 않다가 1980년대 초반 새로운 투자대상을 찾던 금융기관들이 회생절차가 진행중이던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노스웨스트항공 등에 위 연방파산법의 규정을 믿고 과감히 투자하여 성공한 이후에야 회생회사의 신규차입이 활성화되었다[129]고 한다.

미국 연방파산법은 채무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 어려운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서 기존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산에 대하여 동순위 혹은 최우선 담보권(Prime Lien)의 설정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우선담보권 인정은 기존 담보권자를 해하거나 무용화할 수 있기 때문에 최우선

128) 도산법연구센터, 도산법에 관한 UNCITRAL 입법지침, 이화여자대학교(법무부에 제출한 최종연구보고서), 2011.11.28, 30~32면.

129) 최효종, 기업회생절차 실무의 현황과 개선방안(쌍용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 회생과 파산, 2012, 483면.

한국건설법무학회

담보권 설정없이 신규의 자금이나 신용의 조달이 불가능하였음을 청문절차를 통해 입증하고, 기존 담보권자의 적정한 보호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130]되고 있다.

3.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절차개시판결 이후 '적정하게 발생한 채권'은 회생절차 및 청산절차에 있어 임금우선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을 제외하고는 우선특권 혹은 다른 담보를 수반하느냐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131]고 한다.

제4항 개선 방안

1. 담보권 등에 우선하는 보호

자금차입으로 인한 청구권을 담보권을 포함한 다른 채권 보다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워크아웃에 준하여 영업으로 발생한 현금을 우선적으로 신규자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실무를 운용하여 신규자금 제공의 유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신규자금 대여채권자의 최우선변제권에 관하여 파산절차로 이행할 경우에도 다른 재단채권이나 담보권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조치도 필요하다. 다만 미국과

130) 11 U.S. Code § 364 - Obtaining credit
(d) (1) The court, after notice and a hearing, may authorize the obtaining of credit or the incurring of debt secured by a senior or equal lien on property of the estate that is subject to a lien only if——
(A) the trustee is unable to obtain such credit otherwise; and
(B) there is adequate protection of the interest of the holder of the lien on the property of the estate on which such senior or equal lien is proposed to be granted.
(2) In any hearing under this subsection, the trustee has the burden of proof on the issue of adequate protection.

131) 이지은, "프랑스법상 도산절차의 우선특권",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53호, 2011.1, 176면.

한국건설법무학회

같이 담보권에 우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담보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이 바람직하고, 임금채권의 보호를 위해서 신속히 임금채권지급보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살펴본다.

2. 신용공여 범위의 확대

「채무자회생법」은 공익채권 중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래는 차입금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팩토링계약, 자산유동화거래, 보증거래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나 신용보강 방법이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이 자금이나 보증이 필요한 경우 제공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신용공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형태의 신용공여에 대하여는 채권자협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조업과 달리 자산이 거의 없는 것이 건설기업의 특성이고, 특히 재무적 곤란으로 회생절차에 들어온 기업으로서는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자산은 사실상 없을 것이므로 동양건설산업의 사례와 같이 건설기업의 유일한 담보가용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매출채권을 일정한 조건 하에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신용공여자의 관리권 강화

채권금융기관은 법원의 회생절차에 대한 불신이 크고,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내용에 대하여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따라서 회생기업의 재무상황, 회생가능성, 기업가치 등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자금조달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금융기관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기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종전의 제1회 관계인집회)를 법원의 재량으로 개최하고,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개

한국건설법무학회

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계인설명회 개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만 하고, 채권자에게 관계인설명회 개최 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으로 2014년 12월 30일 공포(법률 제12891호)된「채무자회생법」의 해당 부분은 채권자의 회생정보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신규신용공여자가 회생절차 초기부터 채권자협의회를 통하여 기업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회생절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므로써 채무조정계획 및 자구계획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 작성도 관여하도록 하고,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의무화는 물론 신규신용공여 이후 이보다 우선하거나 동순위가 될 수 있는 신규신용공여의 신청을 금지하거나 최소한 기존의 신규신용공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3절 장래구상채권의 의결권 평가기준 마련

제1항 현행 제도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132]로서 개별적 권리행사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집단적 권리행사의 하나로서 의결권을 행사를 통해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안의 확정을 저지하여 유리한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유도하거나 회생절차 폐지를 도모하게 되는 것[133]이므로 집단적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의결권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확정된 금액이나 수에 따라 의결권을

132)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2011년(제3판), (주)박영사, 3면.
133) 대법원 2005.6.15.선고 2004그84 결정.

한국건설법무학회

행사하고 있고, 이의 없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지분권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금액이나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회생채권을 평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법원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 여부 및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액 또는 수를 결정하여야 하는데[134], 조사기간 내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진술된 미확정의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이라도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제3회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에 대한 이의가 진술되지 아니하면 그 권리자는 그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액수 상당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생절차는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평등한 배당을 위한 기준액을 정하기 위한 금전화, 현재화가 필요하지 않지만 의결권 행사를 통해 회생절차에 참가하므로 의결권을 인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회생채권을 균질화시키기 위해 현행「채무자회생법」은 의결권 액수의 산정을 위한 비금전채권, 기한부채권 또는 조건부채권의 균질화에 관하여 <표 22>와 같이 규정[135]하고 있다.

<표 22> 회생채권 종류별 의결권 인정기준

종 류	근 거	의 결 권
회생절차개시후 기한도래 이자 없는 기한부채권[136]	제134조	회생개시일부터 기한도래까지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원금의 합계가 기한도래 당시 채권이 되도록 계산후 그 채권액에서 이자를 공제한 금액
금액과 존속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정기금채권	제135조	

134)「채무자회생규칙」제68조.
135) 오민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대한 온라인주석서", 로앤비자료, 2014.7.8.

한국건설법무학회

기한불확정 무이자부채권, 존속기간불확정 정기금채권 금액불확정 정기금채권,[137]	제136조	회생절차개시 때의 평가금액
비금전채권, 금액불확정금전채권 외국통화채권[138]	제137조	
장래의 구상권, 조건부채권	제138조	
그 밖의 채권	제133조	채권액

제2항 문제점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한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139], 장래의 청구권과 조건부채권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

136)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의결권을 기한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관하여만 인정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므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유로 약정된 경우에는 기한도래채권과 동일하게 채권액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이 인정될 것이다.

137)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은 사망한 때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채권이나 추첨에 의해 상환의 순서가 결정되는 채권 등을 들 수 있고, 금액이 불확정한 정기금채권은 자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의 분배에 기한 정기금채권이 있으며,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정기금채권은 종신정기금채권을 들 수 있다.

138) 비금전채권은 물건인도청구권, 운송청구권 등과 같이 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닌 경우이고, 금액불확정금전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에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확정채권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과는 다르다.

139)「채무자회생법」과 동일한 내용의 회사정리법(2005.3.31. 법률 제7248호) 제110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을 정리채권으로 행사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2항은,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의 변제에 의하거나 또는 그

한국건설법무학회

시될 때의 평가금액'을 의결권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건설기업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이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의 보증기관이 가지는 장래의 구상채권에 대하여 채권조사절차에서 채권액 자체에 대하여는 시인하되, 의결권액에 대하여는 현실화 가능성을 평가하여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만큼만 시인하거나, 이 단계에서 현실화 가능성을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단 의결권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그 후에 관리인이 평가되는 현실화 가능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이의를 철회하거나 계속 이의를 할 부분에 대하여는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에 대한 이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해당 보증기관이나 관리인으로부터 지난 수 년간 보증기관의 보증채무가 현실화된 통계적 비율의 수치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하여 보증기관의 의결권을 미리 평가한 후 관계인집회에서 그 평가된 액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면 될 것이다고 하면서도[140], 의결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장래의 구상채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없고[141] 관리인이 시인한 장래구상채권의 의결권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급히 개선[142]되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채무자회생법」과 달리 조건부채권이나 장래의 청

변제와 정리회사의 변제 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위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게 되는 경우에 위 변제한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그 변제액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보증인이 채권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이 경우 보증인과 채권자는 동등한 순위로 정리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대법원 2009.9.24.선고 2008다64942 판결)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은 사안의 경우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권신고 등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전제되어야 한다.

140)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2011년(제3판), (주)박영사, 25면.

141) 대한해운(2011회합14)과 STX팬오션(2013회합110)에 대하여 장래구상채권을 보유한 외국계 채권자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42) 조건부채권(장래의 청구권)에 대한 의결권 인정(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와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전문기관이 2013년 2월 13일부터 간담회를 가졌으나,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간담회도 중단된 상태이다.

한국건설법무학회

구권에 대한 의결권을 실무상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각 보증기관마다 대위변제율이 달라 평가기준을 잡기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그 동안 보증기관들이 채권의 일부면제나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부동의하는 경향이 강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2011년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통한 동의기준으로 ① 건설공제조합이 신고한 채권 전부 인정, ② 회생계획상 변제조건이 다른 채권자와 비교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유지, ③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예상액이 청산절차에 의한 변제예상액(연대보증인으로부터 회수예상액 포함) 초과, ④ 회생계획상 영업활동, 자산매각, 신규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실현 가능, 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한 사업장의 계속수행으로 보증금 대위변제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채권의 면제나 출자전환이 포함된 회생계획(안)도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속행기일의 지정에 대하여 부동의하던 것을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조건 충족여부에 불구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였다.

제3항 외국 사례

1. UNCITRAL

UNCITRAL의 도산법 입법지침에 의하면, 도산법은 도산절차에서 다투어지는 미확정채권(Unliquidated claims) 등 청구권이 법원에 의해 해결될 때까지 도산관리인에 의해 임시적으로 시인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시적으로 시인된 미확정채권의 채권자에게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진술권의 부여, 채권자 집회에서 회생계획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의결권 부여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143]

143) 도산법연구센터, 도산법에 관한 UNCITRAL 입법지침, 이화여자대학교(법무부에 제출한 최종

한국건설법무학회

2. 미 국

연방파산법도 회생절차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구상채권을 조건부채권(Contingent Claim) 또는 금액미확정채권(Unliquidated Claim)으로 분류[144] 하고, '제한된 목적'을 위해 평가를 하도록 강제[145]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고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146]하고 있으며, 보증회사가 조건부채권이나 금액미확정채권을 신고한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구상채권의 유효성과 금액에 대한 증거가 된다[147]고 한다.

3. 일 본

우리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갱생채권에 대하여 일본의 회사갱생법은

연구보고서), 2011.11.28, 71면.

144) 조건부채권(Contingent Claim)은 현재에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나, 장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효과가 발생하는 채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금액미확정채권(Unliquidated Claim)은 채권이 존재하는 것은 명백하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145) 11 U.S. Code § 502 - Allowance of claims or interests

(C) There shall be estimated for purpose of allowance under this section—

(1) any contingent or unliquidated claim, the fixing or liquidation of which, as the case may be, would unduly delay the administration of the case; or

(2) any right to payment arising from a right to an equitable remedy for breach of performance.

146) Federal Rules of Bankruptcy Procedure § 502 - Acceptance or Rejection of Plan in a Chapter 9 Municipality or a Chapter 11 Reorganization Case

(a) Entities Entitled To Accept or Reject Plan; Time for Acceptance or Rejection. A plan may be accepted or rejected in accordance with §1126 of the Code within the time fixed by the court pursuant to Rule 3017. Subject to subdivision (b) of this rule, an equity security holder or creditor whose claim is based on a security of record shall not be entitled to accept or reject a plan unless the equity security holder or creditor is the holder of record of the security on the date the order approving the disclosure statement is entered or on another date fixed by the court, for cause, after notice and a hearing. For cause shown, the court after notice and hearing may permit a creditor or equity security holder to change or withdraw an acceptance or rejection. Notwithstanding objection to a claim or interest, the court after notice and hearing may temporarily allow the claim or interest in an amount which the court deems proper for the purpose of accepting or rejecting a plan.

147) 이의섭, 회생절차시 공사계약 관련 보증 취급 방법 개선 방안, 건설산업연구원, 2013, 27면.

한국건설법무학회

기한부채권, 조건부채권, 장래의 청구권의 의결권은 갱생절차가 개시 된 때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을 뿐[148] 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제4항 개선 방안

장래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회생기업이 발주자 등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기관이 보증하는데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그 금액도 큰 것이 현실이며, 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보험)기관이 취급하는 보증(보험)상품이 다양할 뿐만아니라 회생기업이나 보증(보험)기관에 따라 대위변제되

148) 第百三十六条（更生債権者等の議決権）

1.更生債権者等は、その有する更生債権等につき、次の各号に掲げる債権の区分に従い、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金額に応じて、議決権を有する。

一 更生手続開始後に期限が到来すべき確定期限付債権で無利息のもの　更生手続開始の時から期限に至るまでの期間の年数（その期間に一年に満たない端数があるときは、これを切り捨てるものとする。）に応じた債権に対する法定利息を債権額から控除した額

二 金額及び存続期間が確定している定期金債権　各定期金につき前号の規定に準じて算定される額の合計額（その額が法定利率によりその定期金に相当する利息を生ずべき元本額を超えるときは、その元本額）

三　次に掲げる債権　更生手続開始の時における評価額

イ. 更生手続開始後に期限が到来すべき不確定期限付債権で無利息のもの

ロ. 金額又は存続期間が不確定である定期金債権

ハ. 金銭の支払を目的としない債権

ニ. 金銭債権で、その額が不確定であるもの又はその額を外国の通貨をもって定めたもの

ホ. 条件付債権

ヘ. 更生会社に対して行うことがある将来の請求権

四　前三号に掲げる債権以外の債権　債権額

2.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更生債権者等は、更生債権等のうち次に掲げるものについては、議決権を有しない。

一. 更生手続開始後の利息の請求権

二. 更生手続開始後の不履行による損害賠償及び違約金の請求権

三. 更生手続参加の費用の請求権

四. 租税等の請求権

五. 第百四十二条第二号に規定する更生手続開始前の罰金等の請求権

3.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更生会社が更生手続開始の時においてその財産をもって約定劣後更生債権に優先する債権に係る債務を完済することができない状態にあるときは、当該約定劣後更生債権を有する者は、議決権を有しない。

는 비율이 상이하여 평가기준 설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국내 보증(보험)기관 중 3대 보증(보험)기관인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대한주택보증 중 건설보증전문기관으로서 최대규모이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설기업에 대한 장래구상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건설공제조합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1. 대위변제준비금 적립기준 적용(안)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제조합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가「건설산업기본법」제65조의2에 따라 감독기준[149]을 제정하여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에 의하면, 공제조합은 보증잔액에 대한 손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결산일 현재의 보증잔액에 손실률을 곱하여 대위변제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고, 손실률은 보증사고발생률, 보증금대급률, 미회수위험률 등을 고려하여 최근 5년 이상의 내부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신규 보증 또는 대급실적이 없는 경우 등 합리적인 손실률 산정이 어려운 보증에 대하여는 유사보증의 손실률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감독기준이 정한 대위변제준비금 적립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적립의 적정성여부를 점검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150]

감독기준에서 '합리적 기준'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건설공제조합 내부규정인「회계규정」제19조에서는 대위변제준비금 기준을 '결산일 현재의 보증별 보증잔액'에 대하여 보증사고발생률, 보증금지급률 및 미회수위험률을 차례대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149)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47호 : 2012.7.24).
150)「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제13조.

한국건설법무학회

<표 23> 건설공제조합 회계규정상 대위변제준비금 기준

구 분	계 산
보증사고발생률	보증사고 발생액 / 보증실적
보증금지급률	보증대급금 발생액 / 보증사고 발생액
미회수위험률	(총보증대급금상각액+보증대급금예상손실액)/(기초 보증대급금+총보증대급금발생액)
* 상기 각 율의 계산은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보증실적, 보증사고발생액, 보증대급금발생액, 보증대급금상각액은 최근 5년간 실적으로 하고, 기초보증대급금은 동 기간의 최초 사업년도의 기초잔액으로 하며, 보증대급금예상손실금액은 결산일 현재 보증대급금에 대한 예상손실액(대손충당금 설정금액)으로 함	

2. 보증유형별 대급전환율 적용(안)

한편, 감독기준은 공제조합이 영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금액으로 환산한 요구자본액을 보증리스크량, 신용리스크량, 시장리스크량, 운영리스크량, 금리리스크량을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보증리스크량 산출에 있어서 보증익스포져기준 리스크량 산출요소로 보증유형별 대급전환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감독기준이 정한 보증유형별 대급전환율[151]은 <표 24>와 같다.

151) 대급전환율이란 보증잔액이 대급되는 비율을 말한다(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제3조제7호).

한국건설법학회

<표 24> 공제조합 감독기준상 보증유형별 대급전환율

구분		관련 보증	대급전환율
입찰보증		입찰보증, 협약체결보증	1%
이행성	공공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공사이행보증, 사업이행보증, 협약이행보증	10%
	민간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시공보증	20%
준지급성	공공	선급금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부지매입보증	20%
	민간	선급금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30%
지급성보증		대출보증, 리스보증, 자재구입보증, 할부판매보증	100%
그 밖의 보증		그 밖의 보증	50%

3. 회생기업 보증금 대위변제율 적용(안)

「채무자회생법」 시행일부터 2013년말까지 회생절차를 신청한 건설기업을 기준으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일 당시 보증잔액 중 회생절차가 종결될때까지 대위변제한 보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회생신청 건설기업에 대한 장래구상채권의 의결권 평가기준으로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은 매 년도말에 대위변제율을 산출하여 법원에 통보되어야 하고, 통보된 사항에 대한 법원의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번거로운 점이 있으나, 감독기준의 대위변제준비금 산출기준(최근 5년) 보다 길고(2015년도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일 경우 약 9년간의 데이터 활용), 회생기업을 기준으로 하는 점에서 현실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한 종합건설기업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를 신청한 시공능력순위 100위내 업체 중 2014년 11월 30일까지

한국건설법무학회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26사에 이 방안을 적용할 경우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의 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한 11조 6,000억원 중 7,168억원의 대위변제가 일어났으므로 대위변제율은 약 6.179%로 나타난다.

<표 25>는 대한주택보증의 연도별 보증실적과 대위변제금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상품 중 분양보증과 하자보수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 평균 71.3%로서 두 가지 상품의 5년간 대위변제율 평균을 보면, 분양보증은 1.7%, 하자보수보증은 10.7%를 보이고 있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 손해율은 53.8%를 보이고 있다.

<표 25> 대한주택보증의 연도별 보증실적과 대위변제금액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분양보증	실적	265,801	179,111	331,087	348,576	377,811	1,502,386
	변제	9,647	9,189	1,056	3,805	1,881	25,578
	비율	3.63	5.13	0.32	1.09	0.50	1.70
하자보증	실적	6,595	9,611	6,632	6,234	6,076	35,148
	변제	470	720	1,000	750	814	3,754
	비율	7.13	7.49	15.08	12.03	13.40	10.68

* 출처 : 대한주택보증(http://www.khgc.co.kr/khhp/web/mo/ma/moma000002.jsp)

제4절 회생전문법원의 설치

제1항. 현행 제도

1998년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70개 회사(자산규모 20조원)의 회사정리사건을 판사 4명이 담당하는 등 담당법관들의 업무부담이 과중하

한국법무학회

고 회사정리사건의 처리에 있어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됨에 따라 회사정리사건 등의 적정·신속한 처리를 기함과 동시에 법관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해주고 과중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변호사·공인회계사·은행가 등으로 구성되는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회사정리법」개정법률안이 정부에 의해 1998년 2월 9일 제출되었다.

관리위원회 설치를 내용을 담고 있는「회사정리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회는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긍정적으로 수용함과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Bankrupcty Court와 같이 유기적인 도산관련 제도인 회사정리·화의·파산사건을 종합적으로 관할하는 전담법원의 설치문제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152]한 바 있다.

또한, 1998년 9월 15일에 합의한 제1차 구조조정차관의 정책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한편 20억불의 차관공여 조건으로 금융개혁, 기업구조조정, 사회안전망 분야 등 세 분야에서 구조 개혁 과제를 담은 제2차 구조조정차관협약(Second structural adjustment loan)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1998년 10월 24일 체결할 당시 기업구조조정 분야로서 회생전문법원의 설치가 요구[153]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회생법원[154]은 설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회생

152) 정부가 1998.2.9. 제출한 회사정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 8면.

153) KOREA-SAL II Policy Matrix. (Corporate Sector Reform)
Part B : Corporate Governance, Competition Policies, and Reform and Privatization of SOEs Corporate Governance.
(b) Legal Framework for Creditors', Rights
Improve the insolvency system and strengthen capacity to handle bankruptcy cases.
Policy Measures
First Tranche : Creation of bankruptcy commission to assist Seoul Court by handling aspects of insolvency litigation.
Appoint a task force comprising representatives of the judiciary and MOJ under TORs acceptable to the Bank to study the speedy adjudication of bankruptcy case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one or more specialist bankruptcy courts.
Second Tranche : Establish a pilot specialist bankruptcy court in Seoul with dedicated judges.

154) 기존의 전문법원 설치 논의를 보면 대부분 파산법원, 도산법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부정적 의미가 강하고 회생제도의 기본법률의 명칭인「채무자회생법」과도 어울리지 않으

법원 대신 통합재판부 형태의 도산전문재판부가 전국 지방법원에 총 247개 설치되고, 도산 사건 담당 법관은 총 125명(이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8명)에 이르고 있지만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순전히 도산사건만 담당하는 곳은 서울, 부산, 창원지법 3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도산법관이 다른 업무도 겸하고 있다[155]고 한다.

제2항 문제점

선진 각국의 경우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사법절차에 한정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회생계획안의 작성·의결, M&A의 추진 등 경제적 절차는 채권단에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정관리"라는 용어를 일부 언론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의 대부분의 절차를 법원이 전담[156]하고 있다.

회생사건은 법리적 판단보다는 사법행정적 업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고, 법관인사가 일반법원과 특별법원을 섞어 모든 판사를 2~3년 마다 교체하거나 승진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157], 관리위원회가 있으나 도산법원에 예속되어 독립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그 역할이 의견제시에 편중되어 사안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는 점 또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며, 법원의 허가사항이 관리위원에게 위임된 때에는 법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법관의 고유직무를 대행한다는 논란[158]이 생길 수 있다.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유해용 부장판사는 국제법률심포지엄에서 "한국법원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대립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법률적 분쟁에

므로 본 논문에서는 '회생법원'으로 표현한다.

155) 홍성준, "우리나라 도산전문법원 도입에 관한 연구", 도산절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도산전문법원 도입 연구 심포지엄(2014.7.14) 자료집, 130면.

156) 안정상, "기업지배구조론의 회생기업에 대한 적용 방안", 경영법률, 2011, 149~150면.

157) 오수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배경 및 주요 내용", 법조 2005.5(Vol.584), 56면.

158) 김주학, "미국 연방관재관 제도의 도입논의에 대한 실무적 검토",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50호, 2010.4, 77면.

대한 중립적 심판자의 지위에 머물지 않고 후견적 관리자 또는 조정자 역할까지도 담당하고 있으나, 그 정당성과 적절성이 문제되고, 중립성과 공정성이라는 사법 본래의 역할이 후퇴할 염려가 있으며, 조사확정재판, 부인권 청구에 대한 재판과 각종 소송행위에 대한 감독권 행사는 서로 상충될 여지가 있으므로 가장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들에게 분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159]"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림 4>는 전국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2014년은 10월말까지 접수된 건수를 년으로 환산)된 법인회생·파산 사건(일반회생 사건을 포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전국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사건의 비중이 2008년에 34%에서 2013년에는 39%, 2014년에는 43%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의 도산 담당 인력이나 조직으로는 도산 사건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최근 7년간 법인회생·파산 사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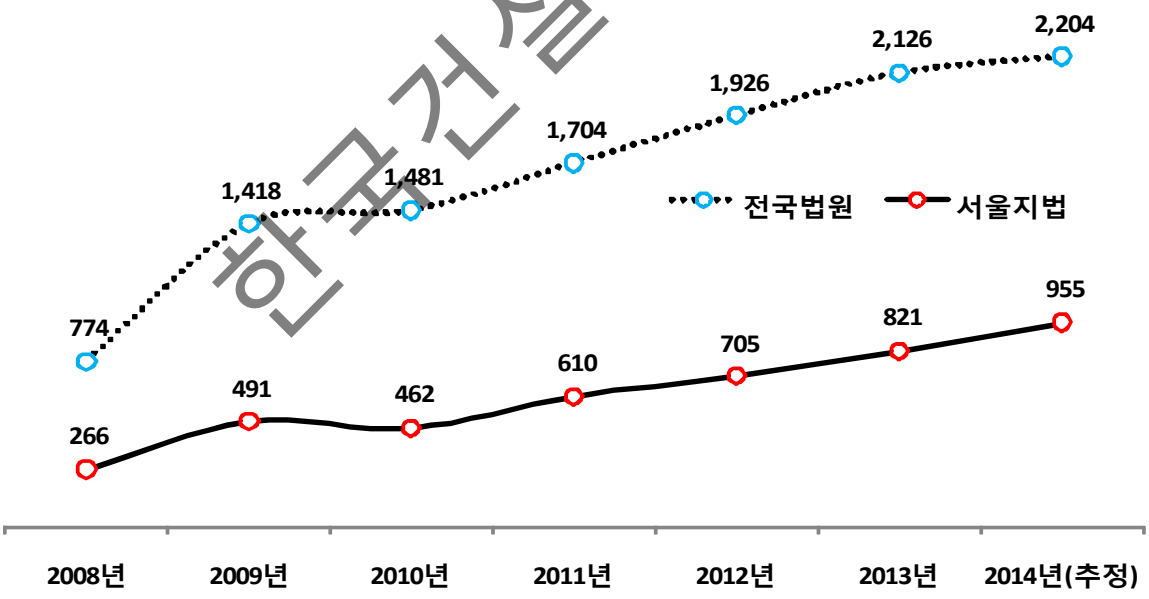

* 출처 : 대법원 통계자료(http://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ViewAction.work?gubun_code=G01&tcode=T09&scode=S01&year=2014&gubunyear=2014&month=10)

159) 유해용,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한국의 기업회생 실무와 쟁점", 법률신문, 2009.9.28, 13면.

한국건설법무학회

제3항 외국 사례

미국은 District of Columbia와 Puerto Rico를 포함하여 94개의 사법관할지역으로 구분되고, 각 사법관할 지역마다 1개의 지방법원과 이에 부속된 파산법원을 두고 있는데[160], 파산법원은 미국 연방파산법상 모든 파산사건을 심리, 결정하는 법원이지만 연방지방법원과 독립한 법원은 아니고 연방지방법원의 한 단위(Unit)[161]라고 한다.

2008년 9월 이후 전세계적 관심을 끌었던 Lehman Brothers나 Chrysler의 사건, GM의 사건도 모두 뉴욕 남부 파산법원에 신청된 것과 같이 미국의 경우 주소지 관할구역의 파산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파산법원 어디든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 회사에 호의적인 뉴욕 파산법원과 델라웨어 파산법원에 Chapter 11의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개별 파산사건에 관한 행정적인 감독기능은 법무부 소속 연방관재관(United States Trustee)가 담당하고, 파산판사(Bankrupcty Judge)는 파산사건의 심리에만 전념하게 되는데, 파산판사는 연방 판사이기는 하지만 연방 헌법에 따라 종신 임기가 보장되고 보수가 감액되지 않는 이른 바 Article Ⅲ Judge가 아니라 당초 연방법원판사를 보조하는 지위에서 유래한 판사로서 연방항소법원(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circuit)이 임명하고, 임기도 14년(연임은 가능)이며 보수의 보호가 없는 법관(Article Ⅰ Judge)으로서 양자의 차이가 크다[162]고 한다.

---

160) 윤남근, "세계 금융위기와 미국 파산법원의 대응", 도산절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도산전문법원 도입 연구 심포지엄(2014.7.14) 자료집, 17면.

161) 홍성준, GM 파산보호신청 관련 미 파산법상 절차 및 국내파급효과, 산업통상자원부(연구용역보고서), 2009, 5면.

162) 홍성준, GM 파산보호신청 관련 미 파산법상 절차 및 국내파급효과, 산업통상자원부(연구용역보고서), 2009, 5면.

한국건설법무학회

제4항 개선 방안

정부가 2004년 11월 6일 제출한「채무자회생법」제정안에 대한 국회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회생전문법원의 설립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으나, 전문성을 가진 법관의 수가 그 만큼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회생전문법원의 설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가 많다는 점, 회생전문법원의 설치문제는「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할 문제가 아니라「법원조직법」의 개정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회생전문법원의 설립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도 보았다. 그러나, 현재는 다수의 지방법원에 파산전담재판부가 구성되어 있고, 그 동안 회생사건을 다룬 수 많은 법관이 배출된 상태이며, 예산 문제는 회생법원의 설립 수와 규모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을 뿐만아니라 회생법원의 설립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고려할 경우 본질적인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회생법원의 설립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무부는 '민·형사 재판의 공판중심주의·구술심리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판사의 법정 투입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당사자 본인 사건 비중이 증가하고 사회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사건의 증대 및 분쟁의 복잡화로 사건 난이도가 증가하고 있어 판사의 업무량이 과중한 실정이므로 판사의 업무량을 적절히 유지함으로써 신속·공정한 재판을 구현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판사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의「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이 2014년 12월 31일 개정[163]된 상태이다.

회생법원 설립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회생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의 관할 구역에 모두 설립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고등법원이 설치된 곳에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차선책으로

163)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순차로 50, 60, 80, 90, 90명의 판사 정원이 증원(총 370명)하게 된다(법률 제12951호로 공포된 동 법률 제1조 및 부칙).

한국건설법무학회

회생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는 서울에 우선 설립한 이후에 그 효과와 예산 부담을 고려하여 고등법원이 설치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 외에도 경영, 회계, 행정 등과 관련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회생·파산절차의 정책수립 등을 목적으로 2013년 대법원 행정처에 자문기구로 설치한 '회생·파산위원회'를 대법원 행정처와는 독립된 별도의 부처로 격상시켜 사법적 심사 대상을 제외한 사항을 총괄하고, 각 지방법원에 설치된 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인, 조사위원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5절 임금채권지급보증 제도 도입

제1항 현행 제도

우리「채무자회생법」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을 그 발생시기가 회생·파산절차개시 전후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모두 공익채권 내지 재단채권으로 취급[164]하고 있다.

2014년 12월 30일 공포(법률 제12891호)되기 이전「채무자회생법」하에서 근로자는 파산절차 개시 전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변제받고, 그 외의 임금·퇴직금에 대하여는 담보권으로 담보되지 않는 채권 중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나, 파산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지 또는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배분하여 변제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164)「채무자회생법」제179조제 10호, 제473조 제10호.

한국건설법무학회

<표 26> 파산절차 개시 전 채권의 우선변제 순위

순위	채권 유형
1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주택임차보증금 또는 상가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2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3	담보권부 채권
4	1순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임금·재해보상금 및 퇴직금
	1순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주택임차보증금 및 상가임차보증금
5	일반채권

<표 27> 파산절차 개시 후 채권의 우선변제 순위

순위	채권 유형
1	주택임차보증금 또는 상가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2	담보권부 채권
3	1순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주택임차보증금 및 상가임차보증금
4	일반채권

위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함에 따라 2013년 2월 8일 최봉홍 의원 등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금 및 퇴직급여 채권자가 파산자 소유재산의 경매절차에서 후순위권자 그 밖의 채권자 또는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임금채권을 변제받도록 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의안번호 : 1903668, 법제사

한국건설법무학회

법위원회 심사에서 대안반영으로 폐기)하여 2014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165]되었다. 이에 따라「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의 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채무자회생법」제349조 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2항 문제점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근로자의 임금채권 전액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자 회생·파산채권자의 희생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임금채권 등의 일부만을 공익·재단채권으로 하는 것을 입법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견해[166]도 있다. 그러나, 물적 유형자산이 많지 않고, 인적 자산의 역량에 큰 영향을 받는 건설기업의 특성과 회생신청 당시 부실로 인해 대부분 몇 개월간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가 많아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면 우수한 인력의 유출로 인적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성공적인 회생을 진행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건설기업의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회생절차로 인하여 임금을 받을 수도 없다는 불안감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기피하고 있어 가뜩이나 공사가 지체 중인 건설기업으로서는 지체상금이 누증[167]되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165)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법률 제12891호로 2014년 12월 30일 공포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부칙 제1조)하게 되고, 개정법률안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등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부터 적용(부칙 제4조)하게 되며,「임금채권보장법」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제415조의2 단서).

166) 양형우, "회생·파산절차개시가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제8권 제4호, 2008.12.12, 100~101면.

167)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건설기업의 경우 대부분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체불하고 있어 하청업체의 유치권행사나 근로자에 의한

한국건설법무학회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채권 전부를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바람직하고,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4년 12월 30일 공포(법률 제12891호)된「채무자회생법」역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여진다.

다만, 건설기업과 같이 물적 담보물이 거의 없는 회생기업의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 이후 회생계획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증가하지 못하고 파산절차로 진행될 경우 근로자에게 변제할 자원이 부족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이 현실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임금채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채권지급보증(보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4년 12월 30일 공포(법률 제12891호)된「채무자회생법」에서는「임금채권보장법」제8조[168]에 따라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의 승계가 단절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지급하는 체당금은 근로자의 퇴직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파산업무 수행을 위해 재직하는 근로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회생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 외의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회생이나 파산선고된 기업의 경우에만 담보권에 우선하여 보호하는 것은 담보권자간의 형평성을 저해

공사현장 농성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회생 건설기업은 이를 해결할 만한 자금이 없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168) **「임금채권보장법」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②「근로기준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한국건설법무학회

하고, 회생절차를 악용할 소지가 있을 뿐만아니라 체당금을 지급하는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공평한 분배를 저해함은 물론 기금 자체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제3항 외국 사례

독일은 도산절차개시 전의 임금채권은 도산채권으로 취급하고, 개시 후의 임금채권은 도산재단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재단(공익)채권으로 취급하고 있다.

일본의 파산법은 파산절차개시 전 3개월간의 임금채권과 3개월간의 급료 총액에 상당하는 퇴직수당채권은 재단채권으로 취급하나, 나머지는 우선적 파산채권으로 취급하며, 회사갱생법은 개시 전 원인에 기하여 6개월간에 생긴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취급하지만 회생계획인가 전에 퇴직한 퇴직수당청구권은 퇴직 전 6개월분의 급료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퇴직수당 1/3에 상당하는 금액 중 다액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고 나머지는 우선적 채권으로 취급하고 있다.

제4항 개선 방안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회생신청한 기업에 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발생하는 임금채권에 대한 보증을 의무화하여 우수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회생이나 파산절차가 진행된 기업에 대한 담보권자와 그 외의 기업에 대한 담보권자간의 형평성 유지와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신용공여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 제출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정부 2013년 10월, 이완영 의원 2013년 1월)에 대하여 국회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채권지급보증(보험) 제도의 도입에 대

한국건설법무학회

하여는 인정하였으나,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재원으로 운용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보증기관에 포함할 경우 공제회의 기능상 문제가 있고, 건설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보증기관의 구상권행사를 통한 채권회수가 100% 달성하기 어려워 보증기관 전체의 안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169]는 등의 이유로 '임금채권지급보증(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170]된 바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임금채권지급보증(보험)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외할 것인지 문제에 대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고용노동부도 제외하는 것에 동의하는 상황이고, 임금지급을 보증하는 기관의 낮은 채권회수율에 따른 문제는 체당금 등에 대한 보증기관의 대위권 인정을 「임금채권보장법」에 명확히 명시하면 일정 부분 회수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임금채권지급보증(보험)과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는 '공익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종전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대위변제자에게 이전'된다[171]고 보고 있었으나, 2014년 12월 30일 공포(법률 제12891호)된 「채무자회생법」 하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더라도 담보권자 등에 우선하지 못하게 되었음이 명백해졌지만 임금지급을 보증한 기관이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권있는 임금채권자의 잔여 임금과의 관계에서는 후순위'라고 판단[172]하고 있는 현재의 「채무자회생법」 하에서는 대위변제한 보증기관에게 최우선변제권 내지 임금채권자의 잔여채권과의 동순위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의 우선권은 관념적인 권리, 즉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게되므로 체불임금을 대위변제한 보증기관의 구상권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명문화할 필요도 있다.

---

169) 제322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14.2.18, 2014.2.21).
170) 2005년 3월 31일 「선원법」 개정으로 선원에 대하여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보증이나 공제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선원법」 제56조).
171) 대법원 2009.2.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172) 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한국산업법무학회

제6절 인수합병 시장의 활성화

제1항 현행 제도

기업의 인수합병은 도산상태에 처해 있는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었음에도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채무자회생법」제정시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정비하였다. 즉,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에 관한 서류 등의 사본을 법원이 채권자협의회에 제공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 등을 법원에 교부·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회사정리법」당시 회생절차에 관한 정보를 관리인이 채권자에게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M&A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정비하였고,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근본적인 문제로서,「채무자회생법」에 인수합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는 것은「채무자회생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법령의 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설령 구현한다 하더라도 인수합병이 경제상황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는 없다.

제2항 인수합병의 어려움

제조업 등과 달리 건설기업에 대한 M&A가 어려운 이유는 건설경기의 침체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 건설기업 상호간의 이행보증으로 인한 우발채무의 불확실성, 산재하는 공사현장으로 인한 실사의 어려움, 부외 부채의 가능성, 시행사·시공사·하도급업체 등 이해관계자간의 복잡한 법적 분쟁이 많다는 점에도 있다.

한국건설법무학회

우리나라의 경우 회생기업에 대한 M&A에 있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 회생회사의 회생원칙은 기본적으로 독자생존이어야 하며 제3자 M&A는 예외여야 함에도 독자생존의 사례는 메디슨을 비롯하여 극소수에 한정될 뿐「회사정리법」시대를 포함하여 회생회사의 성공적 회생사례는 대부분 회사지배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M&A로 종결되고 있어 원칙과 예외가 바뀐듯 한 형국이고, 둘째, 국내외 M&A 경기가 좋았던 2006년~2008년 상반기까지는 M&A 경쟁과열로 인하여 인수대금이 예상을 뛰어넘는 고액이었고, 이에 따라 채무재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회생계획안 작성없이 원래의 회생계획 그대로 채무를 전액변제할 수 있었던 사례들이 종종 있었으나(대한통운, 동해펄트, 충남방적 등의 사례),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이후에는 M&A경기가 좋지 않아 인수대금이 청산가치를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부 소규모 회생회사 M&A사례 이외에는 대부분 채무재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회생계획안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화[173]된것 같다. 이러한 상황은 DIP제도를 규정한「채무자회생법」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미국 등 도산법제가 발달한 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때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건설기업의 M&A 목적과 관련해서도 외환위기 직후의 건설기업에 대한 M&A가 주로 투자목적의 외국계 회사나 기존 건설기업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최근의 건설기업 인수는 사업영역 다각화를 통하여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즉 건설업을 직접적으로 영위하지 않는 유동성이 풍부한 중견그룹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174]고 한다.

173) 최효종, 기업회생절차 실무의 현황과 개선방안(쌍용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 회생과 파산, 2012년, 495면.
174) 김가영, "M&A를 통한 중견그룹의 건설업 진출", Nice Issue, 2008.3.10, 14면.

한국건설법무학회

<표 28> M&A를 완료한 건설기업

(2014년 12월 31일 기준)

그룹명	피인수회사	연도	투자금액
C&그룹	우방	2004	3,359억원
LIG그룹	건영	2006	4,100억원
C&그룹	아남건설	2006	791억원
코보스톤건설	영남건설	2006	64억원
대한전선그룹	명지건설	2007	495억원
웅진그룹	극동건설	2007	6,600억원
한국정밀기계 컨소시엄	진우플랜트건설	2007	88억원
프라임개발	동아건설산업	2007	6,780억원
효성그룹	진흥기업	2008	931억원
박용오(전 두산그룹 회장)	성지건설	2008	441억원
삼라그룹	우방	2010	204억원
삼라그룹	신창건설	2011	510억원
중국계 회사	대우자동차판매	2011	-
우방	학산건설	2013	28억원
플라스코앤비	범양건영	2013	120억
SG그룹	신성건설	2013	200억
이지건설	동양건설산업	2014	160억원

* 동양건설산업의 M&A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2015년 1월 29일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건설법무학회

광운대학교 VERITAS et LUX 광운 KWANGWOON UNIVERSITY MAY 1934 SEOUL KOREA

<표 29> M&A가 진행중인 건설기업

(2014년 12월 31일 기준)

기 업 명	추진 상황
극동건설	- 매각주간사 선정예정 - 700억원으로 매각 예상
남광토건	- 6월, 11월 등 2차례 유찰 - PF부채 등 1조원이 넘는 채무보증과 사업토지 등 약 250억원 내외의 자산매각 지연도 걸림돌로 작용
쌍용건설	- 2007년 이후 일곱 차례나 매각 실패 - 2014.10.7. LOI마감[두바이투자청(국부펀드), 싱가포르 사모펀드(PEF), 우방산업 컨소시엄(삼라그룹), 스틸앤리소시즈 참가] - 2014.12.17.본입찰마감(싱기포르 사모펀드 불참) (3개 입찰자 모두 감정가 약 3,000억원 보다 낮은 약 2,000억원 이하로 인수가격 제시) - 우선협상대상 두바이투자청과 2014.12.29. M&A양해각서 체결 (예비협상대상 우방산업컨소시엄)
현 진	- 최대주주(대한주택보증 29.6%), 우리은행 등 채권단(46.7%) - 매각주간사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선정 - 100억원대로 예상
LIG건설	- 2013년 8월, 2014년 3월 2차례 M&A 무산 - 현승건소시엄과 2014년 12월 투자계약 체결(606억원) (현승D&C가 설립한 SPC인 HS홀딩스와 이랜드파크 참여) - 이랜드그룹은 해운대글로리콘도(약 200억원대)에 관심으로 가지고 재무적투자자(200억원 투자)로 컨소시엄 참여
스톤건설	- 예비입찰에 SK D&D, 동신건설 등 참여 - 본입찰에 홍콩계 부동산전문사모펀드(PEF) 운용사 퍼시픽얼라이언스그룹(PAG)와 글로스타 컨소시엄 단독참여 (인수가격 약 1,100억원 예상)

한국건설법무학회

제3항 외국 사례

선진국들은 기업회생을 촉진시키기 위한 M&A방법 외의 다양한 제도와 방안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A&D(Acquisition & Development : 상장된 저성장업체를 인수하여 고성장업체로 바꾸는 기업인수방식), LBO[175] (Leveraged Buy Out : 기업매수자금을 매수대상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조달하는 방법) 등 기업회생을 위한 기법과 전문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구조조정을 위한 다양한 금융수단으로서 기업구조조정자금(CRF : Coporate Restructuring Fund),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 Coporate Restructuring Company),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 Coporate Restructuring Vehicle) 등이 활용[176]되고 있다.

---

175) LBO방식과 관련하여, 1999년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S사를 인수하기 위해 2001년 4월 페이퍼컴퍼니인 A사를 세우고 S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A사 명의로 대출받은 350억원과 S사의 예금을 담보로 A사 명의로 대출받은 320억원을 합한 총 670억원 가운데 260억원으로 S사의 신주를 사들이고 나머지 돈으로는 S사의 정리채권을 인수, 지분 66%를 확보한 뒤 2001년 6월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한 것과 관련하여 행위자가 배임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LBO를 통해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위험을 발생시키더라도 나중에 회사가 받은 이익이 손해보다 크다면 합법'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반면, 대법원은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LBO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인수자만을 위한 담보제공이 무제한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위와 같은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만일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면, 인수자 또는 제3자에게 담보 가치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인수회사에게 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도로 인하여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그 회사의 주주나 채권자들의 잠재적 이익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하므로, 피인수회사가 회사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여 특경가법(배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대법원 2006.11.9.선고 2004도7027 판결).

176)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개기로 1998년 9월에 「증권투자회사법」이 제정되어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금융기관 부실채권 해소와 부실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CRF제도가 도입, 1999년 2월에 「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CRC제도가 도입, 2000년 10월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 제정되어 워크아웃기업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CRV제도가 도입, 2001년 3월에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해 기업인수에 따른 의결권 행사제한을 완화한 기업인수증권투자

광운대학교 법학과

우리와 같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일본의 경우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 아래 산업활력공사법에 따라 일본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가 되어 자본금 505억엔, 임직원 약 130명을 갖춘 주식회사 형태로 2003년 4월 16일 설립(5년의 한시적 기구구)되어 2003년 5월 8일부터 업무가 시작된 산업재생공사(IRCJ : Industrial Revitalization Corporation of Japan)를 한시적 기구로 설립하여 부실이 예상되는 유망기업(41개사)에 대한 채권매수, 자금의 대부, 채무보증, 출자 등의 업무를 운영하였다. 산업재생기구의 채무재조정 작성을 위해 일본 정부는 10조엔을 한도로 정부지급 보증으로 자금을 쓸 수 있게 하였고(실제로는 1조엔만 사용되었다), 이 자금으로 채권의 매입, 신규자금 지원, 출자 등에 사용한 후 2007년 3월 15일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할 때까지 312억엔을 납세하고 잔여재산 분배에 의해 432억엔을 국고에 납부하였다.[177]

제4항. 개선 방안

1. 위탁경영 방식

웅진그룹이 거액을 들여 극동건설을 인수[178]한 이후 그룹 자체가 와해

회사(사모M&A펀드)제도가 도입, 2001년 4월에는「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제정으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REITs)제도가 도입, 2004년 10월에는「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177) 高木新二郎(타카기신지로), “産業再生機構 회고”, 이하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3권 제1호, 168면 및 182면.(최정임 번역)

178) 웅진그룹은 소비재 사업 편중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사업 다각화를 진행할 목적으로 론스타가 소유한 극동건설 주식 98.14%를 업계에서 예상한 4,000억원 내외보다 높은 6,6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2007.6.22자로 체결하였다. 당초 웅진그룹은 그룹계열사를 통해 아파트 사업을 벌일 경우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생활가전 소화 등을 통한 사업확정과 그룹공사를 수행할 목적으로 웅진건설 설립 당시부터 건설사 인수를 추진하여 2006년 대우건설 인수전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막판에 인수자금 부족을 이유로 포기하였고, 포기 후에도 쌍용건설 인수검토 등 국내 50위권 이내의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줄곧 인수를 추진하다 극동건설을 인수하게 된 것이다. 인수대금은 대우건설 인수추진 과정에서 준비한 사재 1,000억원과 웅진코웨이 자사주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한 1,500억원, 웅진캐피탈 등을 통해 조달한 외부차입금으로서 인수대금 대부분이 차입금이었다. 당시 건설업 경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극동건설의 재무상황이 더욱 나빠져 웅진홀딩스와 각 계열사가 극동건설 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수시로 지원

광운대학교 건설법무학회

되는 사례와 같이 인수합병 리스크 등으로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인수합병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으로 위탁경영후 인수방식도 고려해 볼만 하다. 위탁경영 방식의 M&A는 회생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경영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제3자(수탁기관)에게 일정기간 경영을 위탁한 후 정상화되면 수탁기업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선택권 가지도록 하는 2단계에 걸친 기업인수 방식이다.

위탁경영후 인수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7년 한라그룹이 부도에 처하면서 당시 한라그룹 구조조정을 주도하던 로스차일드 투자회사가 인수기업으로 하여금 삼호중공업 인수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시켜 인수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위탁경영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 로스차일드는 매각목적으로 1998년 삼호중공업의 상호를 RH중공업으로 변경(로스차일드와 한라중공업의 이니셜)하고, 채권단이 RH중공업으로부터 변제받을 채무 7,424억원 중 1,000억원은 RH중공업을 승계하는 삼호중공업에게 출자전환하고 잔액 6,424억원은 삼호중공업이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자율 9.75%)하며 5년간 위탁경영을 담당하는 현대중공업은 삼호중공업에 대한 채무와 향후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보증을 제공하고, 경영진 구성, 운영자금 조달 등을 수행하며, 채권단이 출자전환한 주식을 주당 액면 금액 5,000원에 5년 이내에 모두 인수(삼호중공업의 주당 순자산가치가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수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행사하도록 구조화함)할 수 있는 콜옵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삼호중공업에 약 9,200억원을 지급보증하였으며, 삼호중공업의 경영이 정상화되어가자 현대중공업은 2005년 콜옵션을 행사하여 출자전환된 채권단의 주식 100%(20,000,000주)를 주당 5,000원에 인수(2001년말 삼호중공업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2,690원이었으나 주당 5,000원에 인수)함으로써 삼호중공업을 완전히 인수한 사례[179]이다.

하였으나 한계에 봉착하게 됨에 따라 극동건설과 극동건설에 대한 약 1조 839억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한 그룹지주사 웅진홀딩스는 2012.9.26.자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

179) 현대중공업의 위탁경영에 의한 삼호중공업의 기업회생으로 삼호중공업이 2002년 4월 26일

한국건설법학회

광운대학교 VERITAS et LUX KWANGWOON UNIV. MAY 1934 SEOUL KOREA

최근, 범 현대가(家) 계열인 한라(예, 한라건설)가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2012년부터 시도한 '가산동 하이힐아울렛' 매각이 가격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는 상황에서 현대백화점그룹이 직접인수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인수대금 등이 맞지 않자 KTB사모펀드(현대백화점그룹 400억원, 한라가 1,000억원의 수익증권으로 투자하고, 저축은행대주단 등이 2,000억원 정도 담보대출)가 하이힐아울렛을 3,400억원에 인수하고, 현대백화점그룹이 위탁경영을 하기로 한 것[180]도 위탁경영 방식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인수합병 브릿지기관 설립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규모 채권을 보유한 정부나 예금보험공사 등의 공적기관과 채권금융기관이 일정 부분의 출자를 통해 시장에 의한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때까지 한시적[181]인 기구로서 인수합병을 위한 가교적 기관(Bridge Institution)[182]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입수합병을 위한 가교기관 설립으로 국가적으로는 실직 등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은 물론 기술력 등의 국부가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권의 조기회수와 주식가치의 제고로 유동성을 높일 수 있으며, 채무자인 기업 역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운용구조에 대하여는 은행이나 공적기관의 직원을 파견하는 외에 기업구조조정에 전문지식을 보유한 회계사, 변호사, 경영컨설턴트, 부동산 전문가 등을 선발하여 산업별로 팀을 구성하여 운용

한국법무학회

한국능률협회로부터 '기업경영개선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180) 서울파이낸스, 2014.3.6. 기사(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 2014.11.22. 열람.

181) 민간에 의한 인수합병 여건이 조성될 경우 가교기관은 해산할 것이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가교기관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여 국내 인수합병 노하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182) 기업이 아직 도산상태에 이르기 전에 채권자간의 완전한 합의를 통해 채무를 재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 일본의 산업재생기관과는 달리 도산상태인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의 중개자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기능은 다르나 기관의 설립과 구조면에서는 유사한 형태이다.

할 경우 집중력이 향상되고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건설법무학회

제7장 결 론

한국경제는 일제의 경제적 수탈과 한국전쟁의 엄청난 폐해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초 경제개발 이래 여러 정권을 거치는 동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무분별한 차입경영 등으로 인하여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맞이하였다.

1974년 도입된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협정', 1976년 도입된 '주거래은행제도' 등 사적구조조정 체계와 5.16 군사쿠데타 후 법률제정사업의 일환으로 1962년 제정된 도산 3법(화의법, 회사정리법, 파산법)이라는 공적구조조정제도가 존재하였음에도 정경유착으로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도산전문가도 부족하여 재정적으로 일시적 곤란을 겪던 기업마저도 도산하게 되어 근로자가 거리로 내몰리고, 가정이 파탄되어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이 가시지 않았다.

당시, 도산 3법을 일부 정비하기도 하였으나, 우리 경제가 회복되면서 도산신청 사건의 감소와 예산의 부족 등을 이유로 IMF가 권고한 회생전문법원의 설치 등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미뤄두고 2005년 도산 3법을 통합한「채무자회생법」을 제정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는 사후약방문식 제도개선을 하였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의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장기침체와 수익성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이 지속될 수 밖에 없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건설기업까지도 시장에서 퇴출될 우려가 높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중심으로 2011년부터 회생절차에 패스트트랙제도 도입, 2013년부터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도입 등「채무자회생법」에 내재된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는 되었으나, 건설기업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현행 회생제도를 사전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회생제도의 선진화와 전문화는 요원할 뿐만아니라 향후 전개될 건설업 구조조정에 따른 건설기업의 회생신청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유한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국건설법무학회

이에 본 논문은 현행「채무자회생법」에 내재되어 있거나 운용에 있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건설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그 동안의 문헌과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리인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부실한 경영으로 기업을 도산상태에 이르게 한 경영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하되, 도산의 원인이 외부의 급격한 경제적 변동과 같이 기존의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채권자협의회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불선임결정을 하는 것으로 관리인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DIP금융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신규신용공여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제조업과 달리 건설기업은 물적 자산이 거의 없어 외부의 신규자금공급이나 실행이 우수한 공사의 수주가 회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현행「채무자회생법」상 신규신용공여의 종류는 대출에 한정되어 있고, 담보권자에 우선하는 최우선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DIP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리스계약, 자산유동화거래, 보증거래 등도 신용공여에 포함하고, 미국과 같이 해당 담보권자의 동의를 전제로 최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회생절차에서 신규신용공여자의 관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확정채권(장래구상채권)에 대한 의결권 기준을 제시한다. 미국과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의「채무자회생법」은 장래의 청구권과 조건부채권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될 때의 평가금액'으로 의결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의결권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파산부가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아

한국건설법학회

실무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장래구상채권이나 조건부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를 감독하는 정부 등의 공적기관이 정한 기준인 대위변제준비금 적립기준이나 대급전환율(대위변제전환율) 또는 해당되는 채권자들의 일정기간 동안 회생기업에 대한 채권의 현실화율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다.

넷째, 법원의 전문화 차원에서 회생법원을 신속히 설치할 것을 제시한다. 1998년도에 국제부흥개발은행과 제2차 구조조정 차관협약 체결시 회생전문법원의 설치가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이유로 설치가 지연되고, 파산부 법관이 사법적 심사 대상 외에 경영적, 행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까지도 담당함은 물론 모든 판사를 2년 내지 3년 마다 교체함으로써 회생사건에 대한 법관의 전문성이 제고되지 못하여 그 정당성과 적절성, 중립성과 공정성이라는 사법 본래의 역할이 후퇴할 우려도 있으므로 도산절차의 선진화와 세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 부담 등을 고려하여 우선 서울지역에 회생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3년 대법원 행정처에 자문기구로서 설치된 '회생·파산위원회'를 행정처와는 별도의 독립된 부처로 격상시켜 사법적 심사 대상을 제외한 사항을 총괄하고, 각 지방법원에 설치된 관리위원회와 관리인 등을 감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건설기업의 특성상 인적 자산의 역량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신용공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금채권지급보증(보험)의 도입을 제시한다.「채무자회생법」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고 그 일부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회생절차내에서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으로 인하여 신규신용공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발생하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보증을 의무화하되, 보증기관의 보증행위를 유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체당금 등에 대하여 보증기관이 우선하여 대위할 수 있도록「임금채권보장법」에

한국건설법무학회

명문화함과 아울러 우선권있는 임금채권자의 잔여 임금과의 관계에서 후순위가 되지 않도록「채무자회생법」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여섯째, 인수합병 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위탁경영후 인수방식과 민관합동 인수합병 브릿지기관(가교기구) 설립을 제시한다. 경제상황에 따라 인수합병 시장이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고, 건설기업의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법적 분쟁이나 우발채무 등으로 인수합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수의사가 있는 자가 일정 기간 위탁경영을 한 이후 경영이 정상화되면 인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도록 2단계에 걸쳐 기업인수방식을 인수합병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에 의한 인수합병이 활성화되기까지 채권금융기관과 공적기관의 출연을 통해 인수합병 브릿지기관을 설립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건설법무학회

참 고 문 헌

Ⅰ. 국내 문헌

1. 단행본

구본천, 기업퇴출의 경제분석과 개선 방안, 한구개발연구원, 1999.

금융감독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2010.

김동욱・이종원・이원희, 기업퇴출.회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건설업을 중심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행정문제연구소, 2001.

김형배, 민법학강의(이론,판례,사례)(제6판), 서울, 신조사, 2007.

방하남・정연택・심규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구조 및 근로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85.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사건실무(상)[제3판], 박영사, 2011.

서정환, 한국의 기업퇴출제도, 한국경제연구원, 2000.

이의섭, 회생절차시 공사계약 관련 보증 취급 방법 개선 방안, 건설산업연구원, 2013.

이화여자대학교(도산법연구센터), 도산법에 관한 UNCITRAL 입법지침, 연구용역보고서, 2011.

조항래・박상진,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3.

최효종, 기업회생절차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쌍용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 회생과 파산, 서울, 2012.

홍성준, GM 파산보호신청 관련 미 파산법상 절차 및 국내파급효과, 산업통상자원부(연구용역보고서), 2009.

한국건설법무학회

2. 논문 등

강민성, “도교지방재판소의 DIP형 회사갱생절차 운용의 도입에 관하여”, 해외사법소식 제78호, 2011.

구회근・오세용,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회생절차 개선 방안 모색”, 한국금융학회 춘계 공동정책심포지엄 주제발표문, 2014.

김가영, “M&A를 통한 중견그룹의 건설업 진출”, NICE ISSUE, 2008.

김주학, “미국 연방관재관 제도의 도입논의에 대한 실무적 검토”,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50호, 2010.

박승두, “일본 민사재생법의 이념과 기본구조”, 청주법학 제32권 제1호, 2010.

박승두, “향후 관리인 제도의 발전 방향”, 회생법학 창간호, 2010.

선 욱,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발전”, 도산절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도산전문법원 도입 연구 심포지엄 자료집, 2014.

안정상, “회생절차 진행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1.

안정상, “기업지배구조론의 회생기업에 대한 적용 방안”, 경영법률, 2011.

양형우, “회생.파산절차개시가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제8권 제4호, 2008.

오수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 자료집, 2014.

오수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법조 2005.5(VOL.584), 2005.

오수근, “회사정리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소고”, 민사판례연구 제16집, 1994.

오수근, “회사정리계획의 수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 기업법연구 제19권 제4호, 2005.

유해용,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한국의 기업회생 실무와 쟁점”, 법조 2010.2(VOL.641), 2010.

한국건설법학회

윤남근, “세계 금융위기와 미국 파산법원의 대응”, 도산절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도산전문법원 도입 연구 심포지엄 자료집, 2014.
이성우,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절차에 있어 채권자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안 연구(관리인제도 개선 방안)”, 한국부패학회보 제15권 제4호, 2011.
이연갑, “도산법상 기존경영자 관리인의 지위”,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53호, 2011.
이진웅, “회생절차에서의 관계인집회 운영에 관한 제문제(관계인집회 병합 문제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38호, 2013.
이창헌,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절차의 제도적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 기업구조조정 법제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2014.
홍성준, “우리나라 도산전문법원 도입에 관한 연구”, 도산절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도산전문법원 도입 연구 심포지엄 자료, 2014.
高木新二郎(타카기신지로), “産業再生機構 회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3권 제1호, 2009. (최정임 번역)

3. 법원 판결례

대법원 1974. 6.25. 선고 73다692 판결 (손해배상)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대여금)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다카1559 판결 (양수금)
대법원 2002. 4.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대법원 2003. 3.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파산채권확정)
대법원 2004. 8.20. 선고 2004다3512 판결 (공사대금등·산재보험료등반환)
대법원 2005. 6.15. 선고 2004그84 결정 (회사정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대법원 2006.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특가법(배임) 위반]
대법원 2007. 6.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공사대금등)
대법원 2007. 9.20. 선고 2007다40109 판결 (보증금)

한국건설법학회

대법원 2007. 9.28. 선고 2005다15598 판결 (보험금)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다52900 (파산채권확정)
대법원 2009. 2.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구상금)
대법원 2009. 9.24. 선고 2008다64942 판결 (구상금)
대법원 2010. 1.28. 선고 2009다40349 판결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1. 1.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배당이의)
대법원 2011. 7.28. 선고 2009다41748 판결 (보증채무이행)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마1998 결정 (신용보증통지가처분)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04140 판결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2009. 5.21. 선고 2008나82836 판결 (보증채무이행)
서울중앙지방법원 1997. 2.11. 선고 96가합11612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4.10. 선고 2000가합16171 판결 (정리채권확정)

4. 주요 웹사이트 자료

건설경제신문, 'GDP 내 건설업 비중 감소세-작년 말 5.0% 기록' (2014.12.16. 방문) <http://www.cnews.co.kr/>

국토교통부,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2014.10.03. 방문)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0435>

국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등' (2014.09.01. 등 방문)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O1R4A0O3X1K3K1O4S0E7A2E5O6G8Z0 등>

금융감독원, '구조조정 추진 중소기업 간단회 보도자료' 등 (2014.12.08. 등 방문)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url=&seqno=17782 등>

김기식(국회의원), '워크아웃 신청 대주주 80%가 경영권 유지' (2014.09.24. 방문) <http://www.dreamk.kr/?p=4210>

한국건설법무학회

대법원, ‘연도별 회생사건 접수 통계’ 등 (2014.12.16. 등 방문) <http://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ViewAction.work?gubun_code=G01&tcode=T09&scode=S01&year=2014&gubunyear=2014&month=10 등>

대한건설협회, ‘2014년 상반기 주요건설통계’ 등 (2014.12.18. 등 방문) <http://www.cak.or.kr/board/boardView.do?menuId=86&cms_site_id=&sel_tab=&searchctg1=&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sidohp=&subhp=&boardId=statistic_build&dataId=31755&pageIndex=1 등>

대한주택보증, 연도별 보증별 대위변제율 자료 (2014.12.10.방문) <.http://www.khgc.co.kr/khhp/web/mo/ma/moma000002.jsp>

매일경제신문, ‘삼성, 건설조직 대거 통폐합’ (2014.12.19. 방문)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519319>

법제처, ‘법률 제명 약칭 기준’ (2014.11.18. 방문) <http://www.moleg.go.kr/news/report?pstSeq=67996&pageIndex=6>

서울경제신문, ‘머나먼 기업 회생의 길’ (2014.11.19. 방문)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303/e20130324181054117920.htm>

서울파이낸스, ‘현대百, 가산동 하이힐아울렛 위탁운영’ (2014.12.01.방문)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8939>

이데일리, ‘日 중소기업 회생절차 ‘무용지물’..재도산 위험高‘ (2014.09.26. 방문)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41&newsid=01800726602806624&DCD=A00804&OutLnkChk=Y>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2014.11.26. 방문)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NEWS_32&seq=43545&mc=usr0001031&re_level=0&re_step=381899>

한국건설법무학회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대주단운영협약서 등 자료 (2014.09.02.등 방문) <http://www.cracrv.com/board/bbs/board.php?bo_table=rpacc&sca=%B0%F8%C1%F6%BB%E7%C7%D7>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의 부정적 파급효과 보도자료' (2014.12.07. 방문) <http://www.kdi.re.kr/news/report_view.jsp?seq_no=10191&pageNo=1>

한국은행, 산업별 총대출금 통계 (2014.12.17.방문) <http://www.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007Y014&conn_path=I3>

Ⅱ. 외국 문헌

村井健彦, "會社更生法と民事再生法の實効性", TDB(데이코쿠데이터뱅크), 2009, 4면.

三ヶ月章 등, "條解 會社更生法(下)", 弘文堂, 1999, 635면.

IBRD, "Implementation Completion Report, The Republic of Korea Second Structural Adjustment Loan (Loan No.43990-KO). May 25, 2000.

Lynn M. Lopucki, The Debtor in Full Control-System Failure Under Chapter 11 of The Bankruptcy Code, 57 Am. Bankr. L.J. 247, 1983.

한국상법학회